

알기 쉬운 중국 경쟁법

증보판 · 2022년 12월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알기 쉬운 중국 경쟁법

증보판 · 2022년 12월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목 차

I. 중국 경쟁법 개관	1
1. 중국 경쟁법의 구성	1
2. 경쟁법 집행기구	1
一. 반독점위원회	2
二. 경쟁법 집행기구.....	3
3. 사건처리절차	7
一. 독점협약,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경쟁행위, 부당가격행위 등	7
二. 기업결합	8
II. 반독점법	11
1. 독점협약(카르텔, 垄断协议)	12
一. 독점협약이란	12
二. 수평적 독점협약.....	13
三. 수직적 독점협약.....	18
四.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	20
五. 관련 사례	20
六. 실무 중 대응방안.....	28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30
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란.....	30
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요건.....	31
三.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	38
四. 관련 사례	40
五. 실무 중 대응방안.....	44
3. 기업결합.....	45

一. 기업결합이란	45
二. 기업결합의 신고.....	45
三. 경쟁제한성 심사.....	59
四. 기업결합의 심사결정 및 공고.....	59
五.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	62
六. 실무 중 대응방안.....	63
4. 행정독점행위	64
一. 행정독점행위란.....	64
二. 행정독점의 요건.....	64
三. 실무 중 대응방안.....	71
5.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 〈반독점법〉 위반행위	72
一.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란.....	72
二. 독점협의.....	73
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75
四. 기업결합.....	79
五. 행정독점행위	81
六. 관련 사례.....	81
6. 위반행위 관련 법적 책임	83
一.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벌	83
二.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86
三. 행정독점 행위에 관한 조치.....	86
四. 동의의결제도(经营者承诺制度).....	87
五. 실무 중 대응방안.....	88
Ⅲ. 반부정당경쟁법	90
1. 부정당경쟁행위란	90
2.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분석.....	92

一. 혼동행위(混淆行为).....	92
二. 뇌물공여행위(贿赂行为).....	94
三. 허위 홍보·광고행위(虚假宣传行为).....	95
四. 영업비밀 침해행위(侵犯商业秘密行为).....	96
五. 부당한 경품판매행위(不正当有奖销售行为).....	97
六. 상업비방행위(商业诋毁行为).....	98
七.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행위.....	99
3. 부정당행위에 대한 처벌 및 책임.....	101
一. 처벌 규정.....	101
二. 배상 책임.....	102
4. 반부정당경쟁법 의견수렴안의 주요 개정 내용.....	102
一. 데이터 경제 분야의 반부정당경쟁 규칙 보완(제14조~제19조, 제21조)...	102
二. 상대적인 우월적 지위 관련 조항 신규 추가(제13조, 제47조).....	103
三. 타인을 방조하여 부당경쟁행위를 실시하는 행위도 금지(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103
四. 전반적으로 처벌 강화(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8조).....	103

IV. 가격법 104

1. 부당가격행위란.....	104
2. 부당가격행위의 유형 및 요건.....	105
一. 가격담합(相互串通, 操纵市场价格).....	105
二. 부당염매(低于成本的价格倾销).....	105
三. 가격선동(哄抬价格).....	106
四. 가격사기(价格欺诈).....	107
五. 가격차별(价格歧视).....	107
六. 변칙적인 가격조정(变相提高或者压低价格).....	108
七. 폭리도모(牟取暴利).....	108
3. 처벌 기준.....	108

4. 실무 중 대응방안	111
V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112
1. 경쟁법 위반 이슈가 있는지 내부 점검(컴플라이언스 업무 진행).....	112
一.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중요성	112
二. 컴플라이언스 업무 진행 절차.....	112
2. 내부 반독점 관련 준법 제도 구축	113
3. 조사 당국의 조사 대응(조사기관에서 조사 개시 후 대응).....	114
一. 기습 조사 대응	114
二. 기습 조사 후의 대응.....	118
부록1. 중국 경쟁법 관련 규정 리스트	121
부록2. 기업결합신고표	125



I. 중국 경쟁법 개관

1. 중국 경쟁법의 구성

중국 경쟁법은 <반독점법(反壟斷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및 <가격법(價格法)> 등 기본 법률들과 이에 따른 다수의 관련 하위법령을 두고 있으며,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및 <가격법>은 모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¹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경쟁법 구성	적용대상/규제행위
반독점법 ² (2022. 6. 24. 개정, 2022. 8. 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독점행위: 독점협약³ (壟斷協議, 가격독점협의 포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濫用市場支配地位), 기업결합행위⁴ (經營者集中行為) 행정적 독점행위: 행정권 남용을 통한 경쟁의 제한·배제행위
반부정당경쟁법 ⁵ (2019. 4. 23. 개정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경쟁행위(不正當競爭行為): 혼동행위, 뇌물공여행위, 허위홍보/광고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가격법 (1998. 5. 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가격행위(不正當價格行為): 가격담합, 부당염매, 폭리도모 등

2. 경쟁법 집행기구

중국 정부는 반독점업무를 규율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무원반독점위원회(國務院反壟斷委員會)(이하 “반독점위원회”)를 설치⁶ 하였고, 반독점 정책

1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 기관이다.

2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2. 6. 24.자 제13기 제35차 회의에서 <반독점법 개정안>을 정식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2022. 8. 1.부터 시행되었고, <반독점법>이 2007. 8. 30. 최초 공포된 이후 약 15년만에 처음 개정된 것으로, 그 동안 반독점 집행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및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보완사항이 다수 반영되었다.

3 중문상 “협의(協議)”는 서면 또는 구두 형식으로 달성하는 합의 또는 기타 일치한 협동행위(協同一致)를 의미한다.

4 중문으로는 “경영자집중(經營者集中)”이나 본 책자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한국법상의 “기업결합”으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5 반부정당경쟁법은 1993. 12. 1. 최초 시행 이후 2017. 11. 4. 처음으로 대폭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되었고, 2019. 4. 23. 2차 개정안을 통해 일부 내용이 추가로 개정되었다.

6 반독점위원회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독립된 하나의 정부기관(행정청)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여러 부서들의 연합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며, 구체적인 법집행은 독립된 정부부서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담당하고 있다.



실시 및 통일적 법집행을 위한 조직으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이하 “시장총국”)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중국 정부는 반독점 규율과 관련하여 정책 수립, 지침 제정, 반독점업무 지도를 담당하는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 법률, 정책 등의 집행을 담당하는 시장총국의 2원체제를 구성하였다.

一. 반독점위원회

1) 반독점위원회의 역할

반독점위원회는 경쟁정책을 입안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하며, 반독점업무를 협의, 조정, 지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경쟁정책의 연구, 입안
- 시장의 전반적 경쟁상황에 대한 조사, 평가 및 평가보고 발표
- 반독점지침의 제정, 공포
- <반독점법> 집행업무 협조
- 국무원이 정하는 기타 업무

※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조직 및 활동규칙은 국무원이 정한다.

2) 반독점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중국 정부가 2018. 7. 11. 발표한 반독점위원회 구성원에 관한 통지문에 의하면, 반독점위원회는 주임(主任) 1명, 부주임(副主任) 2명, 위원 14명⁸, 비서장 1명으로 구성된다. 2022년 11월 15일 현재 반독점위원회의 주임은 국무위원(国务委员)인 Wang Yong(王勇)이, 부주임은 시장총국 국장인 Luo Wen(罗文) 및 국무원 부비서장인 Wang Zhiqing(王志清)이, 비서장은 시장총국 부국장인 Gan Lin(甘霖)⁹ 이 맡고 있고, 위원은 관

7 실무상 영문 약칭인 “SAMR”이라 부르기도 한다.

8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공업정보화부, 사법부, 재정부, 교통운송부, 상무부, 인민은행,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시장총국, 통계국, 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에너지국, 국가지적재산권국 등 소속 위원으로 구성된다.

9 Gan Lin(甘霖)은 2021년 11월 국가반독점국 국장으로 부임하였다.



런 부처의 부부장¹⁰으로 구성된다.

3) 반독점위원회의 운영

반독점위원회는 주로 전체회의(全体会议), 주임회의(主任会议) 및 특별주제회의(专题会议)를 통해 반독점업무를 조직, 조율하고 지도한다.

회의종류	주요업무
전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독점지침을 심의 및 공포하고, 중대한 반독점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정 등 주요 업무를 처리함. 시장총국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부서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여 반독점위원회에 보고된 안건¹¹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집행방법 및 원칙을 토론하여 결정 · 원칙적으로 6개월에 한 번 개최
주임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임, 부주임, 비서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로서, <반독점법>의 집행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론, 결정하는 업무 등을 처리 · 반독점위원회 위원의 제안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개최할 수 있음
특별주제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안건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진행 · <반독점법> 집행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음

二. 경쟁법 집행기구

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 및 국가반독점국

A. 시장총국 및 국가반독점국의 구성

중국 정부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을 기반으로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및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의 업무, 국가발개위 및 상무부의 반독점업무, 반독점위원회 관공실 업무를 통합하여 진행할 부서로 2018. 4. 10. 국무원 산하에 시장총국을 신설하였다. 시장총국 산하에는 31개 국·사(局/司)¹²가 있다.

10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11 가령, 특정 공업분야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경우 공업정보화부의 의견이 필요하다.

12 한국 정부의 국(局)에 해당한다.



시장총국 산하에서 반독점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은 2021. 11. 18.부터 ‘국가반독점국’(본 책자 중 “반독점국”은 경우에 따라 현재의 “국가반독점국을 의미함)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존의 ‘사청급기관(司厅级单位)’에서 ‘부부급기관(副部长级单位)’으로 승격하였으며, 총 3개의 내부 부서를 갖게 되었다(반독점집법 1사, 반독점집법 2사, 경쟁정책협조사). 반독점국이 기존의 ‘사청급기관’에서 ‘부부급기관’으로 승격된 만큼 위상이 높아질 것이고, 역할도 보다 많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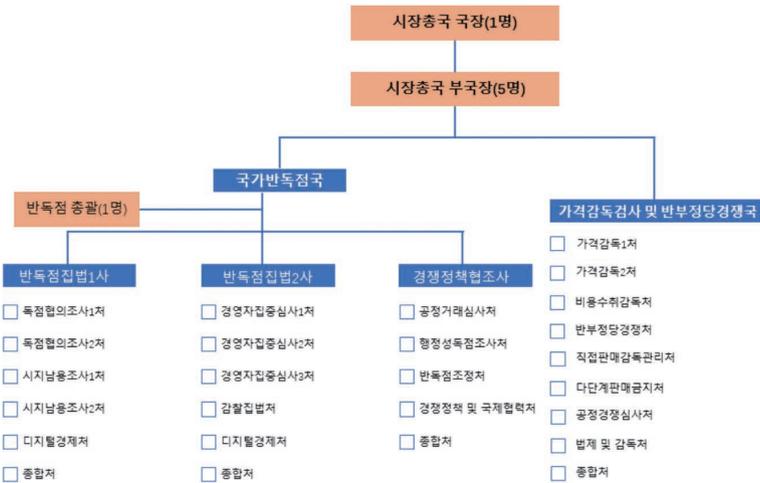
기구	주요업무
반독점집법1사 (反垄断执法一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에 대한 반독점 법집행 업무 수행 · 디지털 경제 분야의 독점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관한 법집행 활동 조직 · 지방 시장감독관리국의 독점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사건 조사 지도, 여러 성(직할시, 자치구)과 관련된 독점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조직 및 조율
반독점집법2사 (反垄断执法二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반독점 심사 업무 수행 · 법 위반 기업결합 조사 · 경쟁을 배제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신고기준 미달 기업결합 사건 조사 · 디지털 경제 분야의 기업결합 반독점 심사 수행 ·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 사건의 제한조치 실시 상황 감독 · 기업의 해외 반독점 소송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지도
경쟁정책협조사 (竞争政策协调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시장감독관리국의 반독점 업무 지도 · 반독점제도 조치 및 지침의 작성을 선도 · 공정경쟁심사제도의 실시를 조직하고 각 부서와 지방 시장감독관리국의 공정경쟁심사업무 실시를 감독 및 지도 · 행정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및 제한하는 반독점 법집행 업무 수행 · 반독점 사건 관련 내부적 법적 심사 업무 수행 · 경쟁정책 및 반독점 관련 국제적 협력과 교류 업무 수행 ·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



또한, 시장총국 산하에는 가격 및 비용 수취 관련 불법행위와 부당경쟁 행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가격감독검사 및 반부정당경쟁국’이 있다.

기구	주요업무
가격감독검사 및 반부정당경쟁국 (价格监督检查和 反不正当竞争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및 비용 수취 관련 감독검사 및 반부정당경쟁과 관련된 제도적 조치 및 규칙/지침 제정 · 상품/서비스 가격 및 국가기관/사업성 비용 수취 행위에 대한 감독 검사 업무 조직 및 수행 · 가격 및 비용 수취 불법행위 및 부당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 직판(直销) 기업, 직판 인원, 직판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다단계(传销)에 대한 처벌

시장총국 조직도



B. 시장총국의 역할

시장총국은 반독점 및 반부정당경쟁 집행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며 공정경쟁심사제도의 실행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기관으로¹³, 그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경쟁정책을 통일적으로 실시하고 반독점 제도를 수립하며, 지침을 제정
- 반독점 집행업무를 조직실시하고 법에 따라 기업결합행위에 대한 반독점 심사를 진행
- 독점협약, 시장지배적지위 또는 행정권 남용을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 등에 대한 반독점 집행업무를 담당
- 가격 및 비용수취 관련 위법행위와 부당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업무를 조직하고 지도
- 기업의 해외 반독점조사 대응 업무를 지도
- 반독점위원회의 일상업무를 처리

2) 지방 시장감독관리국

성·자치구·직할시 등 성급 지방 인민정부(이하 “성급지방정부”)의 시장감독관리부서가 현지 반독점 및 반부정당경쟁 관련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2018. 12. 28. 시행된 <시장감독총국의 반독점집법수권에 관한 통지(市场监管总局关于反垄断执法授权的通知)>에 따르면,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관할 행정구역내 독점협약,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정권 남용의 경쟁 제한·배제와 관련된 안건 및 부당가격행위와 부당경쟁행위를 처리하고 처벌을 내릴 수 있고, 시장총국이 위탁한 안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진행한다.

또한, 2022. 7. 8. 시행된 시장총국의 <시험적으로 일부 기업결합신고 안건의 반독점 심사 위탁 실시에 관한 공고(关于试点开展委托实施部分经营者集中案件反垄断审查的公告)>에 따르면, 기업결합신고 안건 중 간이안건

13 2018. 7. 30. 시행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기능분배, 내부설치기관 및 인원편제규정(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职能配置、内设机构和人员编制规定)>에 근거한다. 시장총국은 반독점 및 반부정당경쟁 집행업무 외에도 사업자등록, 제품품질안전감독, 특수설비안전감독, 식품안전감독,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가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시장감독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장총국은 지방(성급/직할시) 시장감독국에 위탁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총국 및 지방 시장감독관리국의 관할 비교

집행기관	집행업무
시장총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신고 안건 · 다수의 성급지방정부 관할 지역과 관련되는 안건 또는 성급지방정부의 행정권 남용 안건 · 사안이 복잡하거나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 · 시장총국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안건
지방 시장감독관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여 시장총국이 특정 지방 시장감독관리국이 심사하도록 위탁한 기업결합신고 안건 ·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독점협약,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정권 남용, 부당 가격행위, 부당경쟁행위 안건

3. 사건처리절차

一. 독점협약,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경쟁행위, 부당가격행위 등

1) 담당기관

국가반독점국 반독점집법1사, 가격감독검사 및 반부정당경쟁국, 지방 시장감독관리국

2) 사건처리절차

- 법 위반 혐의사실 인지: 고발(举报) 또는 직권(职权)에 따른 조사 개시
 - 담당기관은 신고자를 위해 비밀을 유지해야 함
 - 서면 신고가 이루어지고 관련 사실 및 증거가 제출된 경우 담당 기관은 필요한 조사를 진행해야 함



- 입안(立案)
- 담당기관의 조사 및 증거수집(调取证据)
- 법제부서(法制机构)의 사건심사(案件核审)
- 보고 및 당사자 고지
- 당사자 의견청취(听取当事人意见) 및 재확인(复核)
- 최종결정(决定) 및 행정처벌결정서(行政处罚决定书) 송부
- 담당기관의 처분결정 대외적 공표
- 행정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二. 기업결합

1) 담당기관

- 국가반독점국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신고 중 간이안건을 지방 시장감독국(이하 “지방 관할 부서”)에 위탁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음(시범기간 2022. 8. 1. ~ 2025. 7. 31.).
 - (1) 신고인 중 1명 이상의 주소지가 지방 관할 부서의 관할 지역에 위치한 경우
 - (2) 사업자가 지분/자산 인수 또는 계약 등 기타 방식을 통해 지방 관할 부서의 관할 지역에 위치한 다른 사업자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
 - (3) 사업자가 합자기업을 신설하는 거래에서 합자기업의 주소지가 지방 관할 부서의 관할 지역에 위치한 경우
 - (4) 기업결합신고의 관련 지리적 시장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지방 관할 부서의 관할 지역에 위치한 경우
 - (5) 기타 시장총국이 위탁하는 안건
- 국가반독점국으로부터 간이안건을 위탁받을 수 있는 지방 관할 부서와 해당 관할 지역은 다음과 같음



지방 관할 부서	관할 지역
북경시시장감독관리국	북경, 천진, 허베이, 산시, 내몽고, 요녕, 길림, 흑룡강
상해시시장감독관리국	상해, 강소, 절강, 안휘, 복건, 강서, 산둥
광둥성시장감독관리국	광둥, 광서, 해남
중경시시장감독관리국	허난, 호북, 호남, 중경, 사천, 귀주, 운남, 저장
섬서성시장감독관리국	섬서, 감숙, 청해, 녜하, 신장

- 그 외의 모든 기업결합신고안건은 국가반독점국의 반독점집법2사에서 직접 심사함

2) 사건처리 절차(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II. 3. 부분 참조)

- 사전상담(事前商談)
 - 시장총국 반독점국을 통해 신고 대상 여부, 제출서류의 부합 여부 등과 관련하여 사전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단, 필수절차는 아님).
 - 반독점국 사전상담 절차를 거쳐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 신고방식 확정
 - 간이안건 신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간이안건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간이안건과 일반안건 중 어떤 안건으로 신고할 것인지는 신고인이 결정한다(단, 사전에 간이안건 신고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간이안건으로 신고하였다더라도 간이안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반안건으로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서류 제출(申報)
- 신고수리(立案)
- 초보심사(初步审查): 30일



- 심사과정에서 청문회 소집을 통해 관계자(기업결합 참여자 및 경쟁자, 거래처 대표, 관련 전문가, 관련 사업자단체 대표, 관련 부서의 대표 및 소비자 대표 등)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초보심사를 통해 진일보심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일보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다. 단, 초보심사단계에서 진일보심사가 필요없다는 결정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 진일보심사(进一步审查): 90일
 - (필요시) 연장심사(延长审查): 60일
 - (i) 신청인이 기한 연장에 동의하거나, (ii)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나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iii) 기업결합 신고 후 관련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결정 및 서면통지
 - 대외적 공표(금지 또는 조건부 승인의 경우)



II. 반독점법

반독점법상 금지되는 위법행위는 크게 (i) 독점협약, (ii)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iii) 경쟁을 제한·배제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 (iv) 행정권력 남용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시장총국은 위 4가지 행위와 관련하여 주로 <독점협약 금지 임시규정(2022년 개정)(禁止垄断协议暂行规定(2022修改))>,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 금지에 관한 임시규정(2022년 개정)(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2022修改))>, <기업결합심사 임시규정(2022년 개정)(经营者集中审查暂行规定(2022修改))>,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 제지에 관한 임시규정(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暂行规定)> 등 4개의 세부규정(부문규장에 해당)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한편, <반독점법 개정안>이 2022. 6. 24. 공포된 이후, 시장총국은 2022. 6. 27. <기업결합심사규정(经营者集中审查规定)>,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规定)>, <독점협약 금지규정(禁止垄断协议规定)>,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배제하는 행위 제지에 관한 규정(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의 입법안(즉 의견수렴 초안)을 공포하였으며, 해당 입법안이 나중에 정식통과 및 공포 되어 시행되면 위 임시 규정들을 대체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에 <국무원의 기업결합신고 표준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배제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禁止滥用知识产权排除、限制竞争行为的规定)>의 입법안도 공포되었다. 상기 입법안에 대하여 2022. 7. 27. 까지 이미 대외적으로 의견수렴을 완료하였지만, 아직 정식통과 및 시행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책자에서는 주로 현행 규정 중심으로 설명하고, 필요시 입법안 중 중요한 내용은 추가로 설명하도록 한다.



1. 독점협약(카르텔, 垄断协议)

一. 독점협약이란

독점협약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협의, 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를 의미하며, 공동행위, 카르텔 또는 담합이라고도 한다.

독점협약은 크게 (i) 경쟁적 관계의 사업자 간 독점협약(수평적 카르텔)와 (ii) 수직적 거래 관계의 사업자 간 독점협약(수직적 카르텔) 2가지 유형이 있다(반독점법 제17조, 제18조).

수평적 독점협약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반독점법 제17조).

- ① 상품가격의 고정 또는 변경
- ② 상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 제한
- ③ 판매 시장 또는 원자재구매 시장 분할
- ④ 신기술, 신설비 구매 제한 또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 제한
- ⑤ 공동의 거래거절
- ⑥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가 인정하는 기타 독점협약

수직적 독점협약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반독점법 제18조).

- ① 제3자에 대한 재판매가격 고정
- ② 제3자에 대한 재판매 최저가격 제한
- ③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가 인정하는 기타 독점협약

※ 단, 제3자에 대한 재판매가격 고정 및 제3자에 대한 재판매 최저가격 제한과 관련된 독점협약의 경우, 사업자가 경쟁 배제·제한의 효과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금지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그의 관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국무원 반독점 법집행기관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낮음을 입증할 수 있고, 국무원 반독점 법집행기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금지하지 아니함

한편, 2022. 8. 1.부터 시행된 개정 <반독점법>은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독점협약의를 달성하도록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가 독점협약의를 달성하



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제19조)”는 규정을 새로 추가하였다. 이로써 과거 처벌이 어려웠던 ‘허브앤스포크(Hub-And-Spoke) 계약(轴辐协议)’과 같은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i) A기업을 ‘Hub’라 하고 (ii) A기업의 전후방 사업을 영위하거나 및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을 ‘Spoke’라 할 경우, (iii) (‘Spoke’간에는 직접적인 담합 행위를 위한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A기업이 주도하여 ‘Spoke’ 기업들로 하여금 암묵적으로 독점협의를 달성하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행 <반독점법> 제19조 및 제56조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자(Hub)나 그에 연관되어 사실상의 독점협의를 한 사업자들(Spoke)도 처벌이 될 수 있다. 특히 향후 전자상거래, 배달, 택시 등 플랫폼 기업, 딜러들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Spoke’ 기업 사이의 독점협의를 관련 소통, 의사 연락 등의 루트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二. 수평적 독점협약

1) 수평적 독점협약의 구성 요건

수평적 독점협약의 당사자 요건, 행위 요건, 효과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즉 (i) 경쟁관계가 존재하는 사업자 간에(당사자 요건), (ii) 협의, 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가 있어야 하고(행위 요건), (iii)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며 (iv) 정당화 사유가 없으면 수평적 독점협약에 해당한다.

A. 협의, 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

협의 또는 결정은 협의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경우 외에도 구두로만 협의하고 결정한 것도 포함한다.

<독점협약 금지 임시규정(2022년 개정)> 제5조에 의하면, 기타 협동행위(协同行为)는 당사자 간에 경쟁제한과 관련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합의 또는 결정을 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일치하게 조화되는(协调一致)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실무적으로는 경쟁제한의 목적으로 묵시적 합의를 하거나 내심 알고 있지만 표시하지 않는(心照不宣) 방식으로 시장에서 수평적으로 가격을 책정 또



는 유도(引領價格)하는 등 행위는 “기타 협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독점협약의 금지 임시규정(2022년 개정)〉 제6조에서는 “기타 협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사업자들의 시장행위에 일치성이 있는지 여부
- ② 사업자들 간 의사연락 또는 정보 교환이 있었는지 여부
- ③ 사업자들이 위 행위 일치성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④ 관련 시장의 시장구조, 경쟁상황, 시장변화 등 상황

상기 의사연락에 관해 최근 시장총국은 “간접적인 의사연락”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 2017. 7. 국가발개위의 〈사업자단체가격행위 지침(行业协会价格行为指南)〉에서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사연락을 하는 수평적 독점협약의와 관련하여 아래 행위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 ▷ 회원은 사업자단체를 플랫폼으로 이용하여 상호간에 가격, 원가정보를 교환하거나 가격정책을 조정해서는 아니 됨
- ▷ 사업자단체는 회원간의 가격정보 교환을 조직하거나 회원 또는 업계 내 다른 사업자 간에 가격정보를 서로 통보해서는 아니 됨
- ▷ 관련 시장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사업자단체가 공개하는 관련 시장내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기업이 실행할 가격, 가격정책 또는 가격결정 전략이 대중의 가격예상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큼
- ▷ 사업자단체가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기업이 실행할 가격을 발표하면 쉽게 부당한 가격협동행위를 유발함
- ▷ 업계 내의 생산경영원가가 안정적이고 업계 집중도가 높을수록 업계 내 사업자의 최근 발생 원가, 가격정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음. 사업자단체가 업계 내 사업자의 최근 발생 생산원가, 판매가격, 거래 가격 등 가격정보를 발표한다면 쉽게 부당한 가격협동행위 형성을 유발하게 됨

B.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 및 정당화 사유

〈독점협약의 금지 임시규정(2022년 개정)〉 제13조는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사업자들이 협의(결정 및 기타 협동행위 포함, 이하 동일)을 달성하고 실시한 사실
- ② 시장경쟁상황
- ③ 사업자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및 해당 시장에 대한 통제 능력(控制力)
- ④ 협의의 가격, 수량, 품질 등에 대한 영향
- ⑤ 협의의 시장 진입, 기술 진보 등에 대한 영향
- ⑥ 협의의 소비자 및 기타 사업자에 대한 영향
- ⑦ 독점협의 인정과 관련된 기타 요소

한편, 경쟁 배제·제한 효과의 실무적인 판단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독점협의를 달성한 사업자 또는 공동행위 사업자(이하 “협의체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배제되었는지 여부
 - 협의체 사업자들 간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함으로써 협의체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거나 제고하였는지
- 협의체 사업자 외의 사업자들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였는지 여부
 - 협의체 사업자 외의 사업자들의 해당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을 제한하였는지
- 해당 제품의 경쟁 감소로 기술, 제품 등의 혁신이 저해되었는지 여부(소비자 후생감소와도 연결되는 이슈)
- 해당 시장 제품가격이 상승하였는지 여부(소비자 후생감소와도 연결되는 이슈)

반면, 아래와 같은 정당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평적 독점협의 관련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반독점법 제20조).

- 기술 개선, 신제품 연구 개발을 위한 것
- 제품의 품질 및 효율 제고, 원가 인하, 제품의 규격화, 표준화 또는



전문화를 위한 것

- 중소기업의 경영효율 제고, 경쟁력 증진을 위한 것
-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재난 구조 등 사회 공공이익을 위한 것
- 불경기, 매출의 심각한 하락 또는 생산 과잉 완화를 위한 것
- 대외무역과 경제협작에서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

반독점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당화 사유는 조사대상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이와 같은 입증은 쉽지 않다.

2) 수평적 독점협회의 행위별 구체적 유형

- 경쟁 사업자들이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의 고정 또는 변경(독점협의 금지 임시규정(2022년 개정) 제7조)
 - 가격 수준, 가격 변동 폭, 이윤 수준 또는 할인,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을 고정 또는 변경
 - 가격 산정의 기준 공식 적용에 대한 약정
 - 협의체에 참여한 사업자의 독립적인 가격 결정권을 제한
 - 기타 방식을 통한 가격 고정 또는 변경

▷ 사례: 2022. 7. 9. 심사성시장감독관리국은 심사성시멘트협회 및 13개 시멘트회사가 상품가격을 고정 또는 변경하는 독점협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총 4.51억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 사례: 2013. 12. 국가발개위는 태평양재산보험유한회사 절강분공사가 절강성내 다른 재산보험회사와 “차량 보험 가격 고정 관련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30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 상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 제한(독점협의 금지 임시규정(2022년 개정) 제8조)
 - 생산량(Capa)을 제한 또는 고정하거나, 생산을 중지하는 방식 등으로 상품의 생산량 또는 제품의 특정 품목, 모델의 생산량을 제한
 - 상품의 시장 공급량을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 상품의 판매량을



제한하거나 특정 품목, 모델의 판매량을 제한

- 기타 방식을 통해 제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제한

▷ 사례: 2021. 2. 산둥성시장감독관리국은 치박연합시멘트기업관리유한회사(淄博联合水泥企业管理有限公司)가 다른 7개 시멘트 생산업체와 상품가격 고정 및 변경, 상품 생산량과 판매량 제한, 판매시장 또는 원료구매시장을 분할하는 독점협의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8개 회사에 대해 위법소득 8,657.2만 위안 몰수, 2018년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1.41억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 사례: 2013. 7. 요녕성공상행정관리국은 요녕익동시멘트유한회사(辽宁东水泥有限公司) 등 11개 시멘트 생산업체가 요녕성건축재료협회의 주도하에 <자율공약>을 체결하여 생산수량과 공급수량을 제한하고 기타 독점협의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요녕익동시멘트유한회사에 167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 판매 시장 또는 원자재구매 시장 분할(독점협의 금지 임시규정 제9조)
 - 상품의 판매지역, 시장점유율, 판매대상, 판매수입, 판매이윤, 또는 판매상품의 종류, 수량, 시간 분할
 - 원료, 반제품, 부품, 관련 설비 등 원자재의 구매 지역, 종류, 수량, 시간 또는 공급 분할
 - 기타 방식을 통한 판매 시장 또는 원자재 구매 시장 분할

▷ 사례: 2022. 6. 8. 복건성시장감독관리국은 복건광하콘크리트유한회사(福建广夏混凝土有限公司) 등 건양구역 내의 7개 콘크리트 생산업체가 각자의 콘크리트 생산 수량에 대해 제한하고, 각자의 판매 대상을 지정한 행위 관련하여, 콘크리트 판매 시장을 분할하였다는 등 이유로 약 242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 신기술, 신설비 구매 제한 또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 제한(독점협의 금지 임시규정 제10조)
 - 신기술, 신공법의 사용 또는 구매 제한
 - 신설비, 신제품의 구매, 임대, 사용 제한
 - 신기술, 신공법, 신제품의 투자, 연구개발 제한
 - 신기술, 신공법, 신설비, 신제품의 사용 거부
 - 기타 방식을 통해 신기술, 신설비에 대한 구매를 제한하거나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개발을 제한



- 공동의 거래거절(독점협의 금지 임시규정 제11조)
 - 연합하여 특정 사업자에 대한 제품 공급 또는 상품 판매 거부
 - 연합하여 특정 사업자의 제품 구매 또는 판매 거부
 - 연합하여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못하도록 제한

▷ 사례: 2021.7.23. 강성시장감독관리국은 풍성시민읍건축재유한회사(丰城市闽邑建材有限公司) 등 8개 회사 및 풍성시 콘크리트협회(丰城市预拌混凝土协会)가 풍성시 일부 구역 내의 건축기업에 대하여 반드시 풍성시민읍건축재유한회사 등으로부터 콘크리트를 공급받아야 할 것을 약정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 콘크리트 배송을 저지하고 단체로 당해 기업과 거래를 거부하도록 하였으며, 외지 콘크리트 기업이 풍성시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풍성시민읍건축재유한회사의 위법소득 67,124,044.49위안을 몰수하고 연간 매출액의 8%에 해당되는 과징금 6,746,993.29위안을 부과함

공동의 거래거절

▷ 사례: 2015. 9. 광둥성 공상행정관리국은 광주시 번우애니메이션게임협회(番禺动漫游艺行业协会)가 52개의 회원사와 <전시회 연맹 합의서>를 체결하여 연합하여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협회에 1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三. 수직적 독점협의

1) 수직적 독점협의의 구성 요건 등

수직적 독점협의는 당사자 요건, 행위 요건, 효과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성립된다. 즉 (i) 수직적 거래의 사업자 간에(당사자 요건), (ii) 협의, 결정 또는 협동행위가 있어야 하고(행위 요건), (iii)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며(효과 요건), (iv) 정당화 사유가 없으면 수직적 독점협의에 해당한다.

2022년 개정 <반독점법> 제18조는 수직적 독점협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 (“안전지대(Safe Harbor)” 조항)을 신설하였다: “사업자가 자신이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국무원반독점집법기구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국무원반독점집법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수직적 독점협의를 금지하지 않는다”.

“국무원반독점집법기구에서 규정한 기준”에 관하여, 현재 유효한 규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지만, <독점협의 금지규정(의견수렴안)> 제15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와 거래 상대가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15%보다 높지 아니 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당해 의견수렴안에서 제시한 기준(15%)이 어떻게 제정될지 여부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

A. 협의, 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

수직적 독점협의는 통상 제품의 생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제품의 일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 딜러 등 거래 상대방의 재판매가격을 고정하거나 최저가격을 지정하는 것으로, 수평적 독점협의와 달리 일방 사업자의 의지에 의해 협의, 결정 또는 협동행위(공동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대리점, 딜러가 다른 대리점, 딜러들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생산업체 또는 공급업체와 가격을 고정하거나 최저가격을 정하는 협의나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B.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

수직적 독점협의는 대리점, 딜러들 사이의 경쟁을 제한·배제함으로써 중국적으로 대리점, 딜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구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아래와 같은 정당화 사유가 있는 경우,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직적 독점협의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반독점법 제20조).

- 기술 개선, 신제품 연구 개발을 위한 것
- 제품의 품질 및 효율 제고, 원가 인하, 제품의 규격화, 표준화 또는 전문화를 위한 것
- 중소 사업자의 경영효율 제고, 경쟁력 증진을 위한 것
-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재난 구조 등 사회 공공이익을 위한 것
- 불경기, 매출의 심각한 하락 또는 생산 과잉 완화를 위한 것
- 대외무역과 경제협작에서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



2) 수직적 독점협회의 유형

수직적 독점협회의와 관련하여 (i) 제3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가격을 고정하는 행위와 (ii) 제3자에 대한 판매 최저가격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수평적 독점협회의에 비해 행위의 유형이 비교적 단순하다.

四.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

아직 정식 시행된 규정은 아니지만,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 금지 규정(의견수렴안)>은 지식재산권을 남용한 수평적 및 수직적 독점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상기 수평적, 수직적 독점협회의를 달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기타 사업자들이 독점협회의에 달성하도록 조직하거나 실질적으로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 또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을 이용해 경쟁을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허권의 구성원은 특허권을 이용해 가격, 생산량, 시장구분 등 경쟁 관련 민감정보를 교환하고 독점협회의를 달성하여서는 아니된다(제14조).

五. 관련 사례

1) 원료약제조업체들의 수평적 독점협회의(국가발개위 [2016]7호 행정처벌 및 국가시장감독관리국 [2021] 29호 행정처벌)

▷ 사례: 국가발개위 [2016] 7호 행정처벌

✓ 처벌대상 업체

- 화중약업주식유한회사(华中药业股份有限公司, 이하 “화중”)
- 산둥신의제약유한회사(山东信谊制药有限公司, 이하 “신의”)
- 상주4약제약유한회사(常州四药制药有限公司, 이하 “상주4약”)

✓ 조사 내용

- 화중, 신의, 상주4약 3사는 2014. 9.~10. 하남 정주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i) 에스타졸람(艾司唑



순)¹⁴의 원료약을 자신들의 계열사에만 공급을 하고 기타 업체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며, (ii) 화중은 에스타졸람을 1알당 0.1위안으로 가격을 인상할 것을 제안함

- 동 사례에서 상주4약은 다른 경쟁사의 제안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화중, 신의가 에스타졸람 원료약의 공급을 중단하고 에스타졸람의 가격을 인상한 시기와 거의 동일한 시점에 가격을 인상하고 거래를 중단함

✓ 처벌

- 국가발개위는 상주4약이 가격협외, 결정에 동참하지 않았음에도 상주4약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묵시적인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 2015년 상주4약 에스타졸람 매출액의 3%인 484,431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화중에는 매출액의 7%인 1,571,829 위안, 신의에는 매출액의 2.5%인 547,563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 사례: 국가시장감독관리국 [2021] 29호 행정처벌

✓ 처벌대상 업체

- 양자강약업그룹유한회사(扬子江药业集团有限公司)(이하 “양자강약업회사”)

✓ 조사 내용

- 양자강약업회사는 중개상(经销商)들과 <판매계약> <양자강약업그룹체인서비스계약>등 계약을 체결하고, 가격조정통지서, 구동통지 등 방식으로 가격을 고정하고 한정하는 독점협의를 이루었음

✓ 처벌

- 시장총국은 양자강약업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3자에 대한 판매 가격을 고정한 행위” 및 “제3자에 대한 판매 최저가격을 고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 2021. 4. 15. 시장총국은 양자강약업회사의 2018년 연도 매출액의 3%인 인민폐 764,007,948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 시사점:

- 위 국가발개위 [2016] 7호 사례는 묵시적 공동행위에 대해 처벌을 부과한 중국내 최초 사례이다.
- 상주4약은 공동의 가격인상, 거래거절 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여 가격인상, 거래거절 등에 대해 동의 등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화중, 신의의 가격인상 및 거래거절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해당 행위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수평적 독점협외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14 벤조다이아제핀계의 항불안제로 강한 최면작용을 지니며 작용 발현도 빠름. 최근에는 항불안제가 아닌 최면제로 주로 사용되며 우울상태의 불면에도 효과가 있는 약품이다.



- 따라서 명시적 협의, 결정 등이 없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참고로, 2021. 11. 15. 국무원 반독점위원회가 공포한 <원료약 분야의 반독점 가이드라인(关于原料药领域的反垄断指南)>에서는 원료약 분야의 기업(원료약생산기업, 중개상기업)들에 대해 특정 유형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제7조 제2항):
 - 一) 계약, 구두약정, 서신, 이메일, 가격조정통지 등 형식으로 하류 중개상, 약품생산기업에 대해 제3자에 대한 직접 판매 가격을 고정하거나 최저판매가격을 제한(이하 “재판매가격 제한”)하는 행위
 - 二) 중개상의 이윤을 고정하거나, 할인, 리베이트 등 수단을 통한 중개상 및 약품생산기업 등의 제3자에 대한 변칙적인 재판매 가격 제한행위
 - 三) 리베이트, 할인을 취소하거나 제품 공급을 거부 또는 계약을 해지하는 등 수단으로 하류 중개상, 약품생산기업에 대해 협박함으로써 경소상 또는 약품생산기업의 제3자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제한하는 행위
 - 四) 리베이트 제공, 제품 우선 공급, 지원 제공 등 우대성 조치를 취함으로써 하류 경소상, 약품생산기업에 대해 경소상/약품 생산기업이 제3자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제한하는 행위

2) 이어폰 제조사-대리점 간 수직적 독점협의

▷ 사례: 상해시 물가국 제2520170031호 행정처벌
✓ 처벌대상 업체
- GN Great Nordic
✓ 조사 내용
- GN Great Nordic는 Jabra 브랜드 이어폰의 중국 내 총판 및 각급 대리상과의 판매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약정함



- Jabra의 승인 없이 Jabra가 설정한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음
- GN Great Nordic의 중국 판매부서가 정한 가격체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
- 고과 방법 및 보너스, 징벌 조치를 정함
- 그 외 Jabra 웹사이트 판매 가격, 티몰점포 가격, 티몰 플래그십 스토어 판매가격, JD 판매가격 등 판매가격을 지정함
- ✓ 처벌
 - 직전연도 매출액의 3%인 2,305,559.79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 시사점:

- 대리상과 체결하는 판매계약, 프랜차이즈계약, 대리판매계약 등에서 대리점, 딜러들의 판매가격을 고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들은 대리점, 딜러 등의 판매가격을 고정하거나 최저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인정 또는 오해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중국 법원이 독점협의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1년 12월 1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하 “최고법원”)은 삭사글립틴의 약품 특허권 침해 분쟁 2심 판결(이하 “본건 판결”)에서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 agreement)가 반독점법상 금지되는 독점협의(카르텔)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심리하였다. 본건 판결은 중국 법원이 최초로 “의약품 역지불 합의”가 <반독점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이다.

A. 본건 판결의 주요내용

공개된 판결서에 따른 본건 판결의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 ① A는 삭사글립틴 특허(이하 “본건 특허”)의 원 특허권자이고 B는 제네릭 제약회사임. 2011. 8. 10. B는 A를 상대로 본건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음
- ② A와 B는 2012. 1. 4. B가 무효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화해계약(이하 “본건 화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B는 무효심판청구를 취하하였음. 본건 화해계약에 의하면, A 및 A의 특허



양수인은 B 및 B의 계열사의 본건 특허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음

③ 2014. 5. 23. A는 본건 특허를 a에게 양도하였고, 2019. 4. 23. a는 본건 특허의 특허권자로서 남경시 중급인민법원(이하 “1심 법원”)에 B의 계열사 b를 상대로 본건 특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음

④ 2020. 10. 30. 1심 법원은 확인대상 의약품은 본건 특허의 범위에 속하나, 본건 화해계약에 따라 b의 행위는 본건 특허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음

⑤ a는 2021년 3월 최고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였음

⑥ 이후 a와 b는 구두로 화해에 합의하였고, a는 2021. 4. 16. 상소 취하를 신청하였음

⑦ 최고법원은 a의 상소 취하 신청을 심리할 때 본건 화해계약이 역지불 합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본건 화해계약이 <반독점법>이 금지하는 독점협의를 해당될 수 있는지를 심리하였음

B. 본건 판결에 대한 분석

1. 최고법원이 역지불 합의가 <반독점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리한 근거

반독점법상 독점협의를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위법 여부 판단 및 처벌은 중국 공정거래 규제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국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최고법원의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2021. 1. 1. 시행)>(이하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337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고법원은 본건 분쟁이 특허침해분쟁으로 민사분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분쟁과 관련된 본건 화해계약 상의 역지불 합의가 독점협의를 해당하여 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본건 화해계약을 심사한 것이다.

2. 독점협의 판단기준



본건 판결에서 최고법원은 특허권의 유효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역지불 합의가 <반독점법>상의 독점협약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핵심은 관련 시장의 경쟁을 배제·제한하였는지의 여부이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판시하였다.

- 1)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이행한 상황과 해당 계약을 체결/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상황을 비교
- 2) 무효심판청구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특허권이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분석. 무효 가능성이 비교적 낮을 경우 해당 역지불 합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제로 배제 제한할 가능성도 비교적 낮을 것이고, 무효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해당 역지불 합의로 인해 관련 시장에 경쟁적 손해를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독점협약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함. 특허권자가 관련 계약에서 무효심판청구를 취하는 조건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높은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 3) 무효 가능성이 높은 경우, 관련 시장에 경쟁적 손해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의 정도 분석
 - 특허권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독점기간을 연장시켰는지
 - 실질적 및 잠재적으로 제네릭 제약회사의 시장 진입을 상당히 지연시키거나 배제하였는지

C. 본건 <화해협약>에 대한 심리 결과

최고법원은 본건 <화해협약>가 “역지불 합의”의 외형 특징에 부합되나, 본건 특허의 보호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관련 위법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a의 상소 취하를 허가하였다.

상기 역지불 합의 사례 외에도 최고법원이 특허 분쟁 합의에서의 위탁 생산 안배행위를 수평적 독점협약으로 아래 사례도 있다.

- ▷ 사례: 최고법원의 (2021)최고법지민중1298호 판결
- ✓ 소송 당사자
 - 상해화명전력설비제조유한회사(上海华明电力设备制造有限公司, 이하 “화명”)
 - 무한타이푸변압기스위치유한회사(武汉泰普变压器开关有限公司, 이하 “타이푸”)
 - ✓ 소송 경과
 - 2015년 타이푸는 화명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화명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 2016. 1. 타이푸와 화명은 특허 침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위탁 생산 안배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였음



- 그 후 2019년 화명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합의서의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음. 따라서 법원은 합의서 내용의 법적 효력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 이수를 발견하여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하였음
- ✓ 조사 내용 및 판결 요지
 - 합의서 제1조, 제5조에서는 (i) 국내 시장에서 화명은 특정 유형의 스위치에 한하여 생산, 판매를 할 수 있고, (ii) 해외 시장에서 화명은 타이푸 계열사의 스위치 제품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음
 - ▷ 판결 요지: 당해 약정은 특정 유형 스위치의 판매 시장을 분할한 것으로서 수평적 독점협회의 행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는 판매시장을 분할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수평적 독점협회의 형식적 요건에 부합됨
 - 합의서 제1조, 제5조에서는 화명의 제품 생산량, 판매량을 제한하였음
 - ▷ 판결 요지: 당해 약정으로 인하여 당해 제품의 시장 총 생산량이 감소하여 제품 시장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음. 한편, 이러한 약정은 수평적 독점협회의 행위 유형 중 하나인, 제품 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수평적 독점협회의 형식적 요건에 부합됨
 - 비록 합의서상 화명이 타이푸에 생산을 위탁해야 하지만, 화명이 기타 생산자에게 생산을 위탁할 수 없을 것을 약정했기 때문에, 생산자와 공급자가 유일한 상황에서 판매 가격이 고정될 가능성이 높음
 - ▷ 제품가격 고정 행위에 해당되므로, 수평적 독점협회의 형식적 요건에 부합됨
- ✓ 재판 결과
 -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당해 위탁 생산 합의서 내용을 무효로 인정함

□ 시사점:

1. 법원도 <반독점법> 등 행정규제 위반 여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심사할 수 있음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후 1심 또는 상소심 과정에서 상대방과 협의하여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원고/상소인의 신청에 따라 무조건 소/상소의 취하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행위가 <반독점법> 등 행정규제 법령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위법 단서를 행정기관에 이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소/상소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역지불 합의를 체결할 때 독점협약에 해당되는 리스크를 고려해야 함

한국은 10여년 전부터 이미 역지불 합의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진행해 왔으나, 중국의 경우 실무상 현재까지 경쟁당국이 역지불 합의가 〈반독점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처벌한 사례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본건 판결 및 아래와 같은 최근의 중국 〈반독점법〉 관련 동향으로 볼 때, 향후 의약품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회사와 역지불 합의를 달성하는 경우 〈반독점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반독점국으로부터 고액의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2021년 5월, 국가반독점국은 공식 사이트에 영국 경쟁당국(이하 “CMA”)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및 일부 제네릭 제약회사의 역지불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목적이 있고 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등재하였다.
- 또한, 국무원 반독점위원회가 2021년 11월 공표한 〈원료약 분야에 관한 반독점지침〉 제6조 제1항 제(3)호의 원료의약품에 대한 규제 규정(원료의약품 생산업체가 그와 경쟁관계가 있는 다른 사업자와 원료의약품을 생산/판매하지 않고 기타 원료의약품 사업자가 보상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 〈반독점법〉 제13조에서 금지하는 수평적 독점협약에 해당됨)도 의약품 역지불 합의가 독점협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약품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약회사 사이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거나 또는 출시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반독점 준법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교육회사와 가맹점 사이의 수직적 독점협의

- ▷ 사례: 북경시시장감독관리국 [2022] 06002호 처벌결정
- ✓ 처벌대상 업체
 - 북경카이레이언맹교육과기유한회사 ✓ 조사 내용
- ✓ 불법 행위
 - 북경카이레이언맹교육과기유한회사는 자신의 가맹점들과 체결한 합작계약에서 가맹점의 가격 조정 행위를 금지하는 등 약정을 하였음
- ✓ 처벌
 - 2022. 7. 4. 호남성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이에 대해 “제3자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고정”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액의 3%인 942,386.47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 시사점:

- 본건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라이선스경영계약(特许经营协议)이 수직적 독점협의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행정처벌이다.
- 라이선스경영이란 일반적으로 계약 형식으로 보유한 경영자원(등록상표, 기업표식, 특허, 기술적 노하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대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한 후 로열티를 수취하는 비즈니스 구조를 의미한다.
- 라이선스경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라이선스(즉 수권대상)가 제3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약정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六. 실무 중 대응방안

□ 회사 내부 교육 진행

- 회사의 경영진은 반독점 관련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마케팅, 영업 등 부서의 담당자들이 이와 같은 리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부 교육을 통해 반드시 수직적, 수평적 독점협의의 위법성 및 그 리스크를 인식시켜야 한다.



- 또한 마케팅, 영업 등 부서 담당자가 해당 리스크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판매 실적 등을 위해 회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직적, 수평적 독점협의 행위를 하는 사례들이 존재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요행 심리(侥幸心理)” 차단
 - 비밀리에 가격 협의 등 공동행위를 하면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수직적 독점협의의 경우 대리상, 딜러의 가격 정책에 불만으로, 수평적 독점협의의 경우 담합에 참여한 경쟁업체가 자진신고감면제도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신고하여 조사가 개시된 사례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묵시적 공동행위”에 유의
 - 일부 기업들은 명시적인 가격 협의 또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묵시적 공동행위”(간접적인 의사연락)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특히 경쟁사업자가 적고 관련 시장이 폐쇄적인 경우 더욱 유의 필요).
 - 묵시적 공동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 사업자단체에 참여하여 사업자단체가 공개하는 가격을 따르기로 합의
 - ✓ 사업자단체나 컨설팅업체에 회사 가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단체나 컨설팅업체가 공개하는 가격에 따라 회사 판매가격을 결정
 - ✓ 사업자단체, 컨설팅업체, 대리상 등 제3자를 통해 경쟁사의 가격, 판매정책 등 민감한 시장 정보를 상호 교환
- 딜러, 대리점에 대한 가격 정책 관련 유의 사항
 - 실무적으로 딜러, 대리점에 ‘시장 지도가격’, ‘시장 권장가격’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가격 지침을 정하는 것 자체는 수직적 독점협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러나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시장 지도가격’, ‘시장 권장가



격을 준수하는 딜러, 대리점에 인센티브(또는 가격할인, 리베이트 제공 등)를 제공하거나, '시장 지도가격', '시장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딜러, 대리점에 대해 차별대우(공급가 인상, 벌금 부과 등)를 하는 경우 수직적 독점협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아울러, 실무적으로 판매계약, 가맹계약, 대리판매계약 등에 대리점, 딜러의 판매가격을 지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란

특정 거래분야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등을 통제하거나 다른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사업자들이 지배력을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 거래조건, 시장진입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라고 한다.

〈반독점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기본 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다(반독점법 제22조).

- 불공정한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공정한 저가로 상품을 구입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끼워 팔거나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동등한 조건의 거래자에 대하여 거래가격 등 거래상 차별 대우하는 행위



- 시장총국이 인정하는 기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요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요건, 행위 요건, 효과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성립한다. 즉 (i) 시장지배적 사업자(당사자 요건)가 (ii) 〈반독점법〉 제22조(본 책자 나. 2)항 참조)에 규정된 행위(행위 요건)를 하였고, 여기에 (iii)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한다.

1) 시장지배적 사업자(당사자 요건)

A. 시장점유율에 따른 추정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반독점법 제24조).

- 단독 지배적 지위의 사업자:
 - 관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2에 달하는 사업자
- 공동 지배적 지위의 사업자:
 - 관련 시장에서 2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3에 달하는 경우
 - 관련 시장에서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3/4에 달하는 경우
 - 시장점유율이 1/10에 미만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 공동 지배적 지위의 사업자로 추정하지 않음

위 시장지배적지위 추정 기준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인정함에 있어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다.

B. 관련 시장의 획정

위와 같은 시장점유율은 “관련 시장(相关市场)”에서의 시장점유율이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과정이 반



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관련 시장 획정에 관한 지침(关于相关市场界定的指南)>에 규정되어 있다.

관련 시장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상품(지역)의 대체성 정도에 따라 분석을 하는데, 대체성은 ‘수요 대체성’과 ‘공급 대체성’으로 구분된다.

□ 수요 대체성

- 수요 대체성은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대하여 기능적 호환성이 있는 어느 하나의 상품에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정도를 의미함
- 수요자의 상품 기능·용도에 대한 수요, 품질의 인정, 가격을 받아들이는 정도, 취득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원칙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상품 사이의 대체성 정도가 높을수록 경쟁관계가 더욱 심하고 동일 관련 시장에 속할 가능성이 더욱 높음

□ 공급 대체성

- 공급 대체성이란 공급업자가 특정 상품의 가격을 작지만 의미있고 지속적인 기간 동안 인상시켰을 경우 이에 반응하여 단기간에 큰 추가비용이나 위험 없이 다른 상품을 공급하다가 당해 상품으로 공급을 전환하는 정도를 의미함
- 다른 사업자의 생산 시설의 투입, 리스크 부담, 목표 시장의 진입시간 등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서로 다른 상품의 대체 정도를 확정함
-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자가 시설 개조에 대한 투자가 적을수록 부담하는 리스크가 낮고 대체 상품의 공급이 더욱 신속하고 대체 정도가 더욱 높음
- 관련 시장의 참여자 기준으로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경우 공급 대체성을 고려해야 함

C. 시장지배적지위 인정 과정에서의 기타 고려 사항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를 판단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임시규정



(2022년 개정).

- 관련 시장내 당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및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 (제6조)
 - 시장점유율이란 일정한 기간 중에 사업자의 특정 상품 판매액이나 판매수량 등의 지표가 관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 당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시장지배적지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요소임은 분명하나 시장지배적지위가 반드시 시장점유율의 절대적 수치에 의하여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당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 분석은 관련 시장의 발전상황, 현재의 경쟁자 수량 및 그 시장 점유율, 상품의 차이 정도, 혁신 및 기술 변화, 판매 및 구매 모델, 잠재적 경쟁자 상황 등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 당해 사업자의 판매시장 및 원자재 구매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제7조)
 - 당해 사업자가 판매시장 또는 원자재 구매경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사업자가 산업 체인 중 상류 및 하류의 시장을 통제하는 능력, 판매경로 또는 구매경로를 통제하는 능력, 가격·수량·계약기간 기타 거래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및 기업의 생산경영에 필수적인 원료, 반제품, 부품, 관련 설비 및 기타 투입이 필요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등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 당해 사업자의 경제력과 기술적 조건(제8조)
 - 당해 사업자의 경제력과 기술적 조건 판단은 당해 사업자의 자산규모, 수익능력, 융자능력, 연구개발 능력, 기술 혁신 및 응용 능력,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 요소와 해당 경제력 및 기술적 조건이 어떠한 방식과 정도로 당해 사업자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고 유지시키는지 가 고려될 수 있다. 즉, 당해 사업자에게 기타



경쟁자보다 높은 경제력이나 우월한 기술이 있는 경우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시장지배적지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다른 사업자들의 당해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제9조)

- 거래상대방이 특정 거래에 있어 당해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판단은 거래상대방과 당해 사업자 간의 거래관계, 거래수량 및 거래의 존속기간, 합리적 기간 내에 다른 거래 상대방으로 교체할 수 있는 난이도 등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 다른 사업자들의 관련 시장 진출 난이도(제10조)

- 다른 사업자들의 관련 시장 진출 난이도 판단은 시장 진입, 필요한 자원 취득 난이도, 구매 및 판매 경로 통제 상황, 자금투입 규모, 기술적 장벽, 브랜드 의존 정도, 다른 거래상대방으로 교체하는 원가, 소비 습관 등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행위 요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일정한 행위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반독점법> 제22조에서 금지하는 남용행위는 (i) 불공정한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공정한 저가로 상품을 구입하는 행위, (ii)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iii)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 (iv)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v)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끼워 팔거나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vi) 정당한 이유 없이 동등한 조건의 거래자에 대하여 거래가격 등 거래상을 차별 대우하는 행위, (vii) 시장총국이 인정하는 기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이다. 전술한 행위에 관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임시규정 (2022년 개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다.

A. 불공정한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공정한 저가로 상품을 구입하는 행위(제14조)

불공정한 고가 또는 불공정한 저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



이 고려될 수 있다.

- 판매가격 또는 구매가격이 다른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장 조건 하에서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같은 상품 또는 비교 가능한 상품의 가격보다 훨씬 높거나 훨씬 낮은지 여부
- 판매가격 또는 구매가격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시장 조건의 지역에서 당해 사업자가 판매 또는 구매하는 상품 가격보다 훨씬 높거나 훨씬 낮은지 여부
- 원가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변동 폭을 초과하여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구매가격을 인하하였는지 여부
-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인상폭이 상품원가의 증가폭보다 훨씬 높거나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인하폭이 거래상대방의 원가 인하폭보다 훨씬 높은지 여부

시장 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를 판단할 때 판매 경로, 판매 모델, 공급 및 수요 상황, 감독관리 환경, 거래 프로세스, 원가 구조, 거래 상황 등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B.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제 15조)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였는지 여부 판단은 주로 가격이 평균가변비용(전체 가변비용을 생산판매량으로 나누었을 때 단위상품의 가변비용)보다 낮은지 여부를 고려한다. 한편, 인터넷 등 신흥 경영 방식에서의 무료 모델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 상품 및 그와 관련된 유료 상품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래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선한(鲜活) 상품, 계절 상품, 유통기간이 곧 만료되는 상품과 오래된 재고(积压) 상품을 할인하여 처리하는 경우
- 채무 변제, 생산능력 전환, 휴업으로 인해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상품의 홍보를 위해 관측활동을 하는 경우

C.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제16조)

거래 거부행위는 (i) 거래 상대방과의 기존 거래 수량을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행위, (ii) 거래 상대방과의 기존 거래를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행위, (iii) 새로운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 (iv) 거래 자체를 거절하지 않더라도 제한적 조건을 설정하여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 (v)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 중 합리적인 조건으로 필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등 세부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같은 상품을 구매 또는 교체할 수 있거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¹⁵, 당해 행위를 거래 거부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D.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행위(제17조)

가격할인 등의 수단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오로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또는 거래 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배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장지배적 행위의 남용으로 본다.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는 상품의 품질과 안전 보장을 위하여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나 또는 거래를 위해 진행된 특정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 등 상업적으로 정당한 이익의 추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E.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끼워 팔거나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행위(제18조)

- (i) 가격 이외의 불합리한 비용을 부가하는 행위, (ii) 거래관행, 소비

15 '정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함: (i) 불가항력 등 객관적 원인으로 인해 거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ii) 거래 상대방이 불량 신용기록이 있거나 경영상황 악화 등 상황이 발생하여 거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iii)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경우 사업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감소될 경우, (iv) 당해 행위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사유(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임시규정(2022년 개정) 제16조).



습관 등에 반하거나 상품의 기능을 무시하고 다른 상품을 강제로 끼워팔거나 결합판매하는 행위, (iii) 계약기간, 지불방식, 상품의 운송 및 교부방식 또는 서비스 제공방식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부가하는 행위, (iv) 상품의 판매지역, 판매대상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한을 부가하는 행위 등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

거래관행에 부합하거나 상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거나 특정된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등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여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판매행위 자체에 투입되는 원가를 절감하여 경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행위나 상품 구매자의 입장에서 구매가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라면 그 자체로 시장의 경쟁을 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 특정 상품의 대체성이 크지 않은 경우 끼워파는 상품이 구매자의 입장에서 구매할 필요성이 없으면 당해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되는 끼워 팔기 또는 불합리한 거래조건 부가 판매 행위로서 규제 받을 수 있다.

F. 정당한 이유 없이 동등한 조건의 거래자에 대하여 거래가격 등 거래상 차별 대우하는 행위(제19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등한 조건의 거래 상대방에게 (i) 거래 가격, 수량, 품목, 품질 등급을 다르게 하는 것, (ii) 상품의 구매 수량 등 할인 등의 우대조건을 다르게 하는 것, (iii) 교부방식, 지불조건을 다르게 하는 것, (iv) A/S의 내용 및 기한, 수리 내용 및 시간, 부품 공급, 기술적 지도 등 판매 후의 서비스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것 등은 거래 상대방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정당한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거래 상대방의 실제 수요에 따라 거래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것, 새로운 고객에 대해 그와 처음 거래를 할 때에만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판촉활동을 하는 것 등은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므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G. 시장총국이 인정하는 기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21조)

〈반독점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분에서도 포괄적 개념으로서 법률과 국무원이 규정하는 행위를 포함한 것으로 규정하여, 시장



경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다만, 어떠한 경우이든 시장총국에서 “기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인정하려면 사업자가 (i) 시장지배적지위 보유, (ii) 경쟁을 제한, 배제할 수 있는 행위를 실시, (iii) 정당한 이유 없음, 및 (iv) 당해 행위가 실제로 시장 경쟁을 제한, 배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효과(효과 요건)

경쟁 배제 · 제한 효과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 외의 사업자들, 제품의 생산량, 지역 및 소비자 등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였는지 여부
- 해당 제품의 경쟁 감소로 기술, 제품 등 혁신이 저해되었는지 여부
- 해당 시장 제품가격이 상승하였는지 여부

三.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 제한하는 행위 금지 규정(의견수렴안)〉에서는 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상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식재산권 분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를 판단할 때, 지식재산권의 대체 가능성, 하류 시장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의존 정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에 대한 제약 능력 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생산경영활동에 필요한 시설인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타 사업자에 대해 합리적인 조건으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해 허용허가하는 것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 행위의 경쟁 배제 · 제한 효과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제7조).

- 해당 지식재산권이 관련시장에서 합리적으로 대체될 수 없고 기타 사업자가 관련시장에 참여하는데 필요할 것
-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허용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시장의 경



쟁 또는 혁신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이익 또는 공공이익을 손해할 것

- 해당 지식재산권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불합리한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 끼워팔기행위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제9조).

- 지식재산권 사용허가(라이선스) 거래에서 허가인(라이선서)이 피허가인(라이선시)에게 기타 불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
- 지식재산권 사용허가 거래에서 허가인이 피허가인에게 일괄적인 사용허가를 받도록 강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행위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제10조).

-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가 개량한 기술에 대해 자신에게만 배타적으로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허가를 부여하도록 강요
- 거래상대방의 지식재산권 유효성에 대한 문제(이의) 제기 금지
- 거래상대방이 사용허가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쟁성 상품 또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
-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무효로 인정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계속적으로 권리 행사
- 거래상대방의 제3자와의 거래 금지
- 거래상대방에게 기타 불합리한 거래조건 부가

시장지배적 특허품 실체는 특허품을 이용해 아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14조).

- 불공정한 고가로 특허품 사용허가
-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품 구성원이 특허품 외에 독립적인 사용허가인으로서 특허를 사용허가하는 것을 제한



-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풀 구성원 또는 피허가인이 독립적으로 또는 제3자와 연합하여 특허풀 특허와 경쟁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
- 정당한 이유 없이 피허가인이 그가 개량하였거나 연구 및 개발한 기술을 배타적으로 또는 독점적으로 특허풀 실체 또는 특허풀 구성원에게만 사용허가를 부여하도록 강요
- 정당한 이유 없이 피허가인의 특허풀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이의) 제기 금지
- 정당한 이유 없이 조건이 동일한 특허풀 구성원 또는 동일한 관련시장의 피허가인에 대해 거래조건상 차별대우 실행
- 시장총국이 인정한 기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四. 관련 사례

- 원료약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처벌 사례

▷ 사례: 국시감처[2020]8호 처벌결정

✓ 처벌대상 업체

- 산둥강혜의약유한회사(山东康惠医药有限公司)
- 유방보운혜의약유한회사(潍坊普云惠医药有限公司)
- 유방태양신의약유한회사(潍坊太阳神医药有限公司)

✓ 조사 내용

- 2015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처벌대상 업체들은 중국 주사용 글루콘산칼슘 원료약 판매시장에서의 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고 비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행위를 실시함

✓ 처벌

- 시장총국은 2020. 4. 9. 3개 처벌대상 업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위법소득 몰수 및 과징금 총 3.255억 위안을 부과함

- 시사점:

본 사례에서 시장총국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여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 지분관계가 없더라도 사업자 간의 지배는 실현될 수 있다. 본 사례에서 3개 기업은 인원 및 사업 공유, 은행계좌 통제 또는 이윤 반환 등 방식을 통해 대외적으로 통일된 사업실체를 구성하였다. 또한, 해당 3개 업체를 독점행위를 실시한 공동 주체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매출액을 확정할 때 서로의 매출액을 공제하였다.
- 본 사례에서 시장총국은 공동의 위법행위를 실시한 주체들에 대해 처음으로 역할의 중요도를 구분하여 3개 업체에 대해 각각 2018년 연간 매출액의 10%, 9%, 8%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특히, 전년도 매출액의 10% 처벌은 최고 처벌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 Tencent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치후360의 손해배상청구

▷ 사례: 최고법원의 (2013)민3중자제4호 판결

2012. 4. Tencent는 치후360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는 Tencent QQ메신저 프로그램을 로그인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고, 그 결과 해당 메신저에 로그인 하기 위해서는 360보안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하였음. 이에 치후360은 Tencent가 <반독점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최고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최고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 ✓ 본 사건에서 말하는 시장범위의 확정과 관련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사건에서 시장의 범위를 꼭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범위의 확정이 필요할 경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주장한 당사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함. 치후360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치후360이 주장하는 시장범위 전부를 인정할 수 없고, 중국내륙의 실시간 통신서비스 시장까지만 시장범위로 인정함(기타 주장은 기각됨)
- ✓ 시장지배적지위의 인정과 관련하여, 시장지배적지위는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상품가격, 수량, 또는 기타 거래조건을 통제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주는 능력이 있는 지위라고 하면서, 시장지배적지위와 작용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함.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Tencent의 시장점유율,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 Tencent의 상품가격, 수량 또는 기타 거래조건을 통제하는 능력, Tencent의 재력과 기술조건, 다른 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의 Tencent에 대한 의존도, 다른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 최고법원은 Tencent의 높은 시장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고, QQ메신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Tencent가 제품가격이나 수량 기타 거래조건에 대하여 통제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바이두, 알리바바 등의 인터넷 사업자도 Tencent 못지 않은 재력과 기술조건을 구비하고 있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QQ메신저만 사용할 필요가 없어 다른 사업자의 Tencent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크지 않으며,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우 시장 진입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증거만으로는 Tencent에게 시장지배적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관련하여, 그 행위가 소비자와 경쟁에 적극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Tencent의 “상품동시사용불가” 행위가 거래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구체적으로 소비자이익에 대한 영향, 해당 행위의 동기, 시장경쟁에 끼치는 영향 등을 분석)와 Tencent의 행위가 끼워팔기행위에 해당하는지(구체적으로 끼워팔 상품과 본 상품이 독립적인 상품인지 여부, 판매자가 해당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판매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끼워팔기의 정당성, 거래습관과 소비습관 등을 위배했는지 여부와 경쟁에 소극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를 통해 판단함
- ✓ 최고법원은 아래의 이유로 Tencen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Tencent 행위의 소비자 이익에 대한 영향, 행위의 동기 및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Tencent의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가져다 주었지만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거하고 제한하는 현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Tencent의 행위로 인하여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위를 보안 프로그램 시장에까지 확장하였다고 볼 확실한 증거가 없고, 통신서비스 프로그램과 보안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며, 두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것에 대한 강제성이 현저하지 않음

□ 시사점:

본 소송에서 최고법원은 아래와 같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리하였다.

- 시장지배적지위 확정에 있어 관련 시장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는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
- 관련 시장 확정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는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시장지배적지위를 판단할 때 당사자가 관련 시장에서 상품가격, 수량 또는 기타 거래조건을 통제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주는 능력이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다.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여부는 당사자의 행위가 소비자 및 경쟁에 미치는 적극적, 소극적 영향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구체적 기준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다.
- 쉐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 사례: 국가발개위 [2015]1호 행정처벌

국가발개위는 퀄컴(Qualcomm Incorporated)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2013. 11. 퀄컴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수의 전문가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퀄컴의 기술과 변론의견을 청취한 후 국가발개위는 퀄컴에게 행정처벌을 부과하였고, 퀄컴은 이에 대해 항변하거나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국가발개위가 처벌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퀄컴은 무선표준필수특허허가시장과 기저대역칩(基帶芯片)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음
 - 무선표준필수특허허가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근거: ① 퀄컴이 관련 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② 퀄컴은 무선표준필수특허허가시장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③ 무선통신산업체조업체가 퀄컴의 무선표준필수특허에 대해 고도로 의존하고 있고, 또한 ④ 다른 사업자가 관련 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움
 - 퀄컴이 기저대역칩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근거: ① 퀄컴이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하였고, ② 퀄컴은 관련 시장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으며, ③ 주요 무선통신산업체조업체가 퀄컴의 기저대역칩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으며, ④기저대역칩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음
- ✓ 퀄컴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무선표준필수특허허가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고가의 특허허가비를 받은 점, ② 무선표준필수특허허가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무선표준필수특허허가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비무선표준필수특허허가를 끼워팔기한 점, ③ 퀄컴이 기저대역칩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기저대역칩 판매과정에서 불합리한 조건을 추가한 점 등
 - 그 중 ① 불공정한 고가의 특허허가비를 수취한 점과 관련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무선표준필수특허에 대해 특허료를 받은 점(CDMA무선표준필수특허는 특허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약체결 시 특허료를 받았고, 퀄컴은 피허가인에게 구체적인 특허허가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특허허가계약 기간은 장기 또는 무기한임), 피허가인에게 피허가인의 특허를 무료로 역허가(逆許可) 하도록 한 점이 인정됨. ② 무선표준필수특허허가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비무선표준필수특허허가를 끼워팔기 한 점과 관련하여, <사용자지원허가협약>, <조사문의기록>, <국가개혁발전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진술성 답변>과 피허가인이 제출한 관련자료가 증거로 인정됨. ③ 또한 마지막 기저대역칩 판매과정에서 불합리한 조건을 추가한 점과 관련하여 퀄컴이 계약체결 시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계약에 삽입한 점이 증거로 인정됨

□ 시사점:

본 사례에서 국가발개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 해당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상황, 사업자의 시장지배능력, 다른 사업자의 당해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다른 사업자의 해당 시장에 대한 진입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대상회사가 시장지배적지



위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고액의 거래비용을 요구했는지, 정당한 이유없이 기타 상품을 본 상품에 끼워팔기 했는지, 판매과정에서 불합리한 조건을 요구했는지 등 기준을 통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한다.
- 상기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五. 실무 중 대응방안

-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될 가능성에 대해 미리 판단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만 적용된다.
 - 실무적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단독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남용행위”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시장의 획정 및 시장점유율 등의 복잡한 요소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회사 내부 교육, 특히 마케팅, 영업 등 부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남용행위”의 위법성 및 그 리스크를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필요시 내부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진행하거나 준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기업결합

一. 기업결합이란

기업결합이란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거나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기업 간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의미한다.

二. 기업결합의 신고

1) 신고의 취지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은 분산투자 효과로 투자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술 혁신, 시장의 변화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달성으로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사업자와의 결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목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면밀히 심사 및 분석하여 경쟁제한적 폐해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에서 기업결합신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반독점법상으로는 매출액이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기업결합행위는 시장총국 반독점국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독점부서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기업결합을 실시할 수 없다.

〈반독점법〉은 명문으로 역외적용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라 중국 경외에서 발생하는 기업결합행위라 하더라도 신고 요건(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총국 반독점국에 신고해야 한다.

2) 신고 요건

반독점법에 의하면, 신고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은 시장총국 반독점국에서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반독점법 제26조).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가 (i) 반독점법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ii)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022년 개정 <반독점법> 제26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새로 추가하였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결합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신고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기업결합이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 법집행 기관은 사업자에게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즉 기업결합신고 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효과 있을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조사를 받고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

A.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a. 기업결합행위 유형

<반독점법>에 따르면 다음의 행위는 기업결합에 해당한다(반독점법 제25조).

- 사업자 간의 합병
- 사업자가 지분 또는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업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는 행위
- 합자회사 신설의 경우 만약 2개 또는 그 이상의 사업자가 당해 합자회사를 공동지배할 경우 기업결합에 해당하며, 하나의 사업자가 당해 합자회사를 단독지배하고 다른 사업자는 지배권이 없는 경우는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아니함(기업결합신고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反垄断局关于经营者集中申报的指导意见(2018修订)) 제4조)
- 사업자가 계약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업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행위

b. 지배권의 의미

□ 지배권의 유형

- 지도의견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래를 통해 다른 사업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업자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지배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배권은 단독지배와 공동지배를 포함한다. 학설상 단독지배와 공동지배는 다음의 의



미를 가진다.

- ✓ 단독지배라 함은 1개의 사업자가 피지배사업자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 ✓ 공동지배라 함은 2개 혹은 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지배사업자의 전략적 상업결정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적 상업결정에는 주요한 투자 혹은 관리인원의 임명, 재무예산, 경영계획, 중대한 투자 및 기타 특정시장권리 등이 포함된다.

□ 지배권의 판단기준

- 지배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로 다음의 요건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지도의견 제3조).
- ① 기업결합계약(합자계약서, 지분양수도계약서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 및 사업자의 정관
- ② 거래목적과 미래의 계획
- ③ 거래 전후 대상사업자의 지분구조 및 그 변화
- ④ 대상사업자 주주총회의 의결사항과 의결 메커니즘
- ⑤ 대상사업자 주주총회의 과거 출석비율 및 의결상황
- ⑥ 대상사업자 동사회(이사회)와 감사회의 구성 및 그 의결 메커니즘
- ⑦ 대상사업자 주주, 동사(이사)에게 의결권을 위탁하여 행사하는 등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 ⑧ 대상사업자 고급관리인원의 지명, 임면 등
- ⑨ 기타 요소(대상사업자 주주간의 관계와 묵시적 합의 정도(默契程度), 계약, 합작, 특수관계자와의 관계 등 경로를 통해 대상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의사결정을 하기로 합의한 주체가 있는지 여부, 해당 사업자와 대상사업자 간 중대한 상업관계, 합작계약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포함)



□ 지배권 취득방식

- 지배권의 취득은 사업자가 거래를 통해 직접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취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만약 A가 B, C, D를 지배하고 있고 B, C, D가 거래를 통해 각각 E의 지분 일부를 취득한 경우, 단일 사업자가 E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공동으로 E의 지배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 사업자가 단계별 거래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단계별 거래 간의 관계가 밀접한지, 각 거래의 간격은 어떠한지, 각 거래의 목적이 동일한지, 최종적으로 동일한 사업자(및 관계사)가 지배권을 취득하였는지 등 요소들에 따라 기업결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첫단계 거래를 실시할 때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

▷ 사례: 한국 OCI사의 기업결합신고 미이행

✓ 사건개요

- 한국 OCI사¹⁶, 일본 덕산주식회사¹⁷ 및 말레이시아 덕산사¹⁸는 2016. 9. 29. 한국 OCI사가 말레이시아 덕산사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본건 계약에 따르면, 한국 OCI사는 (i) 말레이시아 덕산사가 신규 발행하는 50,000,000주를 취득하고(2016. 10. 7. 취득 완료, 이하 “본건 1차 신주 취득”), 이후 2017. 3. 31.자로 (ii) 말레이시아 덕산사가 추가로 신규 발행하는 210,000,000주를 취득하며, (iii) 일본 덕산사로부터 일본 덕산사가 보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덕산사 주식 전부(252,356,839주)를 인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 OCI사는 본건 1차 신주 취득 후 비로소 중국 상무부(당시 기업결합 승인부서)에 본건에 관한 기업결합신고를 하였다.

✓ 상무부(당시 기업결합 승인부서)의 처벌 내용 및 관련 분석

- 상무부는 본건 거래가 여러 계열사가 참여하고 단계별로 실시한 바스켓거래로서, 각종 거래가 순차적으로 전개 및 이행되었으며 거래간에 서로 의존하고 거래 목적이 동일하며 최종적으로 동일 사업자가 지배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기업결합에 해당하며, 사전에 중국 상무부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국 OCI사에 대하여 15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만, 상무부는 본건 거래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거나 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 OCI사에 대하여 과징금 이외에 별도의 시정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16 한국 OCI는 폴리실리콘과 같은 태양광 관련 소재 등 무기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17 일본 덕산사는 시멘트, 화학제품, 환경에너지 등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18 말레이시아 덕산사는 일본 덕산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 시사점

- 기업결합신고를 피하기 위해 한 개의 거래를 신고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여러 개의 거래로 나누어 단계 별로 실시할 경우, 기업결합신고 없이 기업결합을 실시한 행위로 간주되어 반독점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처벌 사례들을 볼 때, 반독점국에서 상무부가 여러 차례의 거래를 한 개의 기업결합행위로 간주하는 핵심 요소들에는 다음 몇 가지가 있다.
 - 거래 실시 전,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 등을 통해 각 거래에 대해 안배를 하였는지
 - 각 거래 간의 관계가 밀접한지
 - 각 거래 간의 시간 간격은 어떠한지
 - 각 거래 실시에 일치되는 거래목적(최종목적)이 있는지
 - 최종적으로 동일한 사업자(및 관계사)가 지배권을 취득하는지
-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업결합행위에 해당는지를 판단하려면 위와 같이 지배권 취득에 해당는지 등의 복잡한 문제를 분석해야 하므로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B. 매출액 요건

아래 매출액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전세계 매출액¹⁹의 합계가 100억 위안을 초과하고, 그 중 2개 이상의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각각의 중국 내에서의 매출액²⁰ 각각 4억 위안을 초과할 경우
-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에서의 매출액 합계가 20억 위안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이상의 사업자 각각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에서의 매출액이 각각 4억 위안을 초과할 경우
- ♣ 참고로, 2022. 6. 27. 공포된 <기업결합신고 기준 관련 규정(입법안)>에 따르면 신고요건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전세계 매출액 합계가 120억 위안(현행 기준은 100억 위안)을 초과하고, 그 중 2개 이상의 사

19 '전 세계 매출액'이라 함은 중국 경내의 매출액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0 '중국 내 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 제품 또는 서비스의 매수인 소재지가 중국 경내인 경우를 말하고, 사업자가 중국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포함하나, 중국에서 중국 이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수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각각의 중국 내에서의 매출액이 각각 8억 위안 (현행 기준은 4억 위안)을 초과할 경우

-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에서의 매출액 합계가 40억 위안(현행 기준은 20억 위안)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이상의 사업자 각각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에서의 매출액이 각각 8억 위안(현행 기준은 4억 위안)을 초과할 경우
- 상기 신고요건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다음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함: (a)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중 어느 한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 매출액이 1,000억 위안을 초과, (b) 피합병 당사자(합병의 다른 당사자), 지분/자산/계약 등 거래를 통해 지배를 받게 되는 사업자의 시장가치(평가가치)가 8억 위안 이상이고, 해당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 매출액이 글로벌 매출액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 <기업결합신고 기준 관련 규정(입법안)>의 위 내용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해당 내용과 개정법 제26조 제2 항(기업결합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신고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기업결합이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 법집행기관은 사업자에게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에 추가된 내용을 볼 때 중국 내 기업결합 신고 실무는 다음과 같은 추세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결합 신고의 요건 중 매출액 기준이 상향됨
- 매출액이 특별히 크고 중국 내 매출액이 글로벌 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업자가 기업 결합에 참여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들의 매출액이 매우 작더라도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
-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위 매출액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시장총국이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증거가 있어야 함)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 특히 기업은 해당 기업결합이 위 매출액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제보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한 시장총국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기업결합을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이에 불응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진행하고 거래 회복 등 조치를 명하거나 제한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거나 시장총국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업종 내의 결합은 사전상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a.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의미

현행법상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린 규정은 없으나(부록2. 기업결합반독점심사신고표의 각주에서 설명함) <기업결합 심사규정(의견수렴안)> 제9조에서 처음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의미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다음 기준에 따라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확정한다.

- 사업자들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각 당사자는 모두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임
- 사업자가 기타 사업자에 대해 단독지배권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기타 사업자에 대한 지배관계가 기존의 공동지배에서 단독지배로 변경된 경우, 단독지배권을 취득한 사업자와 기타 사업자가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임
- 사업자가 기타 사업자에 대한 공동지배권을 취득한 경우, 거래 후 당해 기타 사업자에 대해 공동으로 지배하는 모든 사업자 및 기타 사업자가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임. 단, 기타 사업자가 기존의 1개 사업자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되었으나, 거래 후 당해 사업자가 기타 사업자에 대한 지배가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된 경우, 거래 후 기타 사업자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해당됨(당해 기타 사업자는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아님)
- 사업자들이 합자기업을 신설하는 경우, 합자기업에 대해 공동지배권을 보유하는 사업자들만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해당됨(합자기업 자체는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아님)
- 사업자가 기타 사업자에 대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당



해 사업자와 기타 사업자가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임

b.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매출액의 합계의 의미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매출액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 사업자
자들의 매출액을 합산한다. 다만, 이하 ①로부터 ⑤까지 열거한 사
업자 사이에 발생된 매출액은 매출액 합산 시 제외하고, 그의 전년
도 혹은 그 이전에 이미 매각한 업무 혹은 자산 부분의 매출액도 포
합하지 않는다.

- ① 해당 단일 사업자
- ② 제①항의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사업자
- ③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①항의 사업자를 지배하는 다른 사업자
- ④ 제③항의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사업자
- ⑤ 제①항 내지 제④항에서 말하는 둘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
동으로 지배하는 다른 사업자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단일 사업자 간 혹은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
업자와 기업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 간에 공동으로 지배하는
다른 사업자가 있을 경우,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단일 사업자의 영업
액은 피공동지배 사업자와 제3자 사업자간의 영업액을 포함해야 하
며 이러한 영업액은 한 번만 계산된다.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단일 사업자 간에 공동으로 지배하는 다른 사
업자가 있을 경우,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영업액 합계
에는 피공동지배 사업자와 여하한 기업결합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그를 지배하는 사업자 혹은 후자와 지배관계가 있는 사업자 간에 발
생한 영업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자의 공동 지배를
받을 경우, 영업액에는 모든 지배자의 영업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c. 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인 매출액 산정에 관한 특칙

기업결합이 단일 또는 다수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매수하는 것을 포
합하는 경우, 양도인과 관련하여서는 기업결합에 관여하는 부분만



의 영업액만을 계산한다(기업결합신고에 관한 지도의견 제7조 제1항).

3) 기업결합신고의무의 면제

아래와 같은 계열사간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반독점법 제27조).

-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 중 하나의 사업자가 기타 모든 사업자의 50%를 초과하는 의결권 있는 지분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50%를 초과하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이나 자산을 기업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업결합신고 의무자

- 합병방식으로 기업결합을 실시하는 경우, 합병에 참여하는 각 사업자가 신고한다.
- 기타 방식의 기업결합은 지배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신고하며 다른 사업자는 이에 협조한다.
- 동일한 기업결합 신고사건에서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2개 혹은 2개 이상일 시, 약정을 통해 그 중 1개 사업자가 책임지고 신고할 수 있고, 공동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만일 어느 한 사업자가 신고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자가 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 한 법률책임은 위 약정에 의해 감면될 수 없다. 신고 의무자가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타 기업결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신고할 수 있다.

5) 기업결합신고 절차

A. 기업결합신고 전 사전상담 제도

사업자는 기업결합 신고 이전에 시장총국 반독점국에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상담은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 신고 당사자에게 비공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



는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사전상담은 기업결합신고의 필수절차가 아니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전상담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담에 관련한 거래는 진실되고 상대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또한 상담하고자 하는 문제는 신고하고자 하거나 이미 신고한 기업결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B. 기업결합신고 일반절차

내역	담당부처	기한/비고
(1) 신고서 제출 단계	시장총국 반독점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독점국에서 약 1-3차 질의서를 보내, 보충 자료 제출 및 추가 설명을 요구함. 실무 관행을 보면, 굉장히 지엽적이거나 관련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신고서 제출 전에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전상담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사전상담 시에 기계적으로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사전 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이유로 최근 실무에서는 이 절차의 활용 빈도 및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음
(2) 입안(신고서 접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질의서 및 보완 절차를 거쳐, 통상적으로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약 3-6주 소요된 시점에서 입안하고 입안 사실을 통보
(3) 심사 및 결정 단계 - 초보심사 (Phase I) - 진일보심사 (Phase II) - 연장심사 (Phase II 중 연장되는 경우) - 결정(승인/금지/조건부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보심사 (Phase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 기한 30일 초보심사 기간 동안 반독점국은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다른 정부부서나 제3자(동종 기업, 사업자 단체, 경쟁자, 상하방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함 반독점국은 위 의견 청취 결과에 따라 1-2회 정도 보충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간혹 반독점국에서 당사자들을 불러 대면 회의를 하기도 함. 초보심사 기간(30일)이 모두 경과할 때까지 반독점국에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



	<p>시장총국 반독점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일보심사 (Phase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기한 90일 - 실무 관행을 보면,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에도 초보심사의 법정 기한 경과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일단 진일보심사 단계로 이송한 후 진일보심사 단계 중반기에서 통과 결정을 내는 경우가 많음 - 이슈가 있는 경우 반독점국에서 추가 질의를 하기도 함 ● 연장심사 (Phase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기한 60일 -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최종 수리되는 건에 있어서도 연장심사에까지 돌입하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함
<p>소요기간 합계 (정상 승인 경우)</p>	<p>가) 준비 및 신고서 작성: 30-45일 나) 신고서 제출부터 입안까지: 45-90일 다) 심사 및 결정 -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 50-70일 - 경쟁제한성 등 이슈가 있는 경우: 75-90일 종합: 자료준비기간 제외 시 약 95-180일 소요 (자료준비기간 포함 시 약 125-225일 소요)</p>	

C. 기업결합신고 잠정 중단 제도(“Stop-the-Clock”)

〈반독점법〉 제32조는 기업결합 신고 과정에서 다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사 기간 계산을 잠시 중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업자가 규정에 따라 문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기업결합 신고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상황 및 사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을 시 심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 조건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사업자가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 시사점

- 2022년 개정 전의 <반독점법 및 기업결합심사임시규정>에 의하면 기업결합의 심사기간은 입건일부터 180일이다. 그런데 일부 복잡한 기업결합 사건에서 심사기간이 초과됨에 따라 시장총국에서 기업이 기존 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다. 2022년 개정 이후 반독점법에 상기 심사기간 잠시 중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장총국이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총국의 기업결합 심사의 “합법적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범화된 신청 자료를 준비하고 시장총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부가 조건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D. 기업결합 신고의 유형과 등급을 나누는 심사제도

<반독점법> 제37조는 국무원 반독점 법집행기관은 법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의 유형과 등급을 나누는 심사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国计民生) 등 영역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해야 하며, 심사의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 시사점

- 시장총국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향후 기업결합 신고 건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와 같이 시장총국이 모든 기업결합 신고 건을 면밀히 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개정 이후 <반독점법>에 이와 같은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향후 시장총국은 사업자의 업종 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사업자의 규모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며, 중요한 업종에 해당하거나 높은 등급으로 분류된 결합은 시장총국에서 직접 심사하고, 그 외의 산업과 등급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지방 반독점 법집행기관에 권한을 위임하여 심사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현재는 2025. 7. 31.까지 간이안건에 대해서만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에 권한을 위임하였음).



E. 간이안건 신고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적은 기업결합에 대하여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간이안건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간이안건으로 신고할 수 있고, 간이안건으로 입안이 확정되면 시장총국은 동 건을 간이안건으로 심사하겠다는 내용을 공고하고, 동 기간 동안 이견이 없으면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a. 간이안건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간이안건으로 신고할 수 있다(기업결합 심사 임시규정(2022 개정)(이하 “잠정규정”) 제17조).

- ① 동일한 관련 시장 내에서 기업결합에 참여한 모든 사업자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의 합이 15% 미만인 경우
- ② 상류(up stream)와 하류(down stream) 산업체인 관계에 있는 기업결합 참여 사업자가 상류와 하류 산업체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각 25% 미만인 경우
- ③ 동일한 관련 시장에 있지 않거나 상류와 하류 산업체인 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결합 참여 사업자가 거래와 관련된 각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각 25% 미만인 경우
- ④ 기업결합 참여 사업자가 중국 국경 외에 합자기업을 설립하였으나, 당해 합자기업이 중국 국경 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 ⑤ 기업결합 참여 사업자가 국경 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인수하였으나, 해당 국경의 기업이 중국 국경 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 ⑥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합자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그 중에 한 개 또는 한 개 이상의 사업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

b. 간이안건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위의 기업결합 간이안건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사유가 있는 기



업결합사건은 간이안건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임시규정 제18조).

- 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합자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그 중의 한 사업자의 지배를 받게 되고, 당해 사업자가 합자기업과 동일한 시장의 경쟁자에 속하며, 시장점유율이 15%보다 높을 경우
- ② 기업결합과 관련된 관련 시장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 ③ 기업결합이 시장접근, 기술진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④ 기업결합이 소비자 및 기타 관련 사업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⑤ 기업결합이 국민경제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⑥ 시장총국이 시장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경우

c. 간이안건 신고 절차

간이안건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사업자는 간이안건으로 신고할 수 있다(경영자집중 간이사건신고에 관한 지도의견(2018년 개정)).

간이안건 신고의 대략적인 절차: 신고인이 반독점국에 신고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면, 반독점국은 제출한 신고문서 및 자료를 심사한 이후, 간이안건 입안 여부를 결정한다. 간이안건 요건에 부합하면 간이안건으로 입안하고 간이안건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반안건으로 다시 신고해야 한다. 간이안건으로 입안한 경우 반독점국은 반독점국 사이트에 10일 동안 이를 공시한다. 공시 후 반독점국은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 공시기간 동안 동일한 업종의 경쟁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독점국이 판단하기에 간이안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반독점국은 일반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즉, 실무상 반독점국은 신고인에게 기존의 간이안건 신고를 취소하고 다시 일반안건 절차에 따라 신고할 것을 요구한다.



三. 경쟁제한성 심사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여부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심사한다(〈반독점법〉 제33조)

- ①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관련 시장 점유율 및 시장 통제력
- ② 관련 시장의 시장집중도
- ③ 시장 진출, 기술 진보에 대한 기업결합의 영향
- ④ 소비자와 다른 사업자에 대한 기업결합의 영향
- ⑤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기업결합의 영향
- ⑥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

四. 기업결합의 심사결정 및 공고

반독점국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 후 금지, 조건부승인 또는 승인 결정을 내린다. 금지 또는 조건부승인을 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공고해야 한다.

2022년 10월 말 기준, 시장총국과 기존 상무부 산하 반독점국 홈페이지에 공시된 금지 및 조건부 결정 사례 총 57건 중 금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래와 같이 3건뿐이고,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진 것은 총 54건이다. 조건부 승인 결정 사례 중 유형자산,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 또는 관련 권익의 분리(剥离) 등 조치가 포함된 사례는 총 21건이다.

- 1) 금지: 기업결합이 경쟁효과를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다.

▷ 기업결합 금지 사례1:

2008. 9. 3. 미국 코카콜라회사가 179.2억 홍콩달러로 중국의 음료수 생산판매업체인 H사(中国汇源果汁集团有限公司) 지분 전부를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중국 반독점부서인 상무부는 여러 조사, 논증을 거쳐 해당 기업결합이 주스음료시장의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 시장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기업결합 금지 결정을 내림



▷ 기업결합 금지 사례2 :

2013. 9. 18. 덴마크의 A.P. Møller - Maersk A/S, MSC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S.A.와 프랑스의CMA CGM S.A.는 네트워크센터를 설립하고자 중국 상무부에 기업결합을 신고함. 상무부는 본건 거래가 당사자 간에 긴밀한 연합경영 관계를 형성하고, 거래 당사자들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며, 관련 시장의 집중 정도를 대폭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함. 또한, 본건 거래는 관련 시장의 진입 장벽을 추가로 높일 수 있으며 다른 시장에서 열세에 처한 사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조건부 승인에 관한 방안들을 여러 번 제출하였지만, 상무부는 최종 방안이 법적 근거와 설득력 있는 증거가 부족함으로 상무부의 경쟁상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본건 거래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 금지 결정을 내림

▷ 기업결합 금지 사례3 :

2021. 7. 10. 텐센트는 HUYA Inc.(케이먼 법인)을 통해 DouYu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케이먼 법인)의 전부의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였는바, 해당 거래 후 텐센트는 합병 기업에 대한 단독 지배권을 보유하게 될 예정이었다. 이에 시장총국은 여러 조사, 논증을 거쳐 해당 기업결합 후, 텐센트가 상류와 하류 시장에 대해 비교적 강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게 될 것인바, 하류의 게임 라이브 방송 시장의 경쟁대상에 대해 온라인 게임 저작권 라이선스를 분쇄하고, 상류의 온라인게임운영 서비스 시장의 경쟁대상에 대해 라이브방송 홍보 루트를 차단함으로써 상류 및 하류 시장에서 폐쇄적인 루프(closed circle, 闭环)를 형성하여 기존 경쟁대상을 배제하고 잠재적 경쟁대상을 제거할 능력과 동기를 구비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기업결합에 대한 금지 결정을 내림

2) 조건부승인: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에 대한 불리한 영향이 있으나 그러한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 제한적인 조건을 부가하여 승인할 수 있다.

- 기존 조건부승인 사례에서 부가된 조건으로는 지분 비율 확대 금지, 지분 보유 금지, 특정 사업부문 매각, 생산능력 감축, 회사명칭 변경, 일정 기간 동안 생산회사 인수 및 공장 설립 금지, 중국사업자에 대한 무차별적 물품공급 보증, 거래처들과의 합리적인 거래 보장 등이 있다.
- 사업자는 지정기한 내에 제한조건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독점국은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주식 또는 자산 매각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시장총국은 제3자에게 위탁하여 사업자에게 부가된 조건의 이행 상황을 감독하고 분리작업 단계에서의 분리 사업의 매각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 기업결합 조건부승인 사례1 :

- ✓ 2018. 1. 25. BAYER의 MONSANTO 지분 인수에 대하여, 당시 중국 반독점부서인 상무부는 해당 기업결합이 중국의 비선택성 제초제, 중국 장일조 양파씨앗, 절삭가공판매 당근종자, 대과 토마토종자 등 채소종자 시장, 전세계 옥수수, 콩, 코트, 유채시장 및 디지털농업시장에 대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가한 승인 결정을 내림
 - 세계적 범위에서 BAYER의 채소종자 업무, 비선택성 제초제 업무, 옥수수, 콩, 코트, 유채시장 업무를 분리해야 함
 - BAYER, MONSANTO 및 기업결합 후의 실체(entity)의 상업화 디지털 농업제품은 중국 시장에 진입한 날로부터 5년동안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는 조건으로 중국의 모든 농업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BAYER, MONSANTO 및 기업결합 후 실체가 중국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농업 플랫폼에 접속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기업결합 조건부승인 사례2 :

- ✓ 2021. 6. 4. Danfoss가 Eaton의 유압사업을 인수하여 단독 지배권을 취득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시장총국은 당해 거래로 인해 거래 당사자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하여 관련시장의 집중도가 대폭 제고될 수 있고,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긴밀한 경쟁 관계가 제거될 수 있으며, 관련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제고될 수 있고, 하류 고객의 가격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기때문에, 당해 거래는 중국 싸이클로이드 모터(cycloid motor, 摆线马达)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쟁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림
 - Danfoss동력시스템(강소)유압회사의 싸이클로이드 모터 사업(모든 유형자산,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 합의를, 임대계약, 협약 및 고객 주문, 인원 등)을 분리해야 함

▷ 기업결합 조건부승인 사례3 (사업 분리 및 분리 업무 위탁 사례) :

- ✓ 2022. 1. 21. 중국대만 글로벌웨이퍼주식회사가 독일 Siltronic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 지배권을 취득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시장총국은 당해 거래로 인해 당사자들의 시장 지배력이 제고되고 관련시장의 집중도가 제고될 수 있으며,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 조정 동기와 능력이 증가되며,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 단기간 내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당해 거래는 중국 및 글로벌 8 인치 Float Zone wafer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쟁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림
 - 심사 결정 이후 6개월 내(별도 승인을 거쳐 3개월 연장 가능)에 글로벌웨이퍼의 Float Zone wafer 사업 분리 완료. 해당 기간 내에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총국은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적절한 분리사업 매수인을 찾아서 분리작업을 완료함
 - RAND 원칙에 따라 중국 고객에게 각 종 웨이퍼 제품을 계속 판매함
 - 중국 고객과의 계약관계 만료 이후 중국 고객이 재계약을 원하면 결합 후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아니되고, 재계약 조건은 기존 계약 조건보다 낮아서는 아니됨



3) 승인: 기업결합이 경쟁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경우

五.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

중국은 <반독점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기업결합 신고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8년에는 신고 건수가 17건에 불과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신고 건수가 458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705건으로 급증하였다.

2021년에 신고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시장총국이 2021년부터 과거 미신고 사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gun-jumping 행위(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결합 행위를 실행하거나, 신고를 했지만 승인을 받기 전에 결합을 실행한 행위)로 인해 처벌된 사례는 매년 20건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2021년에는 무려 107건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 1분기에도 처벌된 사례가 17건이 있었다. 2022. 7. 10. 시장총국은 홈페이지에 28건의 gun-jumping 행위(Alibaba, Weibo, Tencent, Didi, Bilibili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다수임)에 대한 처벌결정문을 공개하였다. 그 중 27건은 현행 <반독점법> 제48조에 따른 최고 행정처벌 기준인 5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와 같이 시장총국은 최근 들어 이른바 gun-jumping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입장은 아래와 같이 신고요건에 미달한 결합에 대한 처벌 가능성, 처벌 기준 제고 등의 내용으로 2022년 개정된 <반독점법>에 반영되었으므로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신고요건에 미달한 결합에 대한 조사 가능성

<반독점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기업결합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신고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기업결합이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관은 사업자에게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위 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2) 기업결합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제고

〈반독점법〉 제58조는 (i) 경쟁 배제·제한 효과가 존재하는 결합의 경우 거래 회복 등 조치 외에도 직전연도 매출액의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ii) 경쟁 배제·제한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건에서는 5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六. 실무 중 대응방안

1)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벌 리스크 및 비용 증가

2022년 〈반독점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기준이 대폭 인상되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M&A(지분 또는 자산의 양수도 포함), 합자회사 설립 등의 거래에서 기업결합 신고 의무 존부 확인 및 신고의무 이행이 더욱 중요해졌다. M&A, 합자회사 설립 등의 거래에서 기업결합 신고의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 거래의 일정에 기업결합 신고 요부의 검토 및 신고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고려되어야 하며, 기업 내부의 투자부서, 기획부서 등에도 기업결합 신고 의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기업결합 신고의무 미이행 행위는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시장총국이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벌 처분시효(2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위와 같이 〈반독점법〉 개정 후, 개정전의 신고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하여도 개정 후 〈반독점법〉의 처벌기준에 따라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즉 더욱 높은 과징금을 처벌할 가능성이 있음).

2) 심사절차의 엄격화

- 최근 기업결합신고 사안 중 조건부승인 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부가된 조건은 각 기업결합 사안별로 서로 상이하고 그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심사 과정에서 시장에서의 수직적 거래관계, 경쟁상황을 분석한 후 신고자 및 제3자인 시장참여자와의 논의를 거쳐 부가 조건을 결정하는데, 이는 반독점국의 심사가 구체적이고 엄격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에 따라 중국에서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하려는 한국 기업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관련 시장 획정, 경쟁제한성 등에 대해 사전에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4. 행정독점행위

一. 행정독점행위란

행정독점행위란 행정권 남용에 의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라고도 하는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위임한 공공관리 사무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하 “공공조직”)이 행정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반독점법 제10조).

二. 행정독점의 요건

행정독점의 구성 요건은 (i) 행위 주체가 행정기관 또는 공공조직일 것, (ii) 행정권 남용행위를 하였을 것, (iii)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의 세 가지이다.

1) 행정독점의 주체

행정독점의 주체는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수권한 공공관리 사무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2) 행정권 남용행위

행정권력 남용행위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 행정권 남용에 의한 거래강제(반독점법 제39조)

행정기관과 공공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업체나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그가 지정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경영·구매·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변형적인 방법을 통해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 제지에 관한



규정(의견수렴안)) 이하 “행정권 남용 제지 의견수렴안”) 제5조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 행정승인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압시, 거절 또는 지연, 중복 검수, 플랫폼 또는 네트워크 접속 거부 등 방식으로 특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경영·구매·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변형적인 방법을 통해 강제하는 행위
- 입찰자의 소재지, 소유제 유형, 조직 유형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특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경영·구매·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변형적인 방법을 통해 강제하는 행위
- 법률, 법규의 근거 규정 없이 불합리한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명부 라이브러리, 대안 라이브러리, 자격 라이브러리 등을 설치하여 특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경영·구매·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변형적인 방법을 통해 강제하는 행위
- 특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경영·구매·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변형적인 방법을 통해 강제하는 기타 행위

▷ 사례1: 광둥성 고급법원의 (2015) 월고법행종자 제228호 판결

✓ 사건 개요

- 원고인 심천시사유이과기주식유한회사(深圳市斯维尔科技股份有限公司)는 피고인 광둥성교육청이 자신이 주최한 공사가격산정 기본기능대회에서 광련달소프트웨어주식유한회사(广联达软件股份有限公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지정한 행위는 <반독점법> 제32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광저우시 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의 판결

- 해당 소송은 광저우시 중급법원의 1심, 광둥성 고급법원의 2심을 거쳤으며, 광둥성 고급법원의 2심은 광둥성교육청의 행위는 <반독점법> 제32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시사점

- 행정기관에서 특정된 사업자의 제품만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에 의한 거래강제에 해당한다.



▷ 사례2 : 허란현 주택·도시농촌건설국의 행정권 남용행위 사례

✓ 사건 개요

- 허란현 주택·도시농촌건설국(贺兰县住房和城乡建设局)은 2017.5.9. <허란현 유선방송공정 건설·검수 주체에 관한 통지(关于明确贺兰县有线电视工程建设和验收主体的通知)>를 제정 및 공포하여 관할구역 내 모든 유선방송공정은 A회사만 시공하도록 하였다.

✓ 조사 결과

- 2022.06.09. 녕회회족자치구시장감독관리청(宁夏回族自治区市场监管局)은 A회사를 관할구역 내 유선방송공정의 유일한 시공업체로 지정한 행위로 인해 부동산 개발기업의 시공업체 선택권이 박탈되었고 당해 행위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허란현 주택·도시농촌건설국은 조사기간에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반독점법>을 위반한 통지규정을 폐지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하였고 <반독점법과 공정경쟁심사제도 실시세칙(公平竞争审查制度实施细则)²¹>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시정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 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한 진입방해 · 불공정대우 (반독점법 제40조)

행정기관과 공공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사업자와 협력계약, 비합당 등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타 사업자의 관련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불공정 대우를 실시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례1: 쌍봉현 위생건강국의 행정권 남용행위 관련 사례

✓ 사건 개요

- 2021.7.23. 쌍봉현 위생건강국(双峰县卫生健康局)은 B회사와 <약품·소모품·설비 구매·판매전략협력계약>을 체결하여 관할구역 내 모든 공공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약품·소모품·설비는 B회사로부터 일정 비율 구매하도록 지원할 것을 약정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쌍봉현 위생건강국이 관련 정책조치를 발표하면 B회사가 공공의료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약정하였다.

✓ 조사 결과

- 2021.11.2. 호남성 시장감독관리국(湖南省市场监管局)은 B회사와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관할구역 내 공공의료기관이 B회사의 공급을 받도록 하는 행위가 약품·소모품·설비 시장의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조사 기간에 쌍봉현 위생건강국은 협력계약을 해지하였고 공공의료기관에 이를 통지하였다.

21 시장감독관리총국,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사법부는 2021.6.29. <공정경쟁심사제도 실시세칙>을 공포하였고 행정기관이 정책조치 제정 시 공정경쟁심사를 실시하여 시장경쟁에 관한 영향을 평가하여 시장경쟁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였고 공정경쟁심사 통과를 정책조치 시행의 선행조건으로 하였음. 이에 종전에 임시 시행되던 <공정경쟁심사제도 실시세칙(잠행)>은 폐지됨.



✓ 시사점

-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협력계약이 기타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차별대우를 하거나 시장진입을 방해한 경우에 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된다. <반독점법>을 위반한 협력계약은 무효로 인정될 리스크가 있기에 행정 기관과 협력계약이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반독점법> 위반 리스크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사례2: 고밀시 종합행정집법국의 행정권 남용행위 관련 처분

✓ 사건 개요

- 2019.7.30. 고밀시 종합행정집법국(高密市综合行政执法局)은 자격요건이 있는 주체가 현지에서 공유 자전거사업을 특허경영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공개 입찰하였고 최종적으로 낙찰자 유방패포사이버기술유 한회사(潍坊快跑网络科技有限公司)와 <공유자전거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해당 계약이 시장경쟁을 제한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고밀시 종합행정집법국은 “공유자전거 프로젝트는 특허경영 프로젝트이므로 시장경쟁 제한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조사 결과

- 산둥성 시장감독관리국(山东省市场监督管理局)은 법률, 법규와 국가정책의 근거 규정 없이 공유자전거 프로젝트를 특허경영 프로젝트로 구분하는 행위는 시장진입 제한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기타 공유자전거 브랜드의 현지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였다고 보았다. 산둥성 시장감독관리국은 고밀시 인민정부에 행정건의서를 송부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하였다.

1. 유방패포사이버기술유한회사를 고밀시 관할구역 내 공유 자전거 경영업 독점기업으로 지정하는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기타 공유 자전거 브랜드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공정 경쟁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자유선택권을 보장할 것.
2. 공정경쟁심사제도를 실시하고 고밀시 종합행정집법국이 시장주체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조치 제정 시 공정경쟁심사절차를 이행하고 시장경쟁에 관한 영향을 평가하여 공정경쟁 시장환경을 수호할 것.
3. 고밀시 종합행정집법국의 후속 행위에 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여 행정권력의 남용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할 것.

✓ 시사점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종 선정된 사업자와 협력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협력계약이 기타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차별대우를 하거나 시장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사업자는 행정기관과 협력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력 프로젝트가 공정경쟁심사에 통과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 방해(반독점법 제41조)**

행정기관과 공공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권 남용 금지 의견수렴안〉 제7조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 타지역 상품을 차별하는 비용항목을 설정, 차별적인 요금기준을 적용하거나 차별적인 가격을 규정,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을 실행하는 행위
- 타지역의 상품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기술적 요구, 검수표준을 규정하거나 타지역 상품에 대하여 중복 검수, 중복인증 등 차별적인 기술조치를 취하여 타지역 상품의 해당 지역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 타지역 상품에만 전문적인 행정허가제도를 실시하여 타지역 상품이 해당 지역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 관문을 설치하거나 기타 수단을 통하여 타지역 상품의 진입 또는 현지 상품의 반출을 방해하는 행위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이외에도 〈공정경쟁심사제도실시세칙〉 제14조 제(2)항의 6에 따르면 아래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를 통해 차단을 설정하고 기타 수단으로 타지역 상품의 진입 또는 현지 상품의 반출을 방해하는 행위

▷ 사례1: 중산시 인민정부의 월발개가감한[2018] 3000호 처벌결정

✓ 사건 개요

- 광둥성 발전개혁부서는 2018. 6. 26. 중산시 인민정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2016. 5. 26. 중산시 주택성향건 설구 산하 중산시 가스관리판공실이 반포한 <가스기구제품 등기사항에 관한 통지>에서 가스기구제품 생산업체 또는 판매업체가 중산시 가스관리판공실에 등록하고 온라인 공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행정독점에 해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 조사 결과

- 해당 규정은 타지역 제품과 온라인 판매제품의 진입을 방해하고 가스기구의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하였으며, 소비자의 자유 선택권을 박탈하고 가스기구의 전국적 시장의 형성과 타지역 기업의 공정경쟁 참여를 방해하였으므로 <반독점법> 제3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 사례2: 2014년 하북성 통행료 차별 징수 사례

✓ 사건 개요

- 2013. 10. 하북성 교통운수청, 물가국 및 재정청이 공동 제정한 <성 전체 유료도로여객운수통근차량 통행료 차모델 분류기준 통일에 관한 통지(关于统一全省收费公路客运班车通行费车型分类标准的通知)>에서 하북성 소재 여객운수통근차량에 대하여 통행료의 50%를 할인해 주는 통행료 우대정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 한국 대사관은 중한합자기업의 요청으로 국가 발개위에 상기 하북성 정부기관의 행위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였다.

✓ 조사 결과

- 국가 발개위는 조사를 통하여 하북성 교통운수청, 물가국 및 재정청의 상기 행위는 하북성 소재 여객운수통근차량 운영업체와 기타 성 소재 여객운수통근차량 운영업체의 공정한 경쟁에 손해를 초래하여 <반독점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하북성 인민정부에 기타 성 소재 여객운수통근차량 운영업체에게도 동등한 우대정책을 실시할 것을 명하였다.

● 타지역 사업자의 현지 입찰방해(반독점법 제42조)

행정기관과 공공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차별적인 자격요건, 심사 기준을 설정하거나 법에 따라 정보를 발표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지역 사업자의 현지 입찰활동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권 남용 금지 의견수렴안> 제8조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 법에 따라 적시에 유효하고 완전한 입찰정보를 발표하지 않는 행위
- 타지역의 사업자는 특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행위
-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 차별적 자격 요건이나 심사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
- 입찰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특징과 실제 수요와 부합되지 않거나 계약 이행과 무관한 자격, 기술, 비즈니스 조건을 설정하여 변형적으로 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하는 행위
- 입찰활동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기타 행위



이외에도 <공정경쟁심사제도실시세칙>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 사업자의 현지 실적, 수상 영예를 입찰조건, 가산점 조건, 낙찰 조건 또는 기업신용등급평가에 사용하여 타지역 사업자의 현지 입찰활동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근거 규정 없이 사업자가 현지에 지사를 설립, 현지에 일정한 사무면적 보유, 현지에 사회보험금 납부 등 타지역 사업자의 현지 입찰활동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타지역 사업자의 현지 투자 또는 지사 설립 방해(반독점법 제43조)

행정기관과 공공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현지 사업자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지역 사업자의 현지 투자 또는 지사 설립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권 남용 제지 의견수렴안> 제9조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근거 규정 없이 사업자가 현지에 지사를 설립, 현지에 일정한 사무면적 보유, 현지에 사회보험금 납부 등 타지역 사업자의 현지 입찰활동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법률, 법규의 근거 없이 타지역 사업자의 현지 투자 규모, 방식 및 지사설립 주소, 비즈니스 모델을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하는 행위
- 타지역 사업자가 현지에 투자하거나 설립한 지사에 투자, 사업 규모, 사업방식, 세금납부 등 면에서 현지 사업자와 다르게 요구하거나 안전생산, 에너지 절약, 품질기준 등 면에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
- 타지역 사업자의 현지 투자 또는 지사 설립을 배제·제한, 강제 또는 변형적으로 강제하는 기타 행위

● 행정권 남용을 통한 독점행위강제(반독점법 제44조)



행정기관과 공공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반독점법>이 규정하고 있는 독점행위를 강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례: 운남성 통신관리국의 독점행위강제

✓ 사건 개요

- 2009. 8. ~ 10.경 운남성 통신관리국은 China Mobile 운남분공사, China Telecom 운남분공사, China Unicom 운남분공사, China Tietong 운남분공사와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2009년 연말 <운남기초통신 운영기업의 각종 증정활동을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여 4대 통신사의 고객에 대한 증정활동 내용, 금액 한도, 횟수 등에 관하여 약정하였다. 해당 협의에는 여하한 전신운영기업이 협의를 위반할 경우 다른 통신업체가 운남성 통신관리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운남성 통신관리국은 확인 후 협의를 위반한 기업에게 시정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조사 결과

- 운남성 발전개혁부서는 상기 행위가 <반독점법> 제36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운남성 통신관리국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독점협의를 체결하고 실행한 4개 기업에 대하여 총 1,318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시사점

- 일부 행정기관의 개입하여 독점협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의 조율, 명령 등이 있다고 하여 이에 참여한 기업이 위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 행정기관에 의한 반경쟁성 규정의 제정(<반독점법> 제45조)

행정기관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규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경쟁 배제·제한의 효과

행정독점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는 아래와 같다.

- 타지역의 사업자 또는 행정기관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
- 해당 제품의 경쟁 감소로 기술, 제품 등 혁신이 저해되고 해당 시장에서 제품 가격이 상승되는 등 결과 초래(소비자 후생감소와도 연결됨)

三. 실무 중 대응방안

- 실무적으로 기업, 특히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행정독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위와 같은 행정독점 등의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반독점 조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다.
- 만약 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단체, 공익단체 또는 주중 대사관 등을 통해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행정기관의 행정독점행위가 정책조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정책조치가 공정경쟁심사기준을 위반한 사항을 정책제정 기관 또는 정책제정기관의 상급 기관, 본급 또는 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독점협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의 행위를 진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반독점 위반의 이슈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하다.
- 행정독점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을 상대로 반독점신고 또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압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행정독점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사전 증거수집 작업을 면밀히 진행하고 신고 및 소송 과정 중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압력을 이겨낼 준비 및 사건의 장기화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5.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 <반독점법> 위반행위

중국 반독점위원회는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1. 2. 7.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을 공포하였다. 이는 별도로 반독점 위반행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라는 특별한 주체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1.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란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내 사업자 및 기타 플랫폼 경제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제2조).



- 플랫폼 사업자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시장 주체에게 경영장소, 거래중재, 정보교류 등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 플랫폼 내 사업자란 인터넷 플랫폼 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총칭하여 “상품”)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동시에 플랫폼을 통해 직접 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음

二. 독점협의

1) 수평적 독점협의

경쟁관계가 있는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는 아래 방식으로 수평적 독점협의를 달성해서는 아니 된다(제6조).

- 플랫폼을 통해 가격, 매출, 원가, 사용자 등 민감정보 수집 및 교환
- 기술수단을 이용해 의사 연락
-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규칙 등을 이용해 협동행위 실현
- 기타 협동행위 실현에 유리한 방식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상품가격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 회원비, 판촉비 및 기타 서비스 요금 등도 포함된다.

2) 수직적 독점협의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는 아래 방식을 통해 수직적 독점협의를 달성해서는 아니 된다(제7조).

- 기술수단을 이용해 가격을 자동화 설정
- 플랫폼 규칙을 이용해 가격을 통일
-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격을 직간접적으로 제한
- 기술수단, 플랫폼 규칙, 데이터 및 알고리즘 등 방식으로 기타 거래



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경쟁 배제 · 제한 효과를 생성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 사업자에게 상품 가격, 수량 등의 측면에서 기타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더 좋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독점협외에 해당할 수도 있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

상기 행위가 수직적 독점협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역량, 관련시장 경쟁상황, 기타 사업자의 관련시장 진입에 대한 저해 정도, 소비자 이익 및 혁신에 대한 영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3) 허브앤스포크 담합(Hub and Spoke Conspiracy)

중국 반독점 당국은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에서 최초로 허브앤스포크 담합 개념을 사용하였다.

허브앤스포크 담합이란 경쟁관계가 있는 플랫폼 내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자와의 수직적 관계를 이용하거나, 플랫폼 사업자가 조직, 조정하여 수평적 독점협외의 효과가 있는 허브앤스포크 담합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제8조).

해당 협외가 독점협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쟁관계가 있는 플랫폼 사업자 간에 기술수단, 플랫폼 규칙, 데이터 및 알고리즘 등 방식으로 독점협외를 달성, 실시하고 관련시장 경쟁을 배제 · 제한하였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협동행위에 대한 인정

플랫폼 분야의 협동행위 인정을 위해서는 직접 증거로 협동행위 존재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 직접 증거를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독점협외 금지 임시규정> 제6조에 따라 논리가 일치한 간접 증거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상황을 인정할 수 있고, 사업자 간에 협동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사업자는 반대의 증거로 협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제9조).



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1)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에 대한 인정

플랫폼 경제의 특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제11조).

-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및 관련시장의 경쟁상황
- 사업자의 시장 통제 능력
- 사업자의 재력 및 기술조건
- 기타 사업자의 해당 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 기타 사업자가 관련시장에 진입하는 난이도
- 기타 요소

2) 불공정한 가격에 대한 인정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한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공정한 저가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불공정한 가격을 분석할 때 다음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제12조).

- 해당 가격이 기타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련시장 조건에서 동종 업종 사업자의 동일한 상품 또는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지 여부
- 해당 가격이 해당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의 기타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련시장 조건에서 동일한 상품 또는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지 여부
- 원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해당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가 정상적인 마진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구매가격을 감소하였는지 여부
- 해당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의 상품 판매 가격 인상 마진이 원가 증가 마진보다 현저히 높거나 상품 매입 가격 감소 마진이 원가 감소 마진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시장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함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플랫폼의 유형, 경영모델, 원가구조, 거래 구체 상황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3)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

시장지배적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기타 사업자를 배제하였는지 및 기타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한 후 가격을 인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시장 공정 경쟁 및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등 상황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원가 계산 시 일반적으로 플랫폼이 다면시장에서 각 관련시장 사이의 원가 연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합리적인 기간 내 플랫폼 내 기타 업무 발전
- 합리적인 기간 내 신제품 시장 진입 추진
- 합리적인 기간 내 신규 사용자 유치
- 합리적인 기간 내 판촉 활동 진행
- 행위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사유

4) 거래 거절

시장지배적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의 행위가 거래 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제14조).

- 거래상대방과의 기존 거래 중지, 연기, 중단



- 거래상대방과의 신규 거래 거절
- 거래상대방의 기존 거래 수를 실질적으로 감소
- 거래상대방이 거래하기 어렵게 플랫폼 규칙, 알고리즘, 기술, 트래픽 분배 등 측면에서 불합리적인 제한 및 장애를 설치
- 플랫폼 경제 분야 필수 시설을 통제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합리적인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거부

관련 플랫폼이 필수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플랫폼이 점유하는 데이터 상황, 기타 플랫폼의 대체가능성, 잠재적 사용 플랫폼 존재 여부, 경쟁성 플랫폼 발전 가능성, 거래상대방의 해당 플랫폼에 대한 의존 정도, 플랫폼 개방이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초래할 수 있는 영향 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가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불가항력 등 객관적 원인으로 인하여 거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거래상대방의 원인으로 인하여 거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의 이익이 부당히 침해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차별 없는 플랫폼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시하거나 실제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행위가 정당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사유

5) 거래 제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의 행위가 거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제15조).

- 플랫폼 내 사업자로 하여금 경쟁 플랫폼에서 “양자택일”하도록 강요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지정하여 그와 배타적인 거래를 진행하도록 제한하는 기타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거나 지정한 루트 등 제한된 방식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
-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 사업자와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가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거래상대방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또는 데이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거래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특정 자원 투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합리적인 경영모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행위가 정당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사유

6) 끼워팔기 또는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시장지배적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의 행위가 끼워팔기 또는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제16조).

- 약관, 팝업 창, 필수 절차 등 거래상대방이 선택, 변경, 거절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른 상품을 끼워팔기
- 검색 순위 하락, 트래픽 제한, 기술 장애 등 징벌적 조치로써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기타 상품을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 거래 조건 및 방식, 서비스 제공방식, 결제 방식 및 수단, AS 보장 등 불합리한 제한을 부가
- 거래가격 외에 별도로 불합리한 비용 수취
- 불필요한 정보를 강제로 수집하거나 거래목적물과 무관한 거래조건, 거래절차, 서비스항목을 부가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가 끼워팔기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정당한 업계 관례 및 거래관행에 부합되는 경우
- 거래상대방 및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상품사용가치 또는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행위가 정당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사유

7) 차별대우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등한 조건의 거래자에 대하여 거래가격 등 거래상 차별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경우 아래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제17조).

-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지급능력, 소비습관, 사용습관 등에 따라 거래가격 또는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실행
- 차별적인 기준, 규칙, 알고리즘 실행
- 차별적인 결제조건 및 거래방식 실행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가 차별대우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거래상대방의 실제 필요에 따라 정당한 거래 습관 및 업계 관례에 부합되면서 동일하지 않은 거래조건 실행
- 신규 사용자를 상대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진행하는 우혜 활동
- 플랫폼의 공정적, 합리적, 무차별의 규칙으로 실시하는 랜덤성 거래
- 행위가 정당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사유

四. 기업결합

1) 신고기준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사업자의 매출액은 자신이 상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수입을 포함한다. 정보 제공, 수수료 수취 등 서비스 비용만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이 수취하는 서비스 비용 및 플랫폼의 기타 수입에 따라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측 시장경쟁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거나 주도적인 작용을 하는 경우 플랫폼 관련 거래 금액을 계산할 수도 있다(제18조).

2) 고려요소

플랫폼 경제 분야의 기업결합의 경쟁에 대한 영향을 판단할 때 다음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제20조).

- 사업자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 사업자의 시장에 대한 통제력
- 관련시장의 집중도
- 기업결합의 시장진입에 대한 영향
- 기업결합의 기술 진보에 대한 영향
- 기업결합의 소비자에 대한 영향
-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가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요소

3) 시정조치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는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에서 다음 유형의 제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제21조).

- 유형자산 매각, 지식재산권, 기술, 데이터 등 무형자산 매각 또는 관련 권의 매각 등 구조성 조건
- 네트워크, 데이터 또는 플랫폼 등 기초 시설 공개, 핵심기술 허가, 배타성계약 종료, 플랫폼 규칙 또는 알고리즘 수정, 호환성 협약 또는 상호운용성 수준 유지 등 행위성 조건
- 구조성 조건과 행위성 조건을 결합한 종합성 조건



五. 행정독점행위

공공조직이 아래와 같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독점행위에 해당한다(제22조).

- 회사 또는 개인이 자신이 지정한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기타 사업자가 제공한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된 상품을 경영, 구매, 사용하도록 제한
- 타 지역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에 대해 차별적 기준을 설정하거나 차별적 정책을 실현하고, 타 지역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에 대해 전문적인 행정허가, 신고를 설정하거나, 소프트웨어, 인터넷 설치 차단 등 수단으로 타 지역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가 현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상품의 지역간 자유 유통을 방해
- 차별적인 자격 요구 또는 입찰평가심의기준을 설정하거나 법에 따라 정보를 공포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타 지역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가 현지 입찰 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
- 타 지역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에 대해 차별대우하고 타 지역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가 현지에서 투자하거나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
-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가 독점행위에 종사하도록 강요
- 행정기관은 규정, 방법, 결정, 공고, 통지, 의견, 회의기요 등 형식으로 경쟁 배제·제한 내용이 포함된 시장진입, 산업발전, 상업유치, 입찰, 정부조달, 경영행위규범, 자격기준 등 플랫폼 경제 분야 시장주체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 규범성서류 및 기타 정책성 서류 및 “사안 별로 논의(一事一议)”하는 형식의 구체적인 정책조치를 제정, 공포하여서는 아니됨

六. 관련 사례

▷ 사례: 알리바바 플랫폼 “양자택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건(국시감처[2021]28호)



✓ 조사 내용

- 2013년부터, 알리바바는 “618”, ”11·11(광군제)”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할인행사기간에 입점 상인들에게 티몰(T-Mall) 플랫폼에서만 온라인 매장을 개설하고, 티몰 할인행사에만 참가하도록 요구하거나, 징동(JD) 등 타 플랫폼에서 매장을 개설하거나 타 플랫폼의 할인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양자택일(二选一)” 행위를 실시했음.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i) 입점 상인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요구사항 전달, (ii) 입점 상인과 독점협력계약 체결, (iii)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는 상인에 대해 티몰 플랫폼에서 검색 노출 가능성을 낮추거나, 티몰 할인행사에서 제외시키거나, 또는 티몰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감소함으로써 상인을 압박하는 것을 포함
- 2020. 12. 24. 시장총국은 알리바바의 “양자택일” 강요행위에 대해 입안한 후 조사를 진행하였음
- 2021. 4. 10. 시장총국은 알리바바그룹에 대해 행정처벌 결정을 내렸고, 알리바바가 중국 내 온라인 소매 서비스플랫폼 시장에서 지배적지위에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양자택일” 강요행위를 실시하였다고 인정하였음
- 시장총국은 본건 관련 시장을 중국 경내 온라인소매플랫폼서비스 시장으로 확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알리바바가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지위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플랫폼서비스 관련 수입 및 플랫폼 내 상품거래 금액 기준으로 볼 때 알리바바의 시장점유율은 모두 50%를 초과했음
 - 허핀달-허쉬만(HHI) 지수와 CR지수를 볼 때 관련시장의 시장집중도는 매우 높음
 - 알리바바는 서비스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플랫폼 내 사업자로 하여금 유량(流量)을 얻게 할 수 있는 능력, 플랫폼 내 사업자의 판매루트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매우 강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음
 - 알리바바는 우수한 재력과 선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다른 사업자들이 거래할 때 알리바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신규 사업자가 관련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움
 - 알리바바는 물류, 온라인결제, 클라우드 등 영역에서도 다른 사업자에 비해 관련 시장에서 현저한 우세를 보유하고 있음
- 조사 과정 중 시장총국은 알리바바가 제기한 합리적인 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입주 상인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양자택일” 협력계약을 체결했다는 알리바바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일부 상인들은 알리바바가 확약한 독점협력 가격을 향유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음. 또한 시장총국은 알리바바가 일상경영과정 및 할인행사기간 중 투입한 자금과 유량(流量) 지원은 알리바바 자체 플랫폼 경영상 필요한 투자이며, 알리바바가 “양자택일” 강요행위를 실시한 것에 관한 정당한 이유(특정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함)로 간주할 수 없다고 인정함

✓ 처벌

- 시장총국은 알리바바의 “양자택일” 강요행위는 시장경쟁을 엄중하게 배제 제한하였으므로, 중국 <반독점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상대방이 자신과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며, 알리바바에 대해 그의 2019년 매출액(4,557.12억 위안)의 4%에 상당하는 과징금(182.28억 위안)을 부과하였음

참고로 메이뤨(美团)도 위 알리바바와 유사한 “양자택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하여, 시장총국으로부터 2021. 10. 8. 그의 2020년 매출액 (1,147.48억 위안)의 3%에 상당하는 과징금(34.42억 위안)을 부과받았다(国市监处罚 (2021) 74号).

6. 위반행위 관련 법적 책임

一.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벌

구분	처벌 내용
독점혐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위법행위 중단 명령) · 위법소득 몰수 · 직전연도 판매액의 1% 이상 10%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음. 독점혐의를 하였으나 이를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 · 독점 혐의의 달성에 개인적 책임이 있는 사업자의 법인대표, 주요 책임자와 직접 책임인원에게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반독점법 제56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위법행위 중단 명령) · 위법소득 몰수 · 직전연도 판매액의 1% 이상 10%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음(반독점법 제 57조)
기업결합신고 미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 배제 제한의 효과가 존재하거나 또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 미이행 행위의 성격, 정도, 지속 시간 및 해당 기업의 거래관계에 대한 효과 등 요소를 고려하여 직전연도 매출액의 10% 과징금을 부과 · 경쟁 배제 제한의 효과가 없는 경우 5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 부과 외에 ① 기업결합 실시 중지, ② 기한 내 지분 또는 자산 처분, ③ 기한 내 영업 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원 상태로 회복할 것을 명할 수 있음(반독점법 제58조)
조사방해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와 조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정보 제공의 거부, 허위 자료·정보의 제공, 증거의 은닉·소각·이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명하고 기구에 대해 직전연도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직전연도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5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개인에 대해서는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반독점법 제62조)
가중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안이 특별히 엄중하고, 특별히 나쁜 영향을 미치며, 특별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2 조에서 규정한 과징금 금액의 2~5배 내에서 과징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함(반독점법 제63조)



1) 과징금 확정 기준

- ♣ 매출액 확정: 기본적으로 중국내(홍콩, 마카오, 대만 등 지역 제외)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매출액 확정 방식에 관하여 아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 사례: 최고법원의 (2021)최고법지행중 880호 판결

✓ 사건 경위

- 해남시 시장관리국이 2020년 11월에 해남성화건설주식유한회사(피처벌업체)의 카르텔 행위에 대하여 처벌 결정을 내림
- 이에 대해 피처벌업체는 2021년 1월 해남성 제1중급인민법원(1심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1심법원은 2021년 5월 피처벌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
- 해남성 시장관리국이 최고법원에 항소하였고, 이에 대해 최고법원이 아래와 같이 판결(판결문은 2022. 8. 5.공개됨)
- 최고법원은 법문의 문언 표현(文义) 및 입법 목적 등을 해석의 근거로 과징금의 처벌 기준이 되는 모수(base amount)를, 전년도 “전체 매출액(全口径)”이라는 점을 최초 확인하였음. 즉, 1심 법원과 달리, 관련 시장의 관련 제품의 매출액으로만 국한하여 해석하지 않았음

✓ 시사점

- 그 동안 실무에서는 ‘전년도 매출액’의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고, 2018년 이후 반독점국이 유지해 온 ‘전부 매출액’의 해석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위 최고법원 판결은 기존 반독점국의 해석을 더욱 강하게 지지하는 효과를 낳게 되었음

- 처벌 비율의 확정: 관련된 독점행위의 정도, 지속시간, 위법행위의 영향 해소 상황(반독점법 제59조), 조사당국의 조사에 대한 협조 태도, 주도적으로 위법행위의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켰는지의 여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한다.
- 직전연도의 확정: “직전연도”의 기준에 관해서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고 조사를 개시한 시점의 직전연도 또는 처벌을 내린 시점의 직전연도 매출로 산정한 사례가 모두 있다.

2) 위법소득몰수 기준

- ♣ 위법소득의 정의: 독점행위의 위법소득은 독점행위가 존속하는 동안에 해당행위로 인해 증가된 수입 또는 감소된 지출을 말한다.



- 위법소득의 계산방법: 대조가격에 대조수량을 곱하는 방법 또는 해당 사업자의 독점행위 발생 전 시장점유율, 판매량, 이전 이익율과 해당 업계 이익율, 비슷한 시장의 이익율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한다.

3) 독점협외의 처벌 관련 특수 규정

- 자진신고감면제도(Leniency 제도)

사업자가 반독점 조사당국에 독점협외에 관한 중요 정보 또는 증거를 제공한 경우 반독점 조사당국은 해당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해 주거나 면제해 준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정보 또는 증거는 조사당국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거나 독점협외의 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증거를 의미한다. 유의할 점은 독점협외를 조직한 사업자에게는 자진신고감면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자진신고감면제도는 대부분 수평적 독점협외의 조사안건에 적용되고 수직적 독점협외, 기타 반독점 조사안건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²².

아울러 2019. 1. 4.에 공포 및 시행된 <수평적 독점협외의 안건 자진신고감면제도 적용지침>은 자진신고감면을 신청한 순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 감면을 적용한다.

- ① 제1순위 신청자: 80% 이상의 처벌 감경 또는 면제
 - ② 제2순위 신청자: 30%~50%의 처벌 감경
 - ③ 제3순위 신청자: 20%~30%의 처벌 감경
 - ④ 이후 순위: 20%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처벌 감경
- 사업자단체에 대한 처벌
- 사업자단체가 해당 업계 사업자들의 독점협외를 추진한 경우 300만

²² 2013년에 진행된 중국 분업업계에 대한 수직적 독점협외의 조사건에서 Wyeth, Beingmate 등 업체가 주동적으로 조사당국에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받았으나, 그 후 수직적 독점협외의 조사건에서 Leniency 제도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사업자단체의 등록자격을 취소한다(반독점법 제56조).

二.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업자가 독점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타인이라 함은 반독점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i) 기타 경쟁자, (ii) 관련 제품의 구매자 및 소비자를 가리킨다.

반독점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타인은 (i)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배상청구를 하거나, (ii) 반독점 조사기구의 행정처벌 결과를 근거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022년 <반독점법>이 개정되면서 독점행위에 대한 공익소송 제도가 신규 도입되었다. <반독점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독점행위를 실시하여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 구(区)로 나누어진 시(市)급 이상의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고인민검찰원은 <반독점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반독점 영역 공익소송을 진행할 것에 관한 검찰 업무 관련 통지(关于贯彻执行〈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积极稳妥开展反垄断领域公益诉讼检察工作的通知)>를 공표하여 반독점위원회의 반독점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률상 명확히 금지하는 독점행위, 국가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분야, 시장 경쟁규칙과 관련된 중요한 일환, 다수의 소비자의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공익 손해 관련 심각한 문제를 중점으로 정확하게 반독점 공익소송 관련 검찰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표시한 바가 있다. 다만, 2022년 10월말 기준으로 반독점 공익소송 안전이 공개된 바는 없다.

三. 행정독점 행위에 관한 조치

행정기관과 공공조직이 행정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경우, 상급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 인원과 기타 인원에게 처벌을 부과한다. 또한 반독점조사기관은 상급 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四. 동의를결제도(经营者承诺制度)

사업자는 시장총국의 위반혐의 조사기간 중 범 위반이 명확한 경우 조사 중지를 신청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반독점법 제53조). 2019. 1. 4. 시행된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독점안건 사업자 승낙 지침>은 아래와 같이 동의를결제도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1) 적용 범위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자 간의 상품 가격을 고정 또는 변경, 상품 생산량 또는 판매량 제한, 판매시장 또는 원자재 구매 시장을 분할하는 수평적 독점혐의 안건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독점안건에 적용된다.

2) 조사중지의 신청 및 결정

시장총국으로부터 독점안건 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장총국이 인가한 기한 내에 구체적인 조치(구체적조치, 행위적조치 및 종합적조치 포함)를 취하여 당해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겠다고 확약(일반적으로 조사대상 행위 및 해당 행위가 미칠 수 있는 영향,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구체적인 조치, 해당 조치가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한 설명, 확약 이행의 스케줄 및 방식 등을 포함함)하는 경우 시장총국은 조사의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사중지의 결정에는 조사대상인 사업자의 구체적 확약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조사중지를 결정한 시장총국은 사업자의 확약 이행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3) 조사종결 또는 조사재개

사업자가 확약내용을 이행한 경우 시장총국은 조사의 종료료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반독점법>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총국은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 ① 사업자가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조사중지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③ 사업자가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진실하지 않은 정보에 기하여 조사 중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五. 실무 중 대응방안

● 자진신고감면제도

실무적으로 자진신고감면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아래 사항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 자진신고감면제도는 수평적 독점협약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수직적 독점협약,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의 반독점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 자진신고감면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행위 및 증거를 제시해야 함
 - 구체적인 정보는 (i) 독점협약의 참여자(명칭, 주소, 연락방식 및 주요 참여자), (ii) 독점협약의 관련 연락 상황(시간, 지점, 내용 및 구체적인 참여자), (iii)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 가격 수량, (iv) 과급범위, (v) 지속시간, (vi) 제출 증거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함
 - 구체적인 증거는 조사기관에 의해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반독점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정도이어야 함. 아울러 조사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개시한 사안에 대하여 (i) 독점협약의 방식과 실시 행위에 대해 보다 큰 증명력이나 보충 증명 가치가 있는 자료, (ii) 독점협약의 내용 및 실시 시간, 제품 또는 서비스 범위, 참여 당사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보충 증거, (iii) 기타 독점협약의 입증을 강화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함

● 동의의결제도 활용

실무적으로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아래 사항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 관련 반독점행위 즉시 중단
 - 관련 제품, 서비스 가격 인하 등 조사기관이 수용 가능한 조건을



적절한 수준에서 제시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적절한 기준의 제안을 하기는 쉽지 않음

- 필요시 회사 내부 원가, 향후 경쟁성 등에 관한 분석 및 기타 경쟁업체의 동향 등에 관한 판단이 필요함
-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중단한 후에도 조사기관에 확약한 내용에 따라 관련된 의무 이행 및 적시 보고를 해야 함



III. 반부정당경쟁법

반부정당경쟁법은 중국 시장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률로서 1993년에 제정 및 실시된 이후 2017년과 2019년에 2회 개정되었다²³.

1. 부당경쟁행위란

부당경쟁행위 방지를 위해 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은 다양한 부당경쟁 행위들을 규제하고 있다. 반부정당경쟁법에 대한 첫 번째 사법해석으로서 2007년 2월 1일에 발표된 <최고법원의 부정경쟁 민사사건 법률 적용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이 있다. 그런데 그 사법해석은 제정된 지 오래되었고, 그 동안 중국 경제의 다양한 발전상을 반영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 최고법원은 2022. 3. 16. <반부정당경쟁법 적용 문제에 관한 사법해석>(이하 “반부정당경쟁법 사법해석”)을 공포하였다. 반부정당경쟁법 사법해석은 2022. 3. 20.부터 시행되었다.

중국 최고법원의 사법해석은 최고사법기관인 최고법원이 법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해석한 것을 의미한다. 최고법원의 사법해석은 단지 법원 시스템 내부의 규칙이 아니라 법률해석의 일종으로서 사법 시스템 내에서 보편적인 규범력이 있는바, 판결서 등에서도 재판의 근거로 직접 인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최고법원은 반부정당경쟁법 사법해석을 공포하여 상 기 2007년의 사법해석을 대체하였다.

부당경쟁행위는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자의 합법적인 권익

23 참고로, 2022. 11. 22. 시장총국은 반부정당경쟁법 수정초안 의견수렴안을 공포하였다. 시장총국은 당해 의견수렴안에 대해 2022. 12. 22.까지 대외에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으며, 아직 정식 통과 및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을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크게 아래와 같은 행위로 구분된다(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 혼동행위
- 뇌물공여행위
- 허위홍보/광고행위
- 영업비밀 침해행위
- 부정 경품판매행위
- 허위 정보로 경쟁자의 신용과 명예 침해행위
-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행위

반부정당경쟁법은 이와 같이 부당경쟁행위의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2조에서 개별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기타 행위도 규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일반 조항’을 두고 있다.

- 제2조 제1항: 사업자는 생산경영활동 중에서 자발적(自願), 평등, 공정,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고 법률과 상업도덕을 지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반부정당경쟁법 사법해석은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일반조항의 적용 조건 및 상업도덕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법률상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민사분쟁소송에서 일반 조항을 남용하여(소위 ‘일반 조항으로의 도피’) 경쟁 사업자에 대해 무분별하게 침해배상 등 주장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원의 재판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1) 일반 조항의 적용 조건

반부정당경쟁법 사법해석 제1조에 의하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원이 민사분쟁소송에서 일반 조항을 적용하여 부당경쟁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함

2. 상기 1.의 시장질서교란행위는 반부정당경쟁법 제2장에 규정한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3. 상기 1.의 시장질서교란행위는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법령에서 규정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2) 상업도덕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반부정당경쟁법 사법해석은 제3조에서 부당경쟁행위의 중요 개념 중 하나인 “상업도덕”을 “특정 상업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준수하고 인정하는 행위규범”이라고 정의하였고, 상업도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마땅히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 사건별 구체적인 상황
- 업종 규칙 또는 상업 관행
- 사업자의 주관적인 상태(의도)
- 거래 상대방의 선택 의지
- 소비자 권익, 시장 경쟁 질서, 사회 공공 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업계 주관 부서, 업계 협회 또는 자율 조직에서 제정한 업계규칙, 기술규칙, 자율공약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분석

一. 혼동행위(混淆行为)

혼동행위는 타인의 상품 또는 이들의 특정 연관성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다(반부정당경쟁법 제6조).

-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타인의 상품 명칭, 포장, 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타인의 기업명칭(약칭, 상호 등 포함), 사회조



직명칭(약칭 등 포함), 이름(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타인의 도메인 주체부분, 사이트 명칭, 웹페이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이들의 특정 연관성에 대해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혼동행위

상기 혼동행위의 유형을 판단함에 있어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및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판단기준이며, 반부정당경쟁법 사법해석은 해당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다. 제4조에서 일정한 시장 인지도가 있고, 동시에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명칭, 포장, 장식 등 표지(标识)가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표지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2조 1항에서 상표의 동일 및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과 방법을 참조하여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표지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 하여 모두 부당경쟁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혼동행위만 부당경쟁행위로 인정된다.

나아가, “일정한 시장 인지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i) 중국 내 관련 대중의 인지 정도, (ii) 상품을 판매한 기간, 지역, 금액 및 대상, (iii)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기간, 정도 및 지역 범위, (iii)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 등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반면에 통용되는 상품의 명칭, 도형, 모델, 상품의 품질 등 특징을 직접 표시하기만 하는 표지나 형태 등은 원칙상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뚜렷한 특징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반부정당경쟁법 사법해석은 제12조 제2항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와 상업적 연합, 라이선스, 스폰서십, 광고 모델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권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였다.



▷ 사례: 2018. 1. 인민법원은 디얼캉(迪尔康)회사가 사용한 “금6호두(金六核桃)”라는 문구가 이미 높은 식별력과 인지도를 갖춘 양원(养元)회사의 “6개 호두(六个核桃)” 상표와 유사하고 대중의 오해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부당경쟁행위로 판단하여 상표사용중지 등 조치를 취하라고 판결함

二. 뇌물공여행위(贿赂行为)

뇌물공여행위는 사업자가 재물 또는 기타 수단으로 아래의 업체 또는 개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거래기회 또는 경쟁우위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반부정당경쟁법 제7조).

- 거래 상대방 업체의 근무자
- 거래 상대방 업체의 위탁에 의하여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업체 또는 개인
- 직권 또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거래업체 또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개정 전 반부정당경쟁법에서의 관련 내용에 비하여 주로 아래 측면에서 변화가 있다.

- 첫째, 상업뇌물의 본질이 뇌물공여자는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뇌물수뢰자로부터 공공이익 또는 뇌물수뢰자가 속한 회사의 경제적 급부를 제공받거나 뇌물수뢰자가 뇌물공여자의 경쟁자의 이익을 배제하도록 유도하게 하는 것, 뇌물수뢰자는 공공이익 또는 뇌물수뢰자가 속한 회사의 경제적 급부를 뇌물공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뇌물공여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대가로 사익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둘째, 뇌물공여의 대상은 (a)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b) 거래상대방의 위탁을 받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 또는 개인, 또는 (c) 직권 또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거래에 영향을 주는 업체 또는 개인으로 명시하였다.
- 셋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할인해 주거나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고, 사업자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 중개인도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장부에 해당 내역을 상세히 기재할 경



우 적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 넷째, 임직원 뇌물행위에 대한 사업자 책임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당해 임직원의 행위가 사업자의 거래기회 확보 또는 경쟁에서의 우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과 무관하다는 점을 증거로써 증명한 경우는 상업뇌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상업뇌물의 공여와 관련하여, (i) 뇌물공여를 통하여 거래기회 또는 경쟁우위를 도모하지 않아야 하고, (ii) 만약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의 임직원 또는 타인이 아닌)에게 할인해 주거나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반드시 명확하게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장부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iii)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직원을 교육한 자료, 뇌물공여 행위를 저지한 자료, 처벌한 자료 등 서면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자가 임직원의 행위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실무상 쉽지 않다.

▷ 사례: 2018. 6. 난통시 통주구 시장감독관리국은 양모 씨 등 4인이 무허가 식품업 및 일용품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 가이드 및 운전기사에게 상업뇌물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12.2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三. 허위 홍보 · 광고행위(虛假宣传行为)

허위 홍보 · 광고행위는 (i) 사업자가 상품의 성능, 품질, 기능, 판매상황, 사용자평가, 명성획득 등에 대하여 허위로 홍보하거나 사람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적 홍보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해를 야기하는 행위, 또는 (ii) 사업자가 허위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업자가 허위홍보나 사람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적 홍보를 진행하는 것에 협조하는 행위를 말한다(반부정당경쟁법 제8조).

여기에서 허위홍보라 함은 날조, 허구, 왜곡 또는 기타 오도의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성분, 기능, 용도, 생산자, 유효기간, 생산지 등에 관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의 홍보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목적은 사업자가 시장경쟁우위 및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상기 규정의 “사람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적 홍보”란 다음 행위들을 의미한다(반부정당경쟁법 사법해석 제17조).

- 상품을 편면적으로 홍보하거나 비교
- 과학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주장, 현상 등을 정해진 사실로써 홍보
- 차별적인 표현으로 홍보
- 기타 사람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적 홍보 행위

또한, 2021. 5. 1.부터 시행된 <온라인거래감독관리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제14조에 의하면, 온라인거래사업자는 다음 방식으로 허위/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행위로 사회 대중을 기만하고 오해를 야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거래 허구, 사용자 평가 날조
-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전시 등 방식으로 호평 전치, 악평 후치 또는 동일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평가를 현저히 구분하지 않는 행위
- 현물 사칭, 허위 예약, 허위 품질 등의 방식으로 허위 마케팅 진행
- 조회수, 관심도 등의 트래픽 데이터 조작 및 좋아요, 장려금(打赏, 온라인 팁) 등의 거래 교류 데이터 조작

▷ 사례: 2017. 11. 인민법원은 상해신일승(上海新日升)회사와 상해일승(上海日升)수출입회사가 설립한지 20주년 되었고 21개의 분공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홍보한 내용이 시장법위와 영향력을 과장하고 항주일승(杭州日升)회사의 시장법위를 제한한 허위홍보행위로 판단하였음

▷ 사례: 2022. 2. 동관시시장감독관리국은 2021. 7.부터 타오바오 온라인 쇼핑몰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를 판매하였고(총 매출액이 40,180 위안, 위법 소득이 10,330 위안임) 판매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허구거래를 하고 판매 상황에 대해 허위 홍보한 당사자의 행위를 허위홍보행위로 판단하고 4.9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四. 영업비밀 침해행위(侵犯商业秘密行为)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사업자가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공개 또는 사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다(반부정당경쟁법 제9조).

- 절도, 뇌물공여, 사기, 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
- 상기의 수단으로 획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 약정을 위반하거나 영업비밀 유지에 관련한 권리자의 요구를 위반하고 자신이 장악한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반부정당경쟁법에서의 영업비밀은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적 가치를 가지며 권리자가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를 가리킨다. 제3자가 영업비밀 권리자의 직원, 전 직원, 기타 업체 또는 개인이 상기 나열된 위법행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상황에서 여전히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 공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 사례: 2001년 초, 금래극(金萊克)회사 공장의 공장장이 금육(金育)전기유한회사의 총경리로 이직 한 후 금래극회사의 기술을 사용하여 금래극회사가 개발한 jc302제품과 유사한 princess표 핸드청소기를 생산하였음. 소주시 공상국은 금육회사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금육회사에게 위법행위 정지를 명함. 금육회사가 불복하여 법원에 상소하였으나 소주시양급인민법원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행정처벌의 적법성을 인정함

▷ 사례: 2022. 2. 14. 장가항시장감독관리국은 직원이 경업제한 기간 내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여전히 회사 연구개발인원으로 채용하고 해당 직원이 기존 고용업체의 영업비밀을 부당 취득,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 금지하지 않은 소주인합생물과기유한회사의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五. 부당한 경품판매행위(不正当有奖销售行为)

경품판매행위는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매자에게 물품 · 금전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률상 금지되는 부당한 경품판매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아래



와 같다(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

- 설정된 경품의 종류, 당첨 조건, 경품금액 또는 경품판매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당첨에 영향을 미치는 것
- 경품이 있다고 속이거나 고의적으로 내정인원이 당첨되도록 하는 기만적 방식으로 경품판매를 진행하는 것
- 추첨식 경품판매의 최고 경품 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 사례: 2017년 절강성영파시봉화구(奉化区)시장감독관리국은 모 쇼핑몰의 경품방식의 비정상적 할인판촉 행위가 부당한 경품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함

六. 상업비방행위(商业诋毁行为)

상업비방행위는 사업자가 허위정보 또는 혼동을 일으키는 정보를 날조, 전파하여 경쟁자의 상업이미지 또는 상품명예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반부정당경쟁법 제11조).

반부정당경쟁법 사법해석 제19조는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상업비방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의 상업비방행위로 인하여 특정된 피해대상이 자신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른 사업자가 업종 내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방행위를 한 경우, 어느 사업자가 자신이 그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주장이 어렵고, 추가적으로 자신이 특정 피해 대상임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반부정당경쟁법 사법해석 제20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타인에 의해 조작된 허위 정보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뜨려 경쟁 사업자 및 그 상품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원이 이를 상업비방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허위정보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직접 날조하지 않았지만, 이를 퍼뜨려서 경쟁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도 상업비방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사례: 2017. 5. 황암구시장감독국은 대주시황암시 모(某)회사는 자체 홈페이지, 위챗 공식계정, 웨이보(微博) 인증계정에 구체적인 증거 없이 자체 제품의 장점과 경쟁사 제품의 단점을 편파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게재한 것이 상업비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허위정보 삭제 및 경쟁사에 대한 사과를 명함

▷ 사례²⁴⁾: 2022. 4. 18. 천진시계주구시장감독국은 천진시 모(某)관광회사가 경쟁 라이벌의 시장경쟁능력을 감소하고 자신의 시장경쟁지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bgm, 문자, 더빙 등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과이소우업에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경쟁 라이벌의 상업명예를 훼손한 것이 상업비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35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七.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행위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행위란 사업자가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방식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이며 구체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다(반부정당경쟁법 제12조).

- 다른 사업자의 동의없이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에 링크를 삽입하여 강제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
- 다른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를 수정, 차단, 삭제하도록 사용자에게 잘못 안내하거나 기만, 강요하는 것
- 악의적으로 다른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호환되지 않도록 하는 것
- 다른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기타 행위

위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를 오도, 강제하는 방식으로 타 사업자가 적법하게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와 해당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타 사업자의 동의 없이 타 사업자가 적법하게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 중에 강제적으로 링크를 삽입하거나 강제로 링크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행위에 포함된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업자의 동의 없이 그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에 링크를 삽입하여 강제 리디렉션(redirection) 시키는 방식으로 그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당경쟁행위로서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반부정당경쟁법 사법해석은 제21조에서 부당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강제 리디렉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다.

- 다른 사업자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직접 리디렉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함. 즉, 다른 사업자 및 사용자 양측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리디렉션 시키는 것은 “강제” 행위로 인정됨
- 단순히 링크만 삽입하였고, 리디렉션은 사용자의 후속 동작에 의해 (클릭 등 동작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링크를 삽입한 구체적인 방식, 링크를 삽입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 및 기타 사업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한편,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사전 제시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고 수정, 차단, 삭제하도록 사용자에게 잘못 안내하거나 기만, 강요하여 기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악의적으로 파괴하는 경우 법원은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행위 중 “다른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를 수정, 차단, 삭제하도록 사용자에게 잘못 안내하거나 기만,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반부정당경쟁법 사법해석 제22조).

▷ 사례²⁵ : 2021. 1. 시장총국은 웨이핀후이(중국)유한회사가 경쟁우위 및 거래기회를 얻기 위해 순검(巡檢, 순찰하면서 살핀다는 의미임)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자사와 타사에서 동시에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자의 정보를 취득하고, 공급상 플랫폼 시스템, 지능화 그룹 네트워크 엔진, 운영 센터 등이 제공하는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트래픽 제한, 차단, 상품 제거 등을 통해 브랜드 사업자의 소비 주의, 트래픽 및 거래 기회를 감소시키고 브랜드 사업자의 판매 채널을 제한한 것이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300 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25 https://www.samr.gov.cn/xw/zj/202102/t20210208_325978.html



3. 부당당행위에 대한 처벌 및 책임

一. 처벌 규정

부당가격행위	처벌 기준
혼동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위법행위 중단 명령) · 위법소득 몰수 · 위법영업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영업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위법영업액이 없거나 위법영업액이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 경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함.
뇌물공여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소득 몰수 · 1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 경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함
허위홍보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위법행위 중단 명령) · 위법소득 몰수 ·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 경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함
허위광고 배포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
영업비밀 침해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위법행위 중단 명령) ·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경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부당한 경품판매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위법행위 중단 명령) ·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상업비방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위법행위 중단 명령) · 영향 제거 명령 ·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경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위법행위 중단 명령) ·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경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二. 배상 책임

사업자가 부당경쟁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부당경쟁행위로 인해 합법적 권익에 손실을 입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반부정당경쟁법 제17조).

4. 반부정당경쟁법 의견수렴안의 주요 개정 내용

전술한 바와 같이, 시장총국은 2022. 11. 22. 반부정당경쟁법 수정초안 의견수렴안을 공포하였다. 이 의견수렴안은 아직 정식 통과 및 시행되지 않았고 추후 변경될 가능성은 있으나,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一. 데이터 경제 분야의 반부정당경쟁 규칙 보완(제14조~제19조, 제21조)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 등을 참고하여 소비자·다른 사업자의 권익 및 사회공공이익에 대한 영향, 강제적·협박적·사기적 수단 사용 여부, 업계 관습·상업 윤리 및 도덕 또는 FRAND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술 혁신·산업 발전·인터넷 생태계(网络生态)에 대한 영향 등을 부당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종합적인 판단 요소로 추가하였다. 또한, 악의적인 거래행위²⁶, 데이터·알고리즘·기술·플랫폼 규칙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행위, 키워드 검색 연관어 또는 허위적인 선택항 등을 통해 이용자를 기망하거나 오도하는 행위, 기술적수단·플랫폼 규칙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배척(API 차단 등)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상업적 데이터를 부당하게 취득 또는 사용하는 행위, 빅데이터를 통한 가격차별(大数据杀熟)²⁷ 등 데이터 경제 분야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부당한 행위를 신규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26 사업자가 부당이익취득 목적으로 실시하는 악의적인 거래행위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사업자가 고의로 단기간 내에 대량의 비정상 거래를 통해 다른 사업자가 플랫폼 등의 규칙에 따라 검색순위 하락·신용등급 하락 등 처벌을 받게 하는 행위, 악의적으로 단기간 내에 대량의 상품을 구매한 후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불을 요구하거나 또는 상품 수령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27 사업자가 빅데이터 분석 등 기술을 통해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이지만 단골 고객에게 보여주는 가격이 신규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二. 상대적인 우월적 지위 관련 조항 신규 추가(제13조, 제47조)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가 있는(기술, 자본, 이용자 규모, 업종 내 영향력 등 면에서 우월적 지위가 있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가 거래 과정 중 해당 사업자에게 의존하는 경우 등을 가리킴)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조건을 부가하는 행위²⁸를 부당경쟁행위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三. 타인을 방조하여 부당경쟁행위를 실시하는 행위도 금지(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총칙 부분에서 타인을 '방조(幫助)'하여 부당경쟁행위를 실시하면 아니된다는 원칙적인 조항을 추가하였고, 혼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혼동행위의 실시를 위해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 허위광고행위와 관련하여 허위거래 조작·허위평가 조작·허위광고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부당한 방식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돕는 행위 등도 부당경쟁행위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四. 전반적으로 처벌 강화(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8조)

뇌물공여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상업비방행위의 처벌 기준을 높였고 상대적으로 우월적인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악의적인 거래행위 및 데이터 경제 분야의 일부 부당경쟁행위 등에 대해서, 경위가 특별히 엄중하고 성격이 특별히 악질적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 또는 사회 공공이익을 엄중히 침해한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 5%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및 영업중지, 관련 사업 허가증 말소 또는 사업자등록증 말소 등의 처벌방식을 추가하였다.

28 '양자택일(二选一)' 등 배타적 거래 강요, 거래대상 또는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제한, 끼워팔기,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트래픽 제한(限流)·차단(屏蔽)·검색 순위 하락·상품 전시 퇴출(下架) 등 방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간섭하는 등 행위를 포함한다.



IV. 가격법

1. 부당가격행위란

부당가격행위(不正当价格行为)는 사업자가 부당한 경쟁 수단으로 소비자
와 다른 사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가격질서를 파괴하는 가
격과 관련된 행위로, <가격법> 제14조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가격법>에서 금지하는 부당가격행위 유형 중 가격담합은 <반독점법>
의 독점협의 행위와 중복되어 위반 행위 시 적용 법률에 관한 혼란이 있었
는데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중복되는 부분: 가격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엮가판매, 차별대우 등
- 상이한 부분
 - <가격법>은 위 독점행위와 중복이 되는 행위 외에도 가격 정보 날
조, 사기, 폭리 등의 시장가격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적용됨
 - 반독점법상 독점행위에는 부당가격행위에 비해 더욱 엄격한 판단
기준이 적용됨. 예컨대, <반독점법>은 일반적인 저가 판매, 차별 대
우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지배적지위가 있는 사업자에
만 적용됨
 - 조사 시 부당가격행위의 경우 가격행위 자체에 대해 조사의 중점을
두지만, 독점행위의 경우에는 다른 경쟁 사업자에 대한 영향(경쟁
배제 · 제한의 효과)에 대해 중점을 둔

한편, 2014년 <가격위법행위 고발처리규정(价格违法行为举报处理规
定)>이 2021년에 폐지됨에 따라 2022년 5월 1일에 시행된 <시장감독관리
신고고발처리 임시방법(市场监督管理投诉举报处理暂行办法)> 제38조에
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의 고발 건은 시장총국의 특별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여 <가격법>과 <반독점법>의 중복 적용문제가 해결되었다.

2. 부당가격행위의 유형 및 요건

一. 가격담합(相互串通, 操纵市场价格)

가격담합은 상호 결탁하여 시장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격담합으로 인정된다.

- 2개 이상의 사업자의 상호 결탁
 - 가격 행위의 일치성, 경쟁 사업자 간의 의사 연락 등 입증 필요
- 시장가격 조정
 - 가격 조정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뿐만 아니라 중대한 가능성(가격 조정 등에 관한 합의 등)이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
-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손해 초래
 - 소비자 등이 더 높은 가격으로 관련 상품을 구매하거나 관련 상품의 구매를 포기하거나, 기타 비경제적인 상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포함

二. 부당염매(低于成本的价格倾销)

부당염매는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고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정상적인 생산경영 질서를 교란하여 국가이익 또는 다른 사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염매로 인정된다.

- 예외 상황이 없어야 함
 - 예외 상황이란 신선식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기타 누적 재고 상품, 계절성 상품에 해당하거나 채무 상황, 생산 이전, 휴업 등으로 인하여 가격인하 처리하는 것
- 행위의 주체는 대부분 대기업 또는 특정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가 있



는 기업임.

-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함
- 경쟁자를 배제하여 시장을 독점하려는 목적을 가짐

三. 가격선동(哄抬价格)

가격선동은 가격인상정보를 날조·유포하거나 투기 상인들이 악의적으로 사재기 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가격을 부추김으로써 상품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격선동으로 인정된다.

- 주관적으로 가격 인상의 고의가 있어야 함
- 객관적으로 가격 선동을 위한 객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함

- (i) 가격 인상 정보 날조, 유포

구체적으로는 생산·구매 원가 정보, 공급원 부족 또는 시장수요 급증 정보, 기타 사업자 가격인상 또는 가격인상 예정 정보, “곧 전면적 가격인상”(即将全面提价) 또는 “가격인상 조류”(涨价潮) 등 긴급·유도적 언어로 가격인상의 예측을 높이는 정보나 기타 사업자 가격인상을 유도하는 정보, 상품 가격의 급속·과도 인상을 유도하는 기타 정보 날조, 유포행위 등이 포함됨

- (ii) 악의적인 사재기

구체적으로는 주관당국의 주의경고(단독 경고, 공고, 회의, 면담, 서면경고 등)에도 생산업자·유통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상보존수량·주기 이상 시장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비축하거나 생산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원자재를 비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iii) 기타 수단을 통한 선동 등

구체적으로는 끼워팔기로 상품 가격을 변형하여 대폭 인상하는 행위, 상품 가격은 유지하고 배송비용을 불합리적으로 대폭 인상



하거나 기타 불합리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 원가가 현저히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상품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행위, 원가 증가폭보다 상품 가격 인상폭이 현저히 높은 경우 등이 포함됨

- 가격 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증대한 가능성을 조성함

四. 가격사기(价格欺诈)

가격사기는 허위 또는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가격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를 기만하여 그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격사기로 인정된다.

- 주관적으로 사기의 목적이 있어야 함
- 객관적으로 허위 혹은 사람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가격 수단을 이용함

주로 (i) 정부가격·정부지도가격 사칭, (ii) 저가 유인 후 고가 결제(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와 계산할 때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등), (iii) 허위 할인·가격비교, (iv) 기만·오도성 가격표시, (v) 가격확약(판촉 기간 내 가격할인 약속 등) 미이행, (vi) 불합리한 가격 미표시·현저히 간략하게(弱化) 표시하는 방식으로 유인, (vii) 포인트, 상품권, 교환권, 쿠폰 등의 할인약정 위반 등의 유형이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사업자는 (i) 홈페이지나 기타 현저한 위치에 노출된 상품가격이 상세페이지 가격보다 낮거나, (ii) 공표된 판촉활동 범위, 규칙이 실제 판촉활동 범위, 규칙과 일치하지 않거나, (iii) 기타 허위·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표시·판촉활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거나 결제 후 실제 할인·할인폭이 표시된 바와 일치하지 않으나 가격을 반내림하는 등 거래관행에 부합되는 경우는 가격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五. 가격차별(价格歧视)

가격차별은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동등한 거래조건



을 갖춘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가격차별에 대한 구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동등한 거래 조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처벌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六. 변칙적인 가격조정(变相提高或者压低价格)

변칙적인 가격조정은 제품의 등급을 높이거나 낮추어 제품을 구매·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변형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는 행위를 말한다.

이밖에도 변칙적인 가격 조정에는 (i) 등급을 인상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대금을 수취하는 행위, (ii) 가짜 상품을 진짜 상품으로, 저질 상품을 고품질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iii) 재료 투입량 또는 제품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七. 폭리도모(牟取暴利)

폭리도모는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실무적으로 “폭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수년간 이를 근거로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

3. 처벌 기준

부당가격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부당가격행위	처벌 기준
가격담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위법소득 몰수, 위법소득의 5배 이하 과징금 ·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사안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사안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



부당염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위법소득 몰수, 위법소득의 5배 이하 과징금 ·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사안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
가격선동 ²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위법소득 몰수, 위법소득의 5배 이하 과징금 ·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사안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사안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
가격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위법소득 몰수, 위법소득의 5배 이하 과징금 ·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사안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
가격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위법소득 몰수, 위법소득의 5배 이하 과징금 ·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사안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
변칙적인 가격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위법소득 몰수, 위법소득의 5배 이하 과징금 ·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사안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
폭리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위법소득 몰수, 위법소득의 5배 이하 과징금 · 사안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

29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중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 1) 상품 공급·수요 긴장의 허위정보 발조·유포하여 시장공황을 유발하여 가격인상 예측을 높인 경우
- 2) 동시에 여러 수단으로 가격선동한 경우
- 3) 가격선동 지속기간이 길고 영향범위가 넓은 경우
- 4) 가격선동 외 기타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 5) 1년에 2 회 이상 가격선동한 경우
- 6) 증거자료를 은닉, 훼손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한 경우
- 7) 가격감독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8) 법에 따른 기타 가중처벌의 경우



- ▷ 사례: 상하이마트의 가격사기(상해시 물가국 제2420160010호 행정처벌)
 - ✓ 처벌대상 업체
 - 상하이마트슈퍼마켓유한회사(上海易买得超市有限公司)
 - ✓ 조사 내용
 - 2014. 1. 1.부터 2015. 11. 10. 판촉 활동 중에 아래의 부당가격행위가 있었음
 - 4가지 상품의 원가(原价)³⁰ 낮조: 가령, 모 브랜드 1,500 ml 우유 판촉 과정에 “원가 20.06 위안, 할인폭 5%, 판촉가격 19.50위안”이라고 표기하였으나, 판촉 활동 일주일 전에 이미 19.50위안의 가격에 판매를 함
 - 가격 하락 불이행: 2014. 1. 10.부터 2014. 1. 19. 까지의 판촉 포스터에 “양털 이불 20% 할인”이라고 홍보하였으나 실제 판매시에는 할인가를 적용하지 않음
 - ✓ 처벌
 - 상해시 물가국은 <가격법> 제14조 제4항의 가격사기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5,000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 ▷ 사례: 상해계특전자유한회사의 가격선동(시장총국 [2021]68호 행정처벌)
 - ✓ 처벌대상 업체
 - 상해계특전자유한회사(上海镓特电子有限公司)
 - ✓ 조사 내용
 - 2021.4.1.부터 매입원가가 현저히 증가하지 않음에도 판매가격을 대폭 인상하여 가격선동 행위가 존재함.
 - 2021.4.26. 자동차용 칩을 9.63위안/개에 매입하여 2021.5.8. 309.73위안/개에 총 1005개를 판매하여 차액이 30.16만 위안 발생하였고 가격인상율이 3116.3%에 달함.
 - 2021.5.26. 자동차용 칩을 9.53 위안/개에 매입하여 2021.6.9. 442.48 위안/개에 총 2700개를 판매하여 차액이 116.9만 위안 발생하였고 가격인상율이 4543%에 달함.
 - 2021.6.22. 자동차용 칩을 9.49 위안/개에 매입하여 2021.7.7. 278.76 위안/개에 총 1800개를 판매하여 차액이 48.47만 위안 발생하였고 가격인상율이 2837.4%에 달함.
 - ✓ 처벌
 - 시장총국은 코로나 사태 및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자동차 칩 공급이 어려운 시기에 매입원가가 안정적인에도 자동차칩 가격을 4543%인상하여 판매한 행위는 <가격법>제14조 제3항 가격선동규정을 위반하였다 고 보았고 5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30 판촉활동 진행 전 일주일 내의 최저 소매 가격



● 시사점

- 소매업에 종사하는 많은 업체들이 가격 관리 규정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무의식적으로 가격 사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 특히 “원가”는 반드시 판촉 활동 전 일주일 내 가장 낮은 소매 가격이어야 하고, 이는 다른 직영점, 프랜차이즈 점의 소매가격을 포함한다.

4. 실무 중 대응방안

현재의 시장상황은 1998년 <가격법> 시행 당시 시장 상황에 비해 규범화, 자유화의 정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 부당저가판매, 가격차별, 폭리도모 등에 관한 처벌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가격선동에 관한 처벌 사례가 증가하였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격사기의 처벌 사례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소매업에 종사하는 업체의 경우 일반 판매, 판촉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가격사기 관련 규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행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가격사기행위 금지규정).

- ✓ 가격표 등에 표시된 상품의 명칭, 원산지, 규격, 등급, 품질, 계량단위, 가격 등이 상품과 일치해야 함.
- ✓ 가격표 등에 표시된 서비스의 항목, 가격기준이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와 일치해야 함.
- ✓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는 동일한 가격표를 사용해야 함.
- ✓ 최저가, 출고가, 도매가, 특가 등을 표시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 ✓ 할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 할인 폭이 반드시 실제 할인폭과 일치해야 함
- ✓ 저가 처리품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을 명시해야 함
- ✓ 증정 판매의 경우 증정하는 상품, 수량을 명시해야 하고 불량품을 증정해서는 아니됨
- ✓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시 부대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명시해야 함
- ✓ 원가 표시 시 정확한 원가를 표시해야 함
- ✓ 판촉 자료 등의 가격 확약(가격, 판촉 기간)을 이행해야 함



V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1. 경쟁법 위반 이슈가 있는지 내부 점검(컴플라이언스³¹ 업무 진행)

一.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중요성

- 2018년 중국 정부 조직 개편으로 반독점 관련 조사 권한이 시장총국에 집중되었고, 향후 통일된 반독점 조사기관으로 더욱 활발한 반독점 조사 진행이 예상된다.
- 또한 2016년부터는 중앙의 반독점 조사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방 시장감독관리국도 적극적인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우리 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 관련 사건으로 한국타이어 전매가격 고정 및 제한에 관한 독점협약(217.52만 위안), Bios Time을 포함한 6개 분유기업의 전매가격 고정 및 제한에 관한 독점협약(6.6873억 위안), 삼성 및 LGD 등 가격담합(3.53억 위안), 히타치를 포함한 일본의 12개 자동차부품회사 가격담합(12.354억 위안),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60.88억 위안)이 있고 일단 반독점 이슈로 처벌을 받으면 회사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 반독점 위반으로 판명된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기업의 평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경쟁법 위반 이슈가 있는지를 점검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二. 컴플라이언스 업무 진행 절차

-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기업 내부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자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도 한다. 법률자문사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진행하

31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예방 및 최소화하여 회사와 임직원을 보호하는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위한 상시적, 통합적인 체계 및 활동을 의미한다.



는 경우의 통상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조사 자료 리스트 작성: 컴플라이언스 업무 진행 전 조사자료 리스트를 제공하여 조사 대상기업(이하 “대상기업”)으로 하여금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가능할 경우 사전에 제공받아 검토
- Check List: 반독점 관련 Check List 또는 Questionnaire List를 작성하여 미리 대상기업에 발송함으로써 사전에 관련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 대상기업 방문 및 담당자 인터뷰
 - 주요 인터뷰 대상: 대상기업의 영업, 마케팅부서 담당자 및 경영진
 - 주요 인터뷰 내용: (i) 영업, 마케팅의 주요 업무 및 업무 처리 방식, (ii) 대상기업의 주요 영업, 마케팅 및 판매 정책, (iii) 대상기업의 제품, 시장점유율 등 상황 파악 등
- 담당자 인터뷰 수행: 인터뷰 질의사항 작성, 자료검토 및 대상분야 현업 책임자와 인터뷰(*당해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책임자와 인터뷰 진행)
- Risk 파악 및 대응방안 검토: 자료검토 및 인터뷰 결과에 따라 Risk를 파악하고 주요이슈 보고서 작성

2. 내부 반독점 관련 준법 제도 구축

경쟁법 위반의 리스크 최소화 및 컨트롤을 위해서는 경쟁법 관련 준법 제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 정기적인 공정거래 교육 실시
 - 대부분 회사 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영업, 마케팅 부서 담당자, 직원들에 대한 반독점 교육이 필요하다.
 - 또한 인력 유동, 인식 강화 차원에서 정기적인 교육 진행이 필요하다.
 - 아울러 기업 상황에 따라 교육 내용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 가령, 대리점, 딜러 등과 거래하는 업체의 경우 수직적 독점협의



에 관한 교육을 실행할 필요가 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수평적 독점협의, 시장지배적지위에 관한 교육 등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 공정거래 준법 가이드라인 작성
 - 경쟁법에 관한 정리, 기본적인 소개, 해석
 - 리스크 방지 방법과 처리 방식
 - 금지 행위와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행위
 - 경쟁 사업자 관계자와의 교류, 대면을 금지
 - 사업자단체에서 조직하는 활동 등에 참여 시 유의 사항
 - 대리점, 딜러와 가격 관련 정책 등에 대해 협의, 논의를 할 경우 유의 사항, 협의, 논의 내용을 회사에 보고할 의무
 - 공정거래 관련 행위 발생 시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 공정거래 관련 감독관리 제도 구축
 - 공정거래 준법 가이드라인이 엄격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 구축 필요

3. 조사 당국의 조사 대응(조사기관에서 조사 개시 후 대응)

1. 기습 조사 대응

- 기습조사에 대한 설명 및 정확한 대응의 필요성

기습조사는 반독점 조사기관에서 사전에 기업에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일정한 범위 내의 영업장소, 관련 문서·컴퓨터 등에 대해 맞춤형 정식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조사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아침에 조사대상회사 영업장소에 도착하기 때문에 기습조사를 “여명기습(黎明突襲)”라고도 한다.

〈반독점법〉 제46조에 의하면 〈반독점법〉에 위반되는 독점협의(담합행



위)를 실시한 경우 직전연도 관련 기업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1%~10%)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이미 공시된 반독점 행위 처벌결정에 의하면 기업의 조사기관에 대한 협조 정도는 후속 조사 처리 및 최종 과징금 부과 비율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한편, (반독점법) 제52조에 의하면 기업이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또는 형사적 책임을 추궁을 받을 수 있다.

조사에 비협조	일반 상황	특별히 엄중	형사적 범죄
회사에 대한 과징금 금액	20만 위안 이상	20-100만 위안	형사적 책임 추궁
개인에 대한 과징금 금액	2만 위안 이하	2-10만 위안	형사적 책임 추궁

● 기습조사의 범위

□ 조사대상회사의 영업장소 진입

행정 사무실, 생산공장, 매점, 창고, 관사처(辦事處)²², 교통기관, 특정 외주회사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영업장소에 대한 기습조사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

□ 임직원에 대한 질의

질질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원은 회사의 관리층, 영업, 마케팅, 재무 등 부서 책임자 및 관련 업무나 문서를 처리한 담당자를 포함한다. 조사기관의 질의 조사 대상 인원 선정은 주요 조사 목적에 따라 확정하며, 질의의 주요 내용은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a) 조사관이 조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한 설명

b)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

c) 안전과 관련된 사실의 해석

□ 문서, 자료 검토, 복사 및 관련 증거 압수



압수 대상이 종이 자료인 경우 조사기관에서 열람, 복사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의 반독점 조사에서 보편적인 방식은 이메일, 전자 파일에 대한 조사 및 메시지, 워챗 등 교류 정보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조사기관은 관계자의 컴퓨터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심지어 컴퓨터를 압수해 갈 수도 있다.

● 기습조사 사전 준비

사전에 Control Team을 구성하고, 기습조사를 지휘하는 협력담당을 지정하며, 해당 인원의 연락처를 안내데스크, 경비 등 인력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기습조사 협력담당은 조사기관의 조사 협조업무를 총괄함으로써 부적절한 협조행위로 인하여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기습조사 Control Team 팀원은 회사의 업무담당자, 재무담당자, 대관업무담당자, 법무담당자, 각 사업부서 고위직 관리인원 및 IT인원과 행정 등 사무를 처리하는 보조인원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습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 기본 원칙

침착하게 대응하고,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 조사기관이 안내데스크에 도착 시 안내데스크 대응

- 우선적으로 조사관 응대
- 조사관 안내 후 협력담당자에게 통보

□ 협력담당자 대응

- 즉시 조사관을 맞이하고 회의실로 안내
- 조사관의 신분 확인, 기습조사 사유 확인
- 간단하게 요구 사항 등을 확인
-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태도 표명



- 기타 대응 담당자
 - 회사 고위층, 법무, 외부 변호사 연락
 - 조사에 협조를 할 각 부서 담당자 지정
 - 조사에 협조할 IT담당자 지정
 - 기타 조사관 요구 사항 안내
- 현장 조사 개시 후 대응
 - 조사에 협조하는 각 부서 담당자 및 조사 대상자는 조사관이 압수 또는 확인한 자료를 기록해야 한다(최대한 사본을 남기는 것이 좋다).
 - IT 담당자는 최대한 관련된 시스템 접근, 자료 다운 등에 협조해야 한다.
- 현장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권장 사항	금지 사항
✓ 모든 임직원의 적극적 협조	✓ 조사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임
✓ 담당자가 조사관과 동행하면서 적시에 요구 사항 충족	✓ 회사 담당자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되도록 방치
✓ IT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된 협조 제공	✓ 조사관과의 비공식적인 담화, 논의를 진행
✓ 요구한 자료, 사항 등에 대해 적절히 기록	✓ 조사관의 문서 또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관련된 문서를 파손, 삭제 또는 은닉
✓ 조사 자체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 질의를 받은 경우 확실치 않은 부분에 대해 추측성 의견을 제시
✓ 압수해 간 자료는 반드시 사본을 남겨야 함	✓ 봉쇄한 장소에 진입하거나 봉쇄 훼손
✓ 인터뷰 및 그 기록의 사본을 남겨야 함	

- 현장 조사 마무리
 -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태도를 표명
 - 관련된 문제 및 자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는 태도 표명
 - 압수해 간 자료와 정리한 리스트가 일치하는지 확인
 - 해당 문서에 회사 인감 등을 날인해야 하는 경우 회사 인감을 날인



二. 기습 조사 후의 대응

● 1단계: 서류 검토

□ 조사기관

- 수집된 서류에 대한 검토
- 문제점 확인 및 분석
- 조사대상 업체에 대한 추가 질문과 요구사항 준비

□ 조사대상 업체

- 조사기관이 수집한 서류를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
- 잠재적 문제점에 대한 1차적인 법적 분석을 진행한다.
- 조사기관과의 빈번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가능한 조속히 조사기관이 초점을 두고 있는 이슈를 파악한다.

● 2단계: 추가조사와 보고서 제출

□ 조사기관

- 잠재적 이슈를 확인한 후, 조사기관은 조사대상 업체에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 회의과정에서 조사기관은 아래 사항을 진행할 것이다.
 -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 지적
 - 조사대상 업체에 조사기관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추가조사, 분석과 의견에 대한 답변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 조사대상 업체에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
- 이와 같은 면담은 3, 4회 정도 반복될 수 있다.

□ 조사대상 업체

- 조사기관과 면담 준비



- 조사기관에 제출할 보고서, 법적인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조사기관을 설득할 논거 등을 준비
- 조사기관에 추가적으로 제출할 적절한 자료를 검토 및 선택

● 3단계: 조사 마무리 단계

□ 처리 가능성

- 비공식적인 조사 중단: 조사대상 업체는 가격인하, 기타 추가 조건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조사기관이 만족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조사를 중단한다.
- 공식적인 조사 중단: 조사대상 업체가 가격 인하, 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조사기관에서 해당 약속 등을 공시한 후 일정 기간의 감독기간을 정한다. 해당 기간 동안 약속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한 경우 조사를 종료한다.
- 처벌사항 사전 고지: 위법행위가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차적인 처벌 결정을 내리고 해당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고지한다.

- 청문회: 1차 처벌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벌사항 사전고지를 받은 후 3일 내에 청문회(听证会)를 신청할 수 있다. 청문회는 시장총국 법제처에서 진행하고 반독점 조사 담당부처와 조사대상자에 의해 소위 변론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 4단계: 정식 처벌결정 및 결과 공시

● 5단계: 행정재심의(行政复议) 또는 행정소송

□ 기업결합에 대한 금지결정 또는 제한성조건 부가 결정에 대한 불복

- 처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행정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북경시 제1중급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³³

□ 그밖의 결정에 대한 불복

- 처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처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북경시 제1중급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3 참고로 지방 조사기관에서 행정처벌을 내린 경우 이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5조에 의하여 조사기관 소재지 중국법원을 관할로 한다. 2심의 경우 고급인민법원 또는 최고법원의 <지적재산권법정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关于知识产权法院若干问题的规定)>에 의해 최고법원 지적재산권법정에서 심리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 중심제로 2심 법원의 판결로 종국적인 효력이 발생된다.



부록1.
중국 경쟁법 관련 규정 리스트



분야	유형	명칭
반독점	법률	반독점법(2022년 개정)
	행정법규 ³⁴	국무원의 기업결합신고 기준 관련 규정(2018년 개정)
	부문규장 ³⁵	독점협의 금지 임시규정(2022년 개정)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임시규정(2022년 개정)
		기업결합심사 임시규정(2022년 개정)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 제지에 관한 임시규정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2020년 개정)
		기업결합심사 임시규정(2022년 개정)
		금융업 기업결합신고 영업액 계산방법
		국가시장감독관리국 반독점국의 기업결합신고 서류·자료에 관한 지도의견(2018년 개정)
		국가시장감독관리국 반독점국의 간이안건 신고에 관한 지도의견(2018년 개정)
		국가시장감독관리국 반독점국의 <기업결합신고심사신고표> 실행에 관한 설명(2018년 개정)
		국가시장감독관리국 반독점국의 기업결합안건 신고명칭을 규범화할 것에 관한 지도의견(2018년 개정)
	국가시장감독관리국 반독점국의 기업결합 신고 관련 지도의견(2018년 개정)	
	부문규장 ³⁶	원료약 분야의 반독점 지침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
		사업자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지침
		지식재산권 분야의 반독점 지침
		자동차 업종의 반독점 지침
		수평적 독점협의 안건 자진신고감면제도 적용지침

34 行政法规, 국무원이 제정한 규정을 가리킨다.

35 部门规章, 국무원 산하의 부서가 제정한 규정을 가리킨다.

36 指南, 국무원 산하의 부서가 제정한 지침을 의미하며, 부문규장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관련 부서가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을 집행하는 과정 중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분야	유형	명칭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독점안건 사업자 승낙 지침
		기업결합 반독점심사 업무지침(2018년 개정)
		외국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관한 반독점신고 지침
부정경쟁 방지	법률	반부정당경쟁법(2019년 개정)
	행정법규	국무원의 시장체계간설 중 공정경쟁심사제도 수립에 관한 의견
	부문규장	공정경쟁심사제도 실시세칙(2021년 제정)
	사법해석	반부정당경쟁법 적용 문제에 관한 사법해석(2022년 제정)
가격	법률	가격법
	부문규장	정찰가격과 가격사기 금지규정
		시장총국의 가격선동위법행위 조사에 관한 지도의견
		시장감독관리 신고고발처리 임시방법(2022년 제2차 개정)
가이드라인	사업자단체가격행위지침	



부록2. 기업결합신고표



申报编号:

经营者集中反垄断审查申报表

填报时间: 年 月 日

 保密版 非保密版¹ (选择请用替换)

<p>申报人应确保申报书、申报书的附件以及申报人在申报过程中提供的所有信息在其所知范围内是真实、完整和准确的，复印件与原件完全一致，不得提供任何虚假材料和误导性信息。申报人隐瞒重要情况、提供虚假材料或误导性信息的，应当承担相应的法律责任。</p>		
1. 交易名称		
2. 交易性质 (可多选)		
<input type="checkbox"/> 新设合并 <input type="checkbox"/> 吸收合并 <input type="checkbox"/> 股权收购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现金收购 <input type="checkbox"/> 公开要约收购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未获目标公司董事会或管理层支持的要约收购 <input type="checkbox"/> 换股 <input type="checkbox"/> 其他 (具体说明: _____) <input type="checkbox"/> 资产收购 <input type="checkbox"/> 合营企业 <input type="checkbox"/> 通过合同等方式取得控制权或者能够施加决定性影响 (具体说明: _____)		
3. 申报依据		
<input type="checkbox"/> 达到《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规定的申报标准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参与集中的所有经营者上一会计年度在全球范围内营业额合计超过 100 亿元人民币，并且其中至少两个经营者上一会计年度在中国境内的营业额均超过 4 亿元人民币 <input type="checkbox"/> 参与集中的所有经营者上一会计年度在中国境内的营业额合计超过 20 亿元人民币，并且其中至少两个经营者上一会计年度在中国境内的营业额均超过 4 亿元人民币 <input type="checkbox"/> 未达申报标准自愿申报		
4. 参与集中的经营者 ¹¹		
包括: 1、 2、 (3、……) [请列举, 详细情况在下栏填写]		
4.1 [请填写参与集中的经营者名称/姓名]		
4.1.1 是否是申报人 ¹¹	<input type="checkbox"/> 是 (身份证明或注册登记证明、公认证件文件等, 见附件[]) <input type="checkbox"/> 否	
4.1.2 联系地址	地 址	



	邮 编		网 址	
4.1.3 经营者内部的联系人	姓 名		部 门	
	职 务		电子邮件	
	手机及固定电话号码		传真号码	
4.1.4 代理人 (或代理律师)	<input type="checkbox"/> 有 <input type="checkbox"/> 无			
	姓 名		单 位	
	职 务		联系地址	
	手机及固定电话号码		电子邮件	
	传真号码		授权委托书原件	见附件[]。
4.1.5 在交易中的地位(可多选)	<input type="checkbox"/> 合并方 <input type="checkbox"/> 收购方 <input type="checkbox"/> 被收购方 <input type="checkbox"/> 股权出让方 <input type="checkbox"/> 被收购方的原有股东(股权出让方除外) <input type="checkbox"/> 合营方 <input type="checkbox"/> 其他(具体说明: _____)			
4.1.6 设立时间				
4.1.7 注册地/住所	注册地/国籍 (自然人)		住 所	
4.1.8 组织形式	<input type="checkbox"/> 有限责任公司 <input type="checkbox"/> 股份有限公司(非上市公司) <input type="checkbox"/> 上市公司(上市时间、交易所、股票代码: _____) <input type="checkbox"/> 股份有限公司 <input type="checkbox"/> 其他(具体说明: _____) <input type="checkbox"/> 合伙企业 <input type="checkbox"/> 自然人 ^{iv} <input type="checkbox"/> 其他(具体说明: _____)			
4.1.9 上一会计年度营业额 ^v	年 度	[]年度 <input type="checkbox"/> 日历年度 <input type="checkbox"/> 财务年度(起止日期: _____)		
	中国境内	人民币[]亿元 (原计价币种及金额: []亿元[币种]) (汇率 ^{vi} : _____)		
	全 球	人民币[]亿元 (原计价币种及金额: []亿元[币种]) (汇率: _____)		
4.1.10 设立和重要变更的历史情况				



4.1.11 主要业务 ^{xii}	全球范围	
	中国境内	
4.1.12 股权结构	股东名称及持股比例 ^{xiii}	
	股权结构图	见附件[]。
	是否有最终控制人	<input type="checkbox"/> 有 <input type="checkbox"/> 无 ^{ix}
4.1.13 最终控制人(如有)	名称/姓名	
	成立时间 [*]	
	注册地/国籍(自然人)	住 所
	组织形式	<input type="checkbox"/> 有限责任公司 <input type="checkbox"/> 股份有限公司(非上市公司) <input type="checkbox"/> 上市公司(上市时间、交易所、股票代码: _____) <input type="checkbox"/> 股份有限公司 <input type="checkbox"/> 其他(具体说明: _____) <input type="checkbox"/> 合伙企业 <input type="checkbox"/> 自然人 <input type="checkbox"/> 其他(具体说明: _____)
	主要业务(包括整个集团)	
	与参与集中的经营者之间的关系	
	股权结构图	见附件[]。
	4.1.14 关联企业 ⁱ	境外关联企业 ^{xii}
从事与本项集中相关业务的关联企业详细介绍 ^{xiv}		
中国境内关联企业		基本信息(名称、注册地、主要业务、股权结构)见附件[] ^{xv} 。 营业执照、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复印件见附件[]。
		从事与本项集中相关业务的关联企业详细介绍 ^{xvi}
4.1.15 经营者及关联企业过去三年在相关市场的经营		



者集中情况					
4.1.16 相关文件	上一会计年度经审计的财务报表	见附件[]。			
	上一会计年度年报 ^{xviii}	<input type="checkbox"/> 有 (见附件[]) <input type="checkbox"/> 无			
	*研究和、分析和报告	交易方内部编制的研究、分析和报告 ^{xviii}	<input type="checkbox"/> 有 (见附件[]) <input type="checkbox"/> 无		
		第三方编制的研究、分析和报告	专为本交易 ^{xix}	<input type="checkbox"/> 有 (见附件[]) <input type="checkbox"/> 无	
		非专为本交易 ^{xx}	<input type="checkbox"/> 有 (见附件[]) <input type="checkbox"/> 无		
5. 参与交易的其他经营者 ^{xxi}					
包括: 1、 (2、……) [请列举, 详细情况在下栏填写]					
5.1 [请填写参与交易的其他经营者的名称/姓名]					
5.1.1 联系地址	地 址				
	邮 编		网 址		
5.1.2 联系人	姓 名		单 位		
	职 务		电 子 邮 件		
	电 话		传 真		
5.1.3 在交易中的地位	<input type="checkbox"/> 股权出让方 <input type="checkbox"/> 资产出让方 <input type="checkbox"/> 被收购方 <input type="checkbox"/> 无控制权或决定性影响的合营方 <input type="checkbox"/> 其他 (具体说明: _____)				
5.1.4 基本信息	成立时间 ^{xxii}				
	注册地/国籍 (自然人)		住 所		
	组织形式	<input type="checkbox"/> 有限责任公司 <input type="checkbox"/> 股份有限公司 (非上市公司) <input type="checkbox"/> 上市公司 (上市时间、交易所、股票代码: _____) <input type="checkbox"/> 股份有限公司 <input type="checkbox"/> 其他 (具体说明: _____) <input type="checkbox"/> 合伙企业 <input type="checkbox"/> 自然人 <input type="checkbox"/> 其他 (具体说明: _____)			



5.1.5 主要业务			
6. 集中交易概况			
6.1 集中协议	形 式 ^{xxiii}	<input type="checkbox"/> 正式协议/合同/公司章程 <input type="checkbox"/> 公开要约 <input type="checkbox"/> 非正式或初步协议（如正式协议、合同或公司章程的草案/框架协议/备忘录/意向书等，在下栏说明不能提供正式协议的理由） <input type="checkbox"/> 无交易文件（在下栏说明不能提供集中协议的理由）	
	理 由		
	名 称 ^{xxiv}		签署时间 ^{xxv}
	协议方 ^{xxvi}		文 本 ^{xxvii}
6.2 交易金额 ^{xxviii}	现金		折合人民币
	股份数目及估值		
	资产类别及估值		
	其他权益及估值		
	汇率		合计
6.3 交易的描述 ^{xxix}			
6.4 交易前后股权和控制权结构 ^{xxx}	交易前后的股权结构图见附件[]。		
6.5 预计交割时间及特殊时限要求（如有，并解释）			
6.6 交易的背景、动机、经济合理性			
6.7 市场发展计划			
6.8 合营企业 ^{xxxi}	名 称 ^{xxxii}		
	注册地 / 住所	<input type="checkbox"/> 境内 <input type="checkbox"/> 境外（具体：_____）	
	合营各方拟/已投入的资金、资产和业务等资源 ^{xxxiii}		
	合营各方持有合营企业的主要权利和权益		
	合营企业主营业务、运作方式、经营区域、与合营各方及		



	其关联方的业务关系								
	合营各方及关联方之间的其他协议或安排								
7. 集中对相关市场竞争状况的影响									
7.1 集中各方的业务关系	横向重叠	<input type="checkbox"/> 有 <input type="checkbox"/> 无							
		中国国家统计局代码 ^{xxxiv}	产品或服务描述 ^{xxxv}					经营者 ^{xxxvi}	
	纵向关系	<input type="checkbox"/> 有 <input type="checkbox"/> 无							
		中国国家统计局代码	产品或服务描述					经营者	
	相邻市场 ^{xxxvii}	<input type="checkbox"/> 有 <input type="checkbox"/> 无							
		中国国家统计局代码	产品或服务描述					经营者	
7.2 相关市场界定及理由 ^{xxxviii}	产品市场	理由			地域市场		理由		
	1、								
7.3 集中对市场竞争的影响 ^{xxxix}	集中各方及主要竞争者市场份额								
	具体分析	市场评估的依据及相关文件见附件[]。							
7.4 主要竞争者相关信息 ^{xl}	见附件[]。								
8. 相关市场的供应和需求结构									
*8.1 供应结构	集中各方在每一相关市场的主要供应商 ^{xli}	[]市场							
		[参与集中的经营者名称]的主要供应商:							
	排名	供应商名称	采购的产品名称	采购数量	采购数量占比	采购金额	采购金额占比	联系人	联系方式
	相关市场的供应结构								



8.2 需求结构	集中各方在每一相关市场的主要客户 ^{x111}	[]市场						
		[参与集中的经营者名称]的主要客户:						
	排名	客户名称	*销量	*销量占比	*销售金额	*销售金额占比	联系人	联系方式
	相关市场的需求结构							
*9. 市场进入								
*9.1 过去五年的市场进入情况 ^{x1111}	<input type="checkbox"/> 有 <input type="checkbox"/> 无							
	详细信息:							
	名称	进入时间	市场份额	联系人	联系方式			
	1、							
*9.2 潜在的进入者 ^{x11v}	<input type="checkbox"/> 有 <input type="checkbox"/> 无							
	详细信息:							
	名称	联系人	联系方式	可能的进入时间	理由			
*9.3 进入市场的难易程度	进入的总成本 ^{x1v}							
	法律或政策上的限制							
	因知识产权而产生的限制							
	产品生产和经销的规模经济的重要性							
	原材料和基础设施等可用性							
*10. 横向或纵向合作协议 ^{x1vi}								
<input type="checkbox"/> 有 <input type="checkbox"/> 无								
详细信息:								
*11. 集中可能产生的效率								
*12. 集中是否涉及破产企业或濒临破产企业								



<input type="checkbox"/> 是 (详细说明: _____) <input type="checkbox"/> 否						
13. 相关市场行业协会信息						
编号	名称	地址	联系人	电话号码	传真号码	网址
14. 交易是否需要中国政府其他部门 (包括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其他司局) 审批						
<input type="checkbox"/> 是 (详细说明 ^{xlvii} : _____) <input type="checkbox"/> 否						
*15. 有关方面对本次集中的意见^{xlviii}						
<input type="checkbox"/> 有 <input type="checkbox"/> 无 <input type="checkbox"/> 不了解 详细信息: 有关方面的意见见附件[]。						
16. 本项交易的合规性及集中各方在中国境内的合规性^{xlix}						
16.1 本项交易的合规性						
16.2 集中各方主体资格及业务的合规性						
17. 交易是否需要其他国家/地区申报						
<input type="checkbox"/> 是 (说明需要申报的司法辖区、已申报/拟申报时间及审查进度等: _____) <input type="checkbox"/> 否						
18. 其他需要说明的情况						
<input type="checkbox"/> 有 <input type="checkbox"/> 无 详细信息:						
19. 申报人承诺^l						
申报人在此承诺, 就其所知, 本申报书、申报书的附件以及申报人在申报过程中提供的任何文件和信息都是真实、完整和准确的, 复印件与原件一致, 不存在任何虚假陈述或误导性陈述。申报人承担违反上述承诺的相关法律责任。						
申报人 (盖章): 姓名 (签字): 职位:						



附件目录

编号	附件名称	所属条目

- i 非保密版应当提供的信息包括但不限于：参与集中经营者的中文名称、注册地/自然人国籍、成立时间、上市情况（包括是否上市及上市时间和地点）、主要业务、全球及中国境内营业额、在中国境内的关联实体情况；参与集中经营者的最终控制人的上述信息；交易概况，包括交易名称、交易类型、交易过程、交易金额、交易所涉及的行业、产品和地域等；本项交易在其他司法辖区的申报情况、进展情况；交易动机和经济合理性；相关产品和地域市场界定的原因及结论；相关市场竞争情况说明、参与集中的经营者及主要竞争者在相关市场内的市场份额；市场进入情况。上述信息中，营业额、交易金额和市场份额等数据可以区间形式提供，其中营业额和交易金额的区间幅度不应超过10%，市场份额的区间幅度不应超过5%。
- ii 需根据经营者集中的具体情形界定参与集中的经营者。
- 一般而言，在经营者合并的情况下，无论是吸收合并还是新设合并，合并各方均为参与集中的经营者；在经营者通过取得股权或者资产的方式取得对其他经营者的控制权的情况下，取得控制权的经营者和目标经营者为参与集中的经营者；在经营者通过合同等方式取得对其他经营者的控制权或者能够对其他经营者施加决定性影响的情况下，取得控制权或能够施加决定性影响的经营者和目标经营者为参与集中的经营者。如集中后两个以上经营者对目标经营者有控制权或者能够施加决定性影响，则上述两个以上经营者均为参与集中的经营者。
- 尽管有上述说明，在新设合营企业的情况下，合营企业的共同控制方均为参与集中的经营者，合营企业本身不是参与集中的经营者。在既存企业的基础上通过交易形成合营企业的，如既存企业本身为合营企业，既存企业和交易后所有对其有控制权或者能够施加决定性影响的经营者均为参与集中的经营者。如既存企业在交易前由一个经营者单独控制，交易后所有有控制权或者能够施加决定性影响的经营者为参与集中的经营者；如交易前的单独控制方交易后仍拥有控制权或者能够施加决定性影响，既存企业不是参与集中的经营者；交易前单独控制方交易后不再拥有控制权或者能够施加决定性影响的，既存企业是参与集中的经营者。
- iii 通过合并方式实施的经营者集中，由参与合并的各方经营者申报；其他方式的经营者集中，由取得控制权或能够施加决定性影响的经营者申报，其他经营者予以配合。申报义务人未进行集中申报的，其他参与集中的经营者可以提出申报。直接参与交易的经营者是收购或投资工具的，不宜作为申报人。
- iv 如选择本项，则不填写第4.1.6、4.1.10、4.1.12、4.1.13项。
- v 如申报时上一会计年度的财务报表尚未完成审计，请提供上一会计年度未经审计的营业额、最近会计年度经审计的营业额及经审计的财务报表，请在申报后及时提供上一会计年度经审计的财务报表。
- vi 请注明适用的汇率及汇率的来源和计算方法。通常情况下，将以外币计算的营业额换算为人民币时宜适用中国人民银行公布的相应会计年度的汇率中间价平均值。下同。
- vii 请详细介绍参与集中的经营者与本项集中相关的业务，并概要介绍该经营者的其他主要业务。



- viii 如经营者股权结构非常分散, 请提供主要股东及持股比例, 并说明选择理由。非有限责任公司或股份有限公司的, 提供经营者权益持有者名称及持有权益的比例、安排或约定。
- ix 若答案为否, 则不填写第4.1.13项。
- x 最终控制人属于自然人的, 不填此项。
- xi 一个经营者的关联实体包括该经营者直接或间接控制的所有经营者、该经营者的最终控制人以及最终控制人直接或间接控制的所有经营者等。
- xii 对于境外关联实体, 请至少提供以下两种实体的名称和基本信息: 一是与参与集中的经营者有共同或单独控制关系的实体, 包括直接和间接的; 二是在本项集中的相关市场从事经营的实体。
- xiii 请以表格形式提供。
- xiv 对于关联企业中从事与本项交易相同或相关业务的企业, 请着重对其产品和服务进行详细描述。
- xv 请以表格形式提供。
- xvi 对于关联企业中从事与本项交易相关业务的企业, 请着重对其产品和服务进行详细描述。
- xvii 如年度报告为外文, 请同时报送中文译本或主要部分中文摘要(如无现成的中文译本)。
- xviii 请提供由交易方及其最终控制人的董事、监事和高管(或行使类似职能的机构或个人)提供或为其提供的, 评估或者分析本次集中的所有研究、分析或报告, 包括市场份额、竞争条件、实际或潜在的竞争对手、集中的合理性、销售增长或者扩展进入其他产品或地域市场的潜力、总体市场状况、集中带来的协同效应和效率等。此类文件包括但不限于董事会会议记录、公司发展战略等。请注明此类文件的制作时间、制作人姓名、单位、职务及联系方式(原文件中如没有注明)。
- xix 请提供第三方为评估或分析本次集中而制作的相关文件。
- xx 请提供第三方并非为本次集中专门制作但与本次集中所涉及行业或市场相关的文件, 如行业发展研究报告等。
- xxi 本项填写参与交易但不属于参与集中经营者的相关方信息。
- xxii 参与交易的其他经营者是自然人的, 可不填写此项。
- xxiii 经营者申报时应提供经正式签署的集中协议; 经营者能够提供充分证据证明因交易的特殊安排、其他法律法规规章或政策的强制性要求、其他司法辖区的强制性规定或其他合理的理由, 申报时无法提供经正式签署的集中协议, 或者在集中协议签署后申报将无法遵守《反垄断法》第二十五条、二十六条关于审查期限的规定的, 可以在集中协议签署前向[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申报, 但应当提供相关材料如备忘录或框架协议、集中协议草稿、公开要约等, 同时提供交易的主要条款和条件, 以确保交易的确定性。上述材料应包括经营者集中审查所需的信息。无论审查是否结束, 一旦签署集中协议, 申报方都应不加拖延向[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提供集中协议, 并说明集中协议与原申报材料的异同; 如果申报后经营者集中的内容发生足以影响[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审查和决定的重大变化的, 申报人应及时通知[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并更新申报内容或重新申报。
- xxiv 如有多份文件, 请分别填写。



- xxv 如为要约收购，则填写发出正式要约的时间。
- xxvi 如为要约收购，则填写要约方的名称。
- xxvii 请同时提供目标公司/合营企业经签署的股东协议、章程（如有），以及交易各方之间及与目标公司/合营企业间的非竞争协议或条款等（如有）。如为要约收购，则提供要约文件。
- xxviii 请提供交易总价值，包括现金、股权、资产和其他对价。以非现金作为对价的，请提供其评估价值。以其他币种计价的，请列明币种、汇率并转换为人民币。
- xxix 请描述交易，包括交易架构、交易各方的名称、交易标的和交易各方的对价、交易各关键步骤及时间点、交易进展情况和预计完成时间等。
- xxx 请对交易前后的股权结构进行描述，并对交易前后的控制权结构、控制权变化进行说明并分析。并请以附件的形式提供交易前后的股权结构图。
- xxxi 如果交易导致形成合营企业（包括新设合营企业及在既存企业基础上通过交易形成合营企业），请填写此项。
- xxxii 如为新设合营企业，在此填写拟使用的名称。
- xxxiii 请详细说明各合营方投入或承诺的投资资本。如涉及投入资产和业务，请说明其具体范围、内容、价值和上一会计年度的营业额，并说明集中后合营各方是否将继续从事上述业务。涉及不同合营方的，请分别列明。
- xxxiv 请填写中国国家统计局公布的产品所属最细分类的代码。网址：www.stats.gov.cn/tjbz/tjycpf1ml。
- xxxv 请描述相关产品或服务并简介经营者从事相关业务情况，包括具体经营主体、客户范围和业务模式等。请按中国国家统计局产品分类代码逐项填写，不同经营者分别填写。
- xxxvi 请注明从事相关业务的参与集中的经营者。
- xxxvii 指具有互补性，或者具有相同客户群和相同最终用途的一系列产品。
- xxxviii 请按照《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相关市场界定的指南》的规定，从需求替代和供给替代两个方面界定相关产品市场和地域市场，并说明详细理由（请尽量以数据和事实作为支持，并注明所引用数据和事实的来源，如数据系申报人估算，请注明计算的方法和依据）。
- xxxix 包括但不限于：根据销售量和销售额计算的市场总体规模，市场发展现状，集中各方及主要竞争对手的销售额、销售量、市场份额，交易前后的HHI/CRn指数及二者的差额（即交易后HHI/CRn指数的增量）。并请说明集中对市场结构、行业发展、竞争者、上下游经营者、消费者、技术进步、经济发展和公共利益的影响。如申报人无法提供HHI指数，请说明理由。请注明每一项数据的来源、计算方法和依据，以附件形式提供能够证明数据来源的文件，并在本栏中注明附件的编号。
- xl 请以表格形式提供。包括名称、联系人、联系方式（地址、电话、传真），如主要竞争者为外国企业，请同时提供其中国分支机构的联系方式（如有）。
- xli 请就本交易涉及的每一相关市场，以表格的形式分别提供集中各方主要供应商（通常指前五家主要供应商）的信息，包括排名、供应商名称、采购的产品种类和名称、采购数量、采购数量占比、采购金额、采购金额占比、联系人、联系方式等。请提供独立供应商（即与该经营者没有关



联关系的供应商) 的上述信息。

- xlii 请就本交易涉及的每一相关市场, 以表格的形式分别提供集中各方主要客户(通常指前五家主要客户)的信息, 包括排名、客户名称、销售数量、销售数量占比、销售金额、销售金额占比、联系人、联系方式等。请提供独立客户(即与该经营者没有关联关系的客户)的上述信息。
- xliii 请说明过去五年中是否有经营者明显已经进入了相关市场。如有, 请提供在此期间内进入市场的经营者名称、进入时间、市场份额、联系人及联系方式。如没有, 请分析原因。如集中的任何一方在此期间内进入相关市场, 请分析其遇到的市场壁垒。如五年以上或不到五年为更有意义的时间区间, 可采用并说明理由。
- xliv 请说明是否存在可能进入相关市场的潜在进入者。如有, 请提供潜在进入者的名称、联系人、联系方式, 并分析可能的进入时间, 说明可能发生此种进入的理由。
- xlv 包括但不限于研发、生产、建立经销系统、推销、广告宣传、服务等所需的时间和费用成本。
- xlvi 请提供参与集中的经营者在相关市场内参与的主要横向或纵向合作协议, 例如研发、许可协议、联合生产、分销、长期供应以及信息交换等方面的协议。并请说明上述协议在全球范围内被调查的情况。并可以以附件形式提供相关的协议文本或证明材料等。
- xlvii 请说明需要经过哪些审批、目前的报批/审批进度, 并以附件形式提供相关部门的审批意见(如有)。
- xlviii 请介绍有关方面(包括但不限于主管部门、地方政府、行业协会、竞争者、上游企业、客户、媒体、公众等)对本项交易的意见。
- xlix 请说明本项交易是否符合中国法律、法规、规章及相关规定、政策。并请确认集中各方及其关联企业在中国是否存在既往的涉及实体设立、经营管理、外资审批和行业准入监管等方面的未决问题和合规性问题。
- l 另有承诺或声明的, 可以附件形式提供。如申报人以附件形式另行提供承诺函, 其承诺的范围和强度实质上不应弱于第19项的申报人承诺格式文本。

[알기 쉬운 중국 경쟁법]

■ 발간총괄

유복근(주중대사관 경제공사)

■ 발간위원

유영욱(주중대사관 공정거래관)

■ 집필

권대식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규식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경남 중국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오청청 중국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미령 중국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발행일 2022년 12월

■ 발행처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비매품]

■ 발간등록번호

■ 제작 / 편집 북경부경한광고유한공사

■ 디자인 / 인쇄 애듀니인쇄전문

알기 쉬운 중국 경쟁법

증보판 · 2022년 12월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